국제빙상연맹

2022 정관 및 일반규정

58차 정기 총회에서 승인

2022년 6월

특별 규정 / 기술 규칙을 참조
싱글 및 페어 스케이팅 / 아이스 댄스,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과 스피드스케이팅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ISU 정관 및 규정에서, 어느 물리적인 사람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남성이란

(예를 들면, 스케이터/선수, 오피셜, ISU 회원국의 회원 또는 그, 그들과 같은 대명사를 포함하여),

특정하지 않는 한, 여성의 성별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국제빙상연맹

규정들은 다음의 총회에서 제정되었다.

1 차	스헤베닝겐	1892	31 차	비엔나	1965
2 차	코펜하겐	1895	32 차	암스테르담	1967
3 차	스톡홀름	1897	33 차	메이든헤드	1969
4 차	런던	1899	34 차	베니스	1971
5 차	베를린	1901	35 차	코펜하겐	1973
6 차	부다페스트	1903	36 차	뮌헨	1975
7 차	코펜하겐	1905	37 차	파리	1977
8 차	스톡홀름	1907	38 차	다보스	1980
9 차	암스테르담	1909	39 차	스타방게르	1982
10 차	비엔나	1911	40 차	콜로라도스프링스	1984
11 차	부다페스트	1913	41 차	벨덴	1986
12 차	암스테르담	1921	42 차	다보스	1988
13 차	코펜하겐	1923	43 차	크라이스트 처치	1990
14 차	다 보스	1925	44 차	다 보스	1992
15 차	뤼숑	1927	45 차	보스턴	1994
16 차	오슬로	1929	46 차	다보스	1996
17 차	비엔나	1931	47 차	스톡홀름	1998
18 차	프라하	1933	48 차	퀘벡	2000
19 차	톡홀름	1935	49 차	교토	2002
20 차	생모리츠	1937	50 차	스헤베닝겐	2004
21 차	암스테르담	1939	51 차	부다페스트	2006
22 차	오슬로	1947	52 차	모나코	2008
23 차	파리	1949	53 차	바르셀로나	2010
24 차	코펜하겐	1951	54 차	쿠알라룸푸르	2012
25 차	스트레사	1953	55 차	더블린	2014
26 차	로잔	1955	56 차	두브로브니크	2016
27 차	잘츠부르크	1957	57 차	세비야	2018
28 차	투어	1959		온라인 투표	2020
29 차	베르겐	1961		온라인 투표	2021
30 차	헬싱키	1963	58 차	푸켓	2022

2022 ISU 정관

목차

			페이지
I. 일반			
제 1 조	1 절	명칭, 정관 및 법적 지위	13
	2 절	정관의 효력	13
	3 절	ISU 회원국	13
	4 절	ISU 임시회원	13
	5 절	제휴클럽	13
	6 절	법적 실체성	13
제 2 조	1 절	ISU 관할권	14
	2 절	본부	14
제 3 조	1 절	목적	14
	2 절	ISU 경기들	14
	3 절	외부의 간섭	14
제 4 조	1 절	방법 및 행위	15
	2 절	발전프로그램	15
제 5 조	1 절	회계연도	16
	2 절	유한책임	16
	3 절	재무적 자원	16
	4 절	감사인	16
	5 절	면책	16
	6 절	권한	17
	7 절	ISU 에 위임 또는 법적 구속의 제한	17
II. ISU 멤버십			
제 6 조	1 절	일반 요구조건	18
	2 절	ISU 임시회원	18
	3 절	최소요건	19
	4 절	회원국이 부문별로 연맹조직을 분리한 경우	21
	5 절	투표권 수	21
	6 절	ISU 멤버십 신청	21
	7 절	신청자의 검증	22
	8 절	ISU 회원국 제출문서의 정정	22
	9 절	수리와 거절	22
	10 절	항소	22
	11 절	모니터링	22
제 7 조	1 절	ISU 회원국 및 그 산하 회원단체들과 대회참가자들의 의무	23
	2 절	참여	23
	3 절	ISU 임시회원의 권리	23
	4 절	특별클럽의 권리	23
	5 절	ISU 법령의 ISU 임시회원	23
	6 절	타 클럽에 대한 스폰서	23
	7 절	임원, 코디네이터, 고문, 직원 및 컨설턴트의 의무	24
III. 조직			
제 8 조		조직	25
A. 총회			
제 9 조	1 절	총회의 회의	26
	2 절	총회 회의 참석	26

	3 절	ISU 회원국의 대표자	26
	4 절	총회 의제 및 절차	26
	5 절	총회의 결정의 최종성	26
제 10 조	1 절	총회 회의 장소와 일자	27
	2 절	총회의 정족수	27
	3 절	총회의 취소 또는 연기	27
	4 절	전자/디지털 투표	27
	5 절	전자/디지털 투표 기한	27
제 11 조	1 절	정관, 절차규정, 일반규정 및 특별규정의 개정	28
	2 절	개정을 위한 다수	28
제 12 조		언어 - 원문	28
제 13 조	1 절	선거 - 피선거권	29
	2 절	후보자가 제출하는 서류	29
	3 절	나이제한	30
	4 절	비적격자	30
	5 절	공석을 채우기 위한 특별선거	30
	6 절	서열	31
	7 절	집행위원회 및 기술위원회 의원의 서열	31
	8 절	집행위원회 의원 선출 순서	31
제 14 조	1 절	공석	31
	2 절	부회장의 공석	31
	3 절	집행위원회 의원의 공석	31
	4 절	기술위원회 의원의 공석	32
	5 절	퇴직	32
제 15 조		명예회원과 ISU 의 위촉	32
	1 절	집행위원회의 재량	32
	2 절	기준	32
	3 절	명예회원의 자문역 자격	32
	4 절	명예회원과 현직임원의 관계	33
	5 절	ISU 금장훈장(Gold Award of Merit)	33
	6 절	기타 포상	33
	7 절	명예수상의 박탈	33
B. 집행위원회			
제 16 조	1 절	구성	35
	2 절	회장	35
	3 절	부회장	36
	4 절	집행위원회에 대한 지원	38
제 17 조	1 절	집행위원회의 기능	39
	2 절	집행위원회 최종결정	41
C. 사무총장			
제 18 조		사무총장	42
D. 이사			
제 19 조	1 절	이사들의 일반적 역할	44
	2 절	이사들에 적용되는 조건	44
E. 기술위원회			
제 20 조	1 절	기술위원회의 수	45
	2 절	자격과 구성	45
	3 절	기술위원회들의 기능	46

F. 선수위원회
제 21 조 1 절 자격과 구성 47
2 절 추천/선거 절차 47
3 절 선수위원회의 기능 48

G. 의료위원회
제 22 조 1 절 자격과 구성 50
2 절 의료위원회의 기능 50

H. 오피셜평가위원회
제 23 조 피겨스케이팅 오피셜의 평가 51

I. 발전위원회
제 24 조 1 절 임명 및 구성 52
2 절 감독 52
3 절 협조 52
4 절 기능 52
5 절 활동과 예산 계획 53
6 절 활동과 예산의 예상치 않은 변경 53
7 절 집행위원회의 지휘 53

IV. 사법기구
제 25 조 징계위원회 54
1 절 선출 54
2 절 구성 54
3 절 독립성 54
4 절 최소 인원 - 공석 54
5 절 판정 55
6 절 제소 55
7 절 절차규칙 55
8 절 관할권 55
9 절 제재 56
10 절 도핑 케이스에 대한 제재 57
11 절 DC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제소 57
12 절 항소 57
13 절 불복결정의 법적인 효과

V. 중재
제 26 조 스포츠중재재판소(CAS) – 항소 중재부
1 절 항소 58
2 절 CAS 의 관할권 58
3 절 피고 58
4 절 기한 58
5 절 언어 58
6 절 판정의 최종성 59
제 27 조 스포츠중재재판소(CAS) – 일반 중재부 60
1 절 CAS 의 관할권 60
2 절 중재 청구 60
3 절 CAS 판정의 최종성 60
4 절 CAS 및 민사법정의 배제 60

VI. 통신과 청산
제 28 조 1 절 통신 61
2 절 결정의 공표 61
3 절 통신문에 기재된 결정의 효력 61
제 29 조 1 절 ISU 의 청산 61
2 절 청산인 및 자산의 분배 61
VII. 절차규정
A. 총회 - 조직
제 30 조 1 절 초청장 62
2 절 총회에 대한 제안 62
3 절 규정의 일관성 63
4 절 초안작성 문제 63
5 절 긴급안건 63
6 절 주제에 대한 포럼 63
7 절 제안에 대한 심의 및 토론 64
8 절 임원들의 총회출석 65
9 절 명예위원의 총회출석 65
10 절 ISU 회원국의 투표권 65
11 절 총회에서의 투표 65
12 절 출석통보 66
13 절 대표단 인원수 66
14 절 국가연맹의 투표권 66
15 절 국가연맹의 권리 67
16 절 결의 67
17 절 다수결 67
18 절 총회 회의의 의장 67
19 절 부문별 회의 67
20 절 부문별 회의의 의장 67
21 절 총회/집행위원회/사무총장/스포츠이사의 결정권한 68
22 절 회의진행과 의사록 68
23 절 선거 68
24 절 출마후보들의 수가 한정적일 때의 선거 68
25 절 유효투표 68
26 절 1 차 투표와 2 차 투표 68
27 절 가부동수 투표 68
28 절 서열 68
29 절 선거의 기술적 운영 69
30 절 참관단 69

B. 총회 의제
제 31 조 총회 의제 70

C. 스피드스케이팅부문 의제
제 32 조 스피드스케이팅부문 의제 72

D. 피겨스케이팅부문 의제
제 33 조 피겨스케이팅부문 의제 74

E. 집행위원회
제 34 조 1 절 집행위원회 회의의 연간 최소횟수 76
2 절 집행위원회 회의와 결정 76
3 절 다수결 76
4 절 회장의 캐스팅 보트권한 76
5 절 집행위원회 회의 정족수 76

	6 절	집행위원회 회의 의제	76
	7 절	제안	76
	8 절	투명성	76
	9 절	ISU 회원국 분쟁에 대한 결정	76
	10 절	예산증액	77
	11 절	기밀유지	77
F. 기술위원회			
제 35 조	1 절	업무계획	78
	2 절	회의	78
	3 절	자문협의	78
	4 절	감독	78
	5 절	결정	78
	6 절	기술위원회에 대한 정보제공	78
G. 선수위원회			
제 36 조	1 절	업무계획과 통제	79
	2 절	회의	79
H. 의료위원회			
제 37 조	1 절	업무계획	80
	2 절	회의	80
	3 절	집행위원회에 참석	80
	4 절	감독	80
I. 임원과 오피셜 및 기타 정의			81
제 38 조	1 절	ISU 임원들	81
	2 절	오피셜	81
	3 절	ISU 대표자의 기능	81
	4 절	ISU 이벤트 매니저/ISU 어시스턴트 이벤트 매니저의 기능	81
	5 절	지역 어시스턴트 이벤트 매니저 (RAEMs – 피겨스케이팅 부문에만 해당)	82
	6 절	동계올림픽대회의 ISU 기술자문	82
제 39 조	그 외의 정의들		83
	1 절	ISU 법령집	83
	2 절	규정	83
	3 절	부문과 종목	83
	4 절	ISU 경기	84
	5 절	경기	84
	6 절	개인시리즈경기	84
	7 절	인터내셔널 경기/국내 경기	84
	8 절	경기	84
	9 절	세그먼트	85
	10 절	거리/레이스	85
	11 절	예선라운드들 (사전 예선, 예선, 히트, 8강, 준준결승, 준결승)과 결승	85
	12 절	나이 카테고리	85
	13 절	스케이터 - 선수	85

ISU 일반규정 2022

목차

		A. 일반	페이지
규칙 100	1 절	정의	86
	2 절	제휴클럽	86
	3 절	ISU 경기	86
	4 절	권리	87
규칙 101	1 절	법적효력	87
	2 절	적용범위	87
	3 절	규정준수	87
		B. 적격성	
규칙 102	1 절	적격성 지위	88
	2 절	부적격자의 정의	89
	3 절	적격자의 참가	89
	4 절	적격성의 제한	90
	5 절	지불	90
	6 절	상표	91
	7 절	적격성의 상실	94
	8 절	예상되지 않은 문제	96
규칙 103	1 절	적격자로서의 자격회복	97
	2 절	적격자로의 자격회복	97
	3 절	자격회복 신청	97
	4 절	자격회복 신청에 대한 결정	97
	5 절	국내활동에 대한 자격회복	97
		C. ISU 회원국의 의무	
규칙 104	1 절	ISU 회원국	98
	2 절	주소	98
	3 절	공식명칭	98
	4 절	통신과 지급 안내	98
	5 절	공식회지	98
	6 절	ISU 회원국 명부	98
	7 절	연회비	99
	8 절	납부	99
	9 절	ISU 회원국 권리상실	99
	10 절	제명	99
	11 절	인터내셔널 경기에서의 규칙과 참신한 양식의 준수	99
	12 절	부적격자 참여 경기	99
	13 절	최고 스케이터 공표	100
	14 절	인터내셔널 스피드스케이팅 경기 기획	100
	15 절	인터내셔널 피겨스케이팅 경기 기획	101
	16 절	배제	101
	17 절	시범경기	102
규칙 105		TV와 기타 매체 전시 준비	103
	1 절	ISU의 권리	103
	2 절	ISU 회원국 및 조직위원회의 책임	103
	3 절	집행위원회의 위임권리	103
	4 절	사후 권한	104
	5 절	회원국의 권리	104
	6 절	권리의 배타성	104

규칙 106	1 절	ISU 경기들에 대한 재정보조금	104
	2 절	재정 보조금 삭감	104

D. 경기

규칙 107		ISU 선수권대회와 인터내셔널 경기의 개념	105
	1 절	ISU 선수권대회	105
	2 절	동계올림픽대회 (OWG) 및 동계유스올림픽대회 (YOG)	105
	3 절	인터내셔널 경기	105
	4 절	ISU 월드컵	106
	5 절	ISU 피겨스케이팅 그랑프리와 파이널	106
	6 절	피겨스케이팅의 챌린지 시리즈	106
	7 절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의 챌린저 시리즈	106
	8 절	ISU 월드 팀 트로피 피겨스케이팅	107
	9 절	인터내셔널 시니어 경기	107
	10 절	인터내셔널 주니어 경기	107
	11 절	인터내셔널 노비스 경기	107
	12 절	인터내셔널 마스터즈/어덜트 경기와 기타 스케이터 특별 그룹에 의한 경기	107
	13 절	"메달 위너" 인터내셔널 시니어 경기	107
	14 절	오픈 인터내셔널 경기	108
	15 절	클럽간 경기	108
	16 절	경기 명칭에 대한 제한	109
	17 절	국내경기	109
	18 절	ISU가 비준한 경기	109
규칙 108	1 절	나이별 및 선수구분과 경기에서의 나이계산 방법	110
	2 절	스피드스케이팅과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의 나이제한	110
	3 절	싱글과 페어 스케이팅 / 아이스댄스의 나이제한	111
	4 절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의 나이제한	111
	5 절	페널티	112
규칙 109		ISU 선수권대회, ISU 경기 그리고 인터내셔널 경기에 참가	113
	1 절	ISU 회원국을 통한 참가	113
	2 절	시민권/거주/이동허가	113
	3 절	이적 증명	113
	4 절	시즌 제한	114
	5 절	요건의 면제	114
	6 절	이적증명에 대한 거절권리	114
	7 절	절차의 통지	114
규칙 110		인터내셔널 경기의 발표일자	114
규칙 111		ISU 회원국과 스케이터간의 직접통신 금지	115
규칙 112		인터내셔널 경기의 발표내용	115
	1 절	일반 항목	115
	2 절	스피드스케이팅의 보충항목	115
	3 절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의 보충항목	115
	4 절	싱글 및 페어스케이팅/아이스댄스 및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의 보충항목	116
	5 절	보충조건	116
	6 절	관중을 위한 정보	116
규칙 113		어나운스먼트의 지연제출 또는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된 어나운스먼트	117

규칙 114	1 절	경기일 연기	117
	2 절	연기의 통지	117
	3 절	어나운스먼트의 취소	117
	4 절	연기 또는 취소 통지	117
규칙 115		엔트리	117
	1 절	일반적인 조건	117
	2 절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의 엔트리	118
	3 절	닉네임	118
	4 절	포스트 엔트리	118
	5 절	상세 정보	118
규칙 116		*보류*	119
규칙 117		참가비	120
규칙 118		경기의 유효성	120
규칙 119		의료보험	120
	1 절	참가 ISU 회원국의 의무	120
	2 절	ISU의 의무와 손해에 대한 무책임	120
규칙 120		수상	120
	1 절	ISU 비준 경기	120
	2 절	ISU 경기	120
규칙 121		오피셜	121
	1 절	오피셜 카테고리	121
	2 절	임명 권리	122
	3 절	오피셜(임명직) 지원시의 제약	122
규칙 122	1 절	오피셜들의 지명과 임명	125
	2 절	오피셜의 통신	125
규칙 123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및 직권 시정	126
	1 절	이의 제기 권리	126
	2 절	항의제기의 자격을 갖는 자들	126
	3 절	항의제기를 위한 시간제한	126
	4 절	항의의 제한	127
	5 절	레프리의 판정	128
규칙 124		항소	128
	1 절	항소 권리	128
	2 절	기한	128
	3 절	지연에 대한 무효과성	128
	4 절	항소 자격자	129
규칙 125	1 절	경기 오피셜들에 대한 선수와 팀 임원들의 행동규범	129
	2 절	부적절한 공개 언급	129
	3 절	ISU의 오피셜, ISU 임원, 선수들, 코치들 및 기타 관계자들의 행동규범	129
	4 절	ISU 규칙 및 윤리규정의 준수	130
	5 절	제재	130

E. 동계올림픽대회 (OWG) 및
동계유스올림픽대회 (YOG)

규칙 126	1 절	동계올림픽대회와 동계유스올림픽대회에서의 빙상경기	130
	2 절	엔트리	130
	3 절	스피드스케이팅	131
	4 절	피겨스케이팅	131
	5 절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131
	6 절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	131
	7 절	출전	131
	8 절	ISU 기술자문	131
	9 절	ISU 회장의 오피셜 임명	131

	10 절	개최국 ISU 회원국이 임명하는 오피셜	131
	11 절	국가 엠블럼 또는 유니폼 착용불가	132
		F. ISU 선수권대회	
규칙 127	1 절	선수권대회의 배정	133
	2 절	신청	133
	3 절	결정	133
	4 절	게시	134
	5 절	TV 중계권 및 확정 배정	134
	6 절	불완전한 TV 중계권 또는 기타 불완전한 중대한 요소	134
	7 절	확정된 배정 또는 선수권대회의 취소	134
규칙 128		선수권대회 개최순서	135
	1 절	세계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	135
	2 절	세계 선수권대회	135
	3 절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들 사이의 간격	135
	4 절	세계 주니어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	135
	5 절	쇼트트랙스케이팅 선수권대회	135
	6 절	배타성	135
	7 절	ISU 기의 게양	135
	8 절	세계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 선수권대회	135
	9 절	세계 주니어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 선수권대회	135
규칙 129	1 절	세계 선수권대회 규정 준수	136
	2 절	선수권대회 발표의 승인	136
	3 절	선수권대회 발표의 게시	136
	4 절	선수권대회 오피셜의 임명	136
규칙 130		선수권대회 참가	137
	1 절	세계 선수권대회	137
	2 절	유럽 선수권대회	137
	3 절	4대륙선수권대회	137
	4 절	ISU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의 엔트리	137
	5 절	ISU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의 엔트리	137
	6 절	ISU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의 엔트리	137
	7 절	ISU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 선수권대회의 엔트리	137
규칙 131		엔트리에 관한 일반사항	138
규칙 132		선수권대회 기간중의 통신	140
규칙 133		타이틀	141
규칙 134	1 절	메달	142
	2 절	배타성	142
	3 절	메달 수여	142
규칙 135		선수권대회 결과	143
		G. ISU 경기	
규칙 136	1 절	조직	144
	2 절	배정	144
	3 절	주최신청	144
	4 절	비용	144
	5 절	재정적인 준비	144
	6 절	참가 우선권	144
	7 절	포상금	144
	8 절	오피셜의 임명	145
		H. 비용	
규칙 137	1-8 절	인터내셔널 경기	146
	9-16 절	ISU 선수권대회	147

규칙 138		동계올림픽대회 (OWG)	150
	1 절	ISU가 부담 및 지불하는 비용	150
	2 절	ISU가 보상하는 비용	151
	3 절	조직위원회가 보상 및 지불하는 비용	151
		I. 도핑	
규칙 139	1 절	ISU 반-도핑 규칙과 ISU 반-도핑 절차	151
	2 절	세계반도핑규칙 수정에 대한 반영	152
		J. 의료	
규칙 140	1 절	경기장 내 의료서비스	153
	2 절	의료실	153
	3 절	의료책임오피셜	153
	4 절	응급의료서비스	153
	5 절	의료증명서	153
규칙 141		안전	154
	1 절	선수들의 안전에 대한 ISU 회원국의 책임	154
	2 절	의료용 장비의 승인	154
	3 절	안전의 확인	154
규칙 142		보안	154

정관

I. 일반

제 1 조

1. 명칭, 정관 및 법적 지위

1892년에 창설된 국제빙상연맹(이하"ISU"로 칭한다)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공인된 국제스포츠연맹(IF)으로서, 국제적인 모든 "피겨스케이팅"과 "스피드스케이팅" 스포츠를 관장하는 세계 유일의 기구이다. ISU는 국가별 연맹(이하 "ISU 회원국"이라 칭한다)들로 구성되며, 각 회원국 연맹은 이들 스포츠에 대하여 국내 수준에서 관할하며, 국제적 차원의 경우 ISU에게 유일무이한 관할권과 통제권이 있음을 인정한다.

각 회원국은 본 정관에 동의하며, 그 제 조항들을 준수할 것임을 서약한다.

2. 정관의 효력

본 정관의 변경 또는 개정은, 총회에 의하여 달리 결정되지 않는 한, 총회 후 즉시 발효된다. 그러나, "제안"이, 출간되는 의제(Agenda)에 그러하기로 명시되지 않는 한, 총회의 채택시점에 발효되는 것은 아니다.

3. ISU 회원국

회원국이란 어떤 국가에서 빙상부문(피겨 및 스피드) 어느 하나 또는 둘 모두를 관장하고 있다고 ISU의 공인을 받은 연맹을 일컫는다.

4. ISU 임시회원

ISU 임시회원이란 "집행위원회"가 "초기유예기간" 동안 본 정관 제 6조에 정의한 "임시회원"으로서의 멤버십을 인정한 조직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ISU가 인정한 "회원국" 자격을 가진 연맹이 없는 국가에서 빙상의 어느 한 부문 또는 두 부문 (피겨 및 스피드) 모두를 관장하는 연맹이 새로 창설되었으나 정식 회원국으로서의 모든 요건을 아직 다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포함될 수 있다.

5. 제휴클럽

"제휴클럽"이란 "회원국"연맹에 소속되었거나 제휴하고 있는 스케이팅 클럽을 의미한다.

6. 법적 실체성

ISU는 스위스의 민법 제 60조에 의거하여 그 법적 실체성을 갖는 스위스의 법인체이다. 따라서 ISU는 스위스 법 체계의 지배를 받으며 그 법적 주소지는 로잔(Lausanne)이다.

제 2 조

1. ISU 관할권

ISU는 세계에 걸쳐 빙판 또는 합성고분자 빙면에서 아이스 스케이팅 블레이드 또는 이와 유사한 대용품을 사용하여 수행하는 모든 형태의 국제적인 피겨 및 스피드스케이팅 스포츠를 관할한다.

2. 본부

ISU의 본부는 스위스 내에 집행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 3 조

1. 목적

ISU의 목적은 스포츠맨들 간의 우정과 상호이해를 기반으로 피겨와 스피드스케이팅 스포츠의 조정 및 통제는 물론 조직화된 발전과 보급을 추구한다. ISU는 저변을 넓히고 질을 향상시키며 세계인들의 폭넓은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피겨와 스피드스케이팅 스포츠의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ISU는 모든 회원국들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고 존중되도록 할 것임을 보증한다(제 7조 참조).

2. ISU 경기들

ISU의 여러 활동들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경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ISU 일반규정에 의거한, ISU 챔피언십, ISU 스피드스케이팅 및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경기, ISU 피겨스케이팅 그랑프리 경기, ISU 피겨스케이팅 세계 팀 트로피, ISU 인터내셔널 경기, ISU 시범경기, ISU 쇼, ISU 투어 및 공연/출연.

3. 외부의 간섭

ISU는 정치적인 또는 기타 이유에 근거한 ISU의 스포츠 활동에 대한 간섭을 용인하지 않으며 이러한 간섭을 피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제 4 조

1. 방법 및 행위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a) 빙판 또는 합성고분자 빙면에서 펼쳐지는 모든 종목의 피겨 및 스피드스케이팅 스포츠의 홍보, 우호적인 여론 관리.

b) "인터내셔널 경기들", 이에 대한 감독과 진행 등에 대한 통일적인 규정 제공.

c) ISU 선수권대회와 기타 "ISU 경기들"을 조직.

d) 동계올림픽대회와 동계유스올림픽대회에서 피겨스케이팅과 스피드스케이팅에 대한 기술적 조정과 방향 제공, 여기에는 ISU의 관할 하에 있지 않는 연맹이 조직한 기타 스케이팅 대회로서 ISU의 재가를 받은 대회를 포함한다.

e) 이견 해결 및 공식 결정의 공표.

f) ISU 경기들과 인터내셔널 경기들과 관련하여 오피셜들과 기타 이해당사자들의 모임/미팅을 조직.

g) ISU 스포츠를 위한 각종 교육용 및 정보제공용 자료들을 준비/배포.

h) 전 세계에서 ISU 활동에 관련된 모든 권리를 홍보하고 보호하는 배타적인 권리와 책임, 다만 회원국이 소유하는 대회는 제외한다.

i) 상기 h)항에서 언급한 배타적 권리에는 로고, 상표, 상호, ISU 경기명칭과 저작권 등 모든 유형의 지적재산권을 포함한다.

2. 발전프로그램

ISU의 "발전프로그램"은, ISU 집행위원회가 승인한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아래의 활동에 자금을 제공한다.

a) ISU의 기본원칙들을 증진하는 것, 여기에는 회원국들과 대회참여자들에게 직접 혜택이 가도록 또는 그들의 이익을 위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ISU 재정지원을 분배하는 것을 포함한다.

b) 인터내셔널 피겨스케이팅과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에서 참가자들(오피셜들을 포함)의 인원수와 질을 개선하는 것.

c) ISU의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는 회원국들의 발전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

d) 도움이 필요한 젊고 유능한 스케이터들을 지원한다.

e) 도움이 필요로 하는 회원국들에게 경험이 많은 코치와 경기운영요원들을 임시로 제공한다.

f) 회원국, 기술위원회, 위원회들 그리고 집행위원회 등이 식별/제안한 이니셔티브 발전을 지원한다.

각 회원국은 자유로이 어떤 사업이나 활동을 제안할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 실행이 담보되도록 어떤 역할이나 책임을 맡아 줄 것을 요청 받을 때 가능한 한 이를 수락해야 한다. 즉, (1) ISU 차원에서 결정한 이니셔티브, 또는 (2) 지역적 또는 세계적으로 ISU 경기의 발전이라는 보편적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회원국이 제안하고 ISU 가 승인한 어떤 활동.

ISU 발전프로그램의 자금집행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가능한 한 사후평가를 위해 측정 가능한 결과가 도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해당 활동을 한 회원국은 지출명세와 성취된 사업결과를 서면으로 ISU에 보고하여야 한다. 동 보고서는 권한 있는 ISU 문서에 명시된 양식으로 정해진 시기에 제출되어야 한다.

제 5 조

1. 회계연도

ISU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2. 유한책임

ISU의 제3자에 대한 어떤 이행의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금전적 채무는 ISU의 자산을 초과할 수 없다.

3. 재무적 자원

ISU의 주된 재무적 자원은 ISU 이벤트와 관련된 TV 방영권 및 후원 수수료, 동계올림픽에 대한 ISU의 참가에 대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기여금, 그리고 ISU의 재무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서 나온다.

4. 감사인

ISU의 연간재무제표 및 ISU 회계부서 감사 활동의 결과와 관련한 회계를 검증하고 공인된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총회에서 회계법인이 선정되어야 한다.

5. 면책

ISU는 다음 내용을 선언한다; 즉, 선거를 통해 또는 임명이나 자신의 요청에 의해 임원, 고문, 직원, 에이전트, 컨설턴트 또는 ISU 내에서 기타의 직을 수행하는 모든 자들("ISU 임직원")은 본 조의 목적성에 따른 각 직무별 대표성을 가지며, 아울러 만일 동 ISU 임직원이 허용된 자신의 권한 내에서 신의성실로써 행한 어떤 업무상 행위(ISU의 이익에 반하는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었다고 합리적으로 여겨지는 경우에 한함)로 인해 민/형사, 행정조사, 경찰조사 등을 불문하고 자신이 직접 또는 피고로서 어떤 소송이나 법적 절차(현재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료된 것을 불문함)의 대상이 되었고 그 결과로서 어떤 법원의 판정, 비용이나 벌금의 부과 또는 사건해결을 위해 실제적으로 지불한 비용 및 차후 합리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발생하였다면 ISU(또는 그 대리인)는 동 ISU 임직원이 이 모두로부터 면책이 되도록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본 조의 면책조항은 수임된 자신의 직무를 그만둔 사람에 대하여도 유효하게 존속하며, 나아가 그의 상속인, 유언집행자, 그리고 법원이 선임한 유언집행자도 그 효력을 원용할 수 있다.

6. 권한

상기 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ISU의 대표성을 갖는 어떤 한 "ISU 임직원"이 주어진 자신의 권한을 넘어선 행위로서 가령 어떤 계약이나 약속의 표시를 하였고 이를 상대방이 그 시점에 인지하고 있었거나 또는 그랬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존재하는 경우, 그러한 약속이나 계약은, ISU의 비준을 받지 못한다면, ISU에 대하여 구속력이 없다.

7. ISU 위임 또는 법적 구속의 제한

본 정관이나 집행위원회에 의해, 또는 회장과 사무총장으로부터 권한을 받지 않았다면, 임원, 그 밖의 임직원, 고문, 컨설턴트, 에이전트 그리고 직원을 포함한 어떤 사람도 ISU를 책임 지우거나 법적으로 구속할 수 없다.

II. ISU 멤버십

제 6 조

1. 일반 요구조건

ISU 멤버십은 스케이팅의 두 부문 모두 또는 각 개별 부문에 있어서 이미 ISU 회원인 연맹이 존재하지 않는 해당 국가의 연맹에 주어질 수 있다. 만일 ISU 집행위원회가 어떤 한 국가에 있어 [피겨스케이팅부문]과 [스피드스케이팅부문]의 두 빙상 종목이 별도의 두 연맹에 의해 각기 개별적으로 관장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ISU 는 이 둘 모두를 해당 부문별 "회원국연맹"으로서 멤버십을 인정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반대로, 어느 한 부문에 대해 하나의 연맹만 존재하는 경우, ISU 집행위원회는 동 연맹을 해당 부문(가령 피겨스케이팅부문 또는 스피드스케이팅부문)에 대한 회원국연맹으로서 멤버십을 주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만일 어떠한 회원국연맹이 그 나라에서 ISU 스포츠 이외의 스포츠까지도 관장하는 단체의 부분이거나 그 부분이 되는 경우, 이러한 단체의 명칭은 그 단체가 ISU 스포츠도 관장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되어야 하며, 그 단체의 조직구조는 ISU 스포츠에 필수적인 관리를 허용하여야 한다.

2. ISU 임시회원

a) 신규로 회원국 자격을 획득한 연맹은 최초의 3년 동안 임시회원 자격을 갖게 되는데,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를 인정한다.

   i) 이전에 정식 "회원국" 자격을 갖고 있던 연맹이 해당 국가의 어떤 정치적인 통폐합 결정으로 인해 신생연맹이 생겨난 경우로서, 단 이 경우 동 신생연맹은 정식 회원국으로서의 멤버십유지를 위한 기타의 요구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동 신생연맹이 보유한 스케이터들이 인터내셔널 경기에 출전한 경력을 갖고 있음을 증빙문서로서 제시한 경우에 한한다.

   ii) 임시회원이 상기의 3년 유예기간을 아직 채우지 않았더라도, 만일 아래의 3항에 명시된 "최소요건"들을 집행위원회가 만족하는 수준으로 모두 충족시켰으며 자신이 보유한 스케이터들이 인터내셔널 경기에 출전하였다는 증빙문건을 제출하였을 때.

   iii) i)항에 의한 새로운 회원국과 ii)항의 임시회원은 집행위원회가 회원국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발표하는 즉시 정식 회원국자격을 갖는다.

   iv) 상기의 i) 그리고 ii) 및 아래 3 f)항에 해당하지 않는 준 회원국은, 3년의 유예기간 경과 후에, 아래의 3항에 명시된 "최소요건"들을 집행위원회가 만족하는 수준으로 모두 충족시켰으며 자신이 보유한 스케이터들이 인터내셔널 경기에 출전하였다는 증빙문건을 제출하였다면, 동 임시회원은 그 즉시 정식 회원국자격을 갖는다. 만약 집행위원회가, 3년의 유예기간 경과 전에, 어떤 임시회원의 회원국자격전환신청 건에 대해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면, 그 사유가

집행위원회 결정문에 명시되어야 하며 또한 ISU 통신문의 형식으로 공지가 되어야 한다. 동 판정결과를 불복하는 항소는 바로 다음 회차의 총회 시 상정이 가능하다(아래의 10항을 참조할 것)

b) ISU "회원국" 자격을 아직 갖지 않은 국가에서, 비록 연맹행태는 아니더라도 어느 한 부문(또는 둘 다)의 빙상종목을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존재한다면, ISU는 동 조직 또는 단체에게 임시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c) 정식 회원국 자격을 득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아래의 3항에 명시된 "최소요건" 조항은 임시회원 신청자들에게도 공히 적용된다.

3. 최소요건

ISU의 빙상종목들을 조직 및 운영하는 ISU 회원국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ISU 멤버십을 위한 다음의 "최소요건"이 요구된다.

a) 멤버십을 신청코자 하는 국가별 조직 또는 협회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최소 2년의 기간 이상 동안 자국 내에서 연맹의 형태로 자신이 실질적으로 빙상종목들을 관장하여 왔으며, 해당 NOC의 투표권을 가진 회원으로 인정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b) 신청국, 임시회원 및 회원국 공히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i) 자국 내에 본부를 가져야 한다.

ii) 유효한 정관 및/또는 부칙(By-Laws)에 따라 설립되어야 한다.

iii) 조직구성과 임원진의 선출이 합법성을 가져야 한다.

iv) 경기들을 포함한 각종 활동들을 규약하는 규칙이 수립되고 출간물 형태로 명문화가 되어야 한다.

v) ISU의 제 법령집들을 따를 것임을 인정하며, 특히 모든 임원진 및 선수들은 모든 활동들에 대해 전제조건으로서 동 ISU 법령들을, 그 수정조항을 포함하여, 준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자신의 규칙에 명시되어야 한다.

vi) ISU의 반-도핑 규칙들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제 절차적 규정들을 자신의 규칙에 포함시켜야 하며, 특히 관할 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활동들에 대해 전제조건으로서 동 ISU 반-도핑 규칙, 수정규칙을 포함하여, 들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명문화되어 있어야 한다.

vii) 매년 주기로 전국단위의 선수권대회를 개최하고 있어야 한다.

viii) 오피셜의 교육 및/또는 훈련을 위한 세미나, 강습회 등을 실시해야 한다.

ix) 각 ISU 빙상종목을 실행하기에 적절한 크기를 가진 천연 또는 인공의 활발하게 운영되는 아이스링크가 자국 내에 1개 또는 그 이상 존재해야 한다.

c) 임시회원의 경우 추가요건으로서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즉, 올림픽헌장 제 28조에 의거하여 창설된 자국의 국가올림픽위원회(NOC)에 대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맹연맹으로서 회원신청을 하였고, 또 그 신청이 수락되었음을 나타내는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d) 상기와 관련하여 동 NOC가 동 신청자의 준회원가입 신청을 거절하거나 또는 정식회원으로서의 승격을 거절한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위원회는 동 신청자가 임시회원 자격자인 경우 정식 회원국으로서의 멤버십을 부여할 수 있으며, 회원국인 경우엔 계속적으로 정상적인 회원국으로서의 자격유지를 인정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집행위원회는 자신의 독자적 판단으로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행동의 일환으로서 동 신청자가 자국의 NOC로부터 투표권을 가진 회원으로서 가입거절을 당했다는 사실을 IOC에 통지할 수 있다.

e) 신청자의 신청 시 또는 자신이 주도하여, 집행위원회는, 자신의 재량으로, 어떤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한다거나 또는 과도한 요건충족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신청자에 대해 상기 b)의 (vii)호(전국단위의 선수권대회) 요건과 (viii)호(오피셜을 위한 세미나) 요건을 일시 면제해 주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해 요건을 일시 면제할 때, 집행위원회는 면제유예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일시 면제혜택을 받은 동 신청자는 동 기간 동안 일시 면제된 해당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획득된 멤버십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여기서의 면제유예기간은 보통 3년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상기처럼 집행위원회가 일시 면제 혜택을 주기로 결정한 경우, 또한 집행위원회는 통상적으로 회원국에 지급하는 ISU의 재정보조금을 감액 또는 전부취소 할 수 있다.

f) 위의 e)에 더불어, 신청자의 신청수리 시 또는 자신이 주도하여, 집행위원회는, 자신의 재량으로, 신청자에 대해 상기의 b)항 (ix)호 (아이스링크 설치의무) 요건을 일시 면제해 주는 결정을 할 수 있는 바, 단 해당 국가가 동 요건을 충족시키기에는 지리적, 기후적 또는 경제적 상황이 허락하지 않을 경우에 한한다.

만약 집행위원회가 임시회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상기와 같은 일시 면제 혜택을 주기로 결정한 경우, 그 해당 임시회원의 멤버십은 해당 요건이 완전히 충족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임시회원 지위에만 머물게 된다.

상기와 관련하여 완전히 회원국지위를 획득한 국가가 동 b) 항 (ix) 호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신뢰할만한 증거가 채집된 경우, 집행위원회는 자신의 자율적 판단으로 동 의무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동 국가의 회원국지위를 임시회원지위로 강등시키는 조치를 할 수 있다.

g) 회원국연맹의 내부상황에 관한 정보로서, 가령 임원진(회장, 이사회, 사무총장 등)의 선출적격성에 대한 의문이나 연맹이 내분으로 둘로 쪼개졌다든지 하는 불미스러운 정보가 입수되는 경우, 통상적으로 ISU는 사실진위를 해당 국가의 NOC에게 물어보게 된다. 그러나 ISU의 자율성 측면과 적격한 회원국만이 멤버십을 갖도록 하여야 하는 집행위원회의 책임에 비추어, 집행위원회는 다른 루트를 통해 취합한 정보를 활용하여 추후 행동을 정할 수 있다. 단, 그 상황이 법원절차의 대상이 되었다는 증거가 제공되는 경우, 관할법원의 최종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통상적으로 ISU는 어떠한 변경도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

4. 회원국이 부문별로 연맹조직을 분리한 경우

피겨스케이팅부문은 싱글과 페어 스케이팅, 아이스 댄스,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 종목들을 포함하며, 스피드스케이팅부문은 스피드스케이팅,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종목들을 포함한다. 만일 회원국이 동 양대 부문들을 그 동안 하나의 연맹조직으로 관장하여 오다가 별도의 독립적인 조직 또는 협회를 만들어 동 부문들을 분리하여 맡기로 하는 결정을 한 경우, 분리된 두 조직 모두 개별적으로 멤버십 획득을 위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만일 동 회원국이 이전에 3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완전한 회원국지위를 갖고 있었다면 동 신청들은 신청 즉시 회원국연맹으로서의 자격이 부여되나, 단 상기 3항에 명시된 회원국을 위한 "최소요건"들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5. 투표권 수

본 조의 4항에 따라 만일 회원국이 하나의 빙상부문만을 관장하고 있는 경우, 동 회원국의 투표권 수는 제 30조 11항의 규약을 받으며, 이 때 하나의 빙상부문만을 관장하고 있다는 상황은 ISU의 재정보조금 지급에 반영할 수 있다.

6. ISU 멤버십 신청

ISU에 멤버십을 신청할 때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문서들로는 다음과 같다.

a) 공식적인 서면 신청서로서, 본 정관 제 7조의 규정을 완전히 준수한다는 신청자의 확약서를 포함할 것.

b) 신청자(협회 또는 조직)의 정관 및/또는 부칙 사본으로서, 자국어로 작성된 것

c) 상기 b)호 문서들의 영문번역본

d) 빙상부문의 관장기구로서 자신에게 소속된 단체들 및 그 임원진의 리스트

e) 제휴클럽들의 수와 그 멤버 리스트

f) 가장 최근에 열린 전국단위 선수권대회의 대회결과

g) 자국 내에서 현재 운영중인 아이스링크들에 대한 상세 설명으로서 크기와 위치를 포함할 것

h) 상기 6조 3항 f)의 집행위원회에 의한 아이스링크 존재요건에 대한 일시 면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재 신청자가 관장하고 있는 ISU 빙상종목들로는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되, 각 종목, 또는 관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종목이 현재 실제적으로 신청자의 국내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증빙을 포함할 것.

7. 신청자의 검증

집행위원회는 사무총장과의 협조 하에 신청국이 ISU가 정한 멤버십 지원자격을 갖는 국가별 협회로서의 충분한 자격성과, 관련 스포츠 활동을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연맹으로서 해당 국가에서 인식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모든 필요적 절차와 단계들을 수행할 것이다.

8. ISU 회원국 제출문서의 정정

선거 후 및 그 후에, 상기의 6항 b)호에 따라 처음 제출된 문서에 발생한 모든 변경사항에 대하여 관련 회원국은 그 내용을 사무국에 통지할 책임이 있다.

9. 수리와 거절

집행위원회는 오직 회의를 통해서만 ISU 멤버십 신청 건들을 심의하며, 모든 ISU 멤버십 신청 건에 대하여 수리 또는 거절을 결정하여야 한다.

10. 항소

상기 9항에 따른 집행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항소는 바로 다음에 열리는 총회에 제기될 수 있다. 회원국 및/또는 회원국 신청자에 의한 항소는 다음 총회 전에 3월 30일 이전까지(동 일자의 당일을 포함함) 등기우편으로 ISU 사무국에 도착이 되어야 한다. 접수가 된 항소 건들은 총회 의제(Congress Agenda)의 11항 아래에 포함된다.

11. 모니터링

각 회원국(특히, 더 큰 어떤 스포츠조직에도 소속되어 있는 회원국인 경우)연맹은 자국 내에서 ISU 빙상종목들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통제 및 관장하는 있다는 점과 최소한의 국제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언제라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최소한의 국제활동이란 직전의 3개 시즌 동안 회원국 소속 스케이터들이 최소 하나 이상의 인터내셔널 경기에 출전한 경우를 말한다.

제 7 조

1. ISU 회원국 및 그 산하 회원단체들과 대회참가자들의 의무

ISU의 각 회원국과 동 회원국 산하의 모든 회원단체들 및 제휴클럽들 및/또는 ISU나 회원국 차원에서 열리는 국제적인 활동들에 참가하거나 참가자로서의 자격을 갖는 모든 관계자와 선수들은,

a) ISU 법령들(제6조 3항 b) (v)를 참조)에 의해 규약되며, 모든 국제적인 사안들에 대한 총회, 집행위원회, 회장 및 사무총장이 내린 결정을 따라야 하는 대상이 된다.

b) 모든 국제적 또는 국가별 사안들에 있어 ISU의 목적, 활동, 단합 등에 부합되는 행동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지며, 국제적이든 국내적이든 이를 불문하고 ISU의 배타적 유일성과 그 이익 및 신뢰성에 반하는 일체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c) 이 조의 1 a) 및 b) 항에서 언급하는 의무의 위반은 해당 위반이 17조 1. t)에서부터 w) 항에 따라 다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25조 9항의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2. 참여

ISU 경기, ISU 총회, ISU 세미나, ISU 발전프로젝트 등이나 집행위원회가 "ISU"라는 명칭의 사용을 허락한 기타의 활동들이 만일 자국의 영토 내에서 열리게 되는 경우, 해당 국가의 회원국연맹은 자신의 임원, 오피셜, 산하회원 및 제휴클럽의 소속회원들로 하여금 최대한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3. ISU 임시회원의 권리

임시회원은 총회에서 임원선출에 대한 투표권과 후보 지명권 및 피선거권을 제외하곤, 본 규칙들에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회원국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4. 특별클럽의 권리

특별클럽이라 함은 Internationaler Schlittschuh-Club Davos와 Stockholms Allmanna Skridskoklubb 만을 말한다. 특별클럽의 경우 역사적인 기여도를 감안하여 단지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은 주어지지만, 투표권이 없으며 회원국에게 주어지는 기타의 권리도 없다.

5. ISU법령의ISU 임시회원

ISU 법령집들에 "회원국(Member)"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 이는 임시회원도 포함하는 의미인 것으로 간주하되, 단 임시회원의 권리는 상기의 3조에 정한 바를 따른다.

6. 타 클럽에 대한 스폰서

회원국은 타 회원국 국가에 소재하는 클럽에 대해 스폰서를 할 수 없으며, 단 동 스폰서를 관장하는 타 회원국이 이를 동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7. 임원, 코디네이터, 고문, 직원 및 컨설턴트의 의무

임원, 코디네이터, 고문, 직원 및 컨설턴트들은 다음을 만족하여야 한다.

a) ISU 법령들은 완전히 존중하고 준수할 것임을 자신의 서명이 들어간 표준양식을 사용하여 작성 후 집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b) 모든 관련 회의에 참석해야 하며 회의 의제의 쟁점에 관하여 잘 준비하고 숙지한 상태로 회의에 와야 한다.

c) ISU법령과 조직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한다.

d) 이미 수립되어 있는 절차들을 준수하며, 타인의 견해를 존중하고, 건설적인 제안들을 하며, ISU가 빙상스포츠와 스케이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e) ISU와 빙상스포츠 분야의 최선의 이익과 방향으로 빙상 커뮤니티 안팎에서 제기되는 관심사를 회장과 사무총장이 잘 알고 있도록 전하여야 한다.

f) 총회, 집행위원회, 회장 그리고 사무총장이 하는 일은 비록 소수파 입장이더라도 적극적 자세로 지원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장소를 불문하고 모든 결정에 대한 공개토론에 지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g) 각 내부 조직 별로 내려진 결정들에 대한 기밀유지의 책임이 있다.

h) ISU의 자체평가 프로그램, 발전 워크숍, 세미나 및 강습회 등, 기량향상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III. 조직

제 8 조

ISU 의 조직, 임원, 매니저, 코디네이터, 고문 및 컨설턴트는 다음과 같다:

a) 조직

i) 총회

ii) 집행위원회

iii) 징계위원회

iv) 기술위원회

v) 선수위원회

vi) 의료위원회

vii) 발전위원회

viii) 사무국

b) 임원

i) 회장

ii) 부회장— 피겨스케이팅부문 부회장과 스피드스케이팅부문 부회장

iii) 집행위원— 피겨스케이팅부문 소속 5인과 스피드스케이팅부문 소속 5인으로 구성

iv) 사무총장

v) 징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vi) 기술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vii) 선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viii) 스포츠 이사

ix) 의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x) 법률고문

xi) 회계담당자

xii) 발전위원회 위원

c) 스포츠 관리/조정, 스포츠 기술 관리, 마케팅, 홍보/통신, 회계, 재무/관리, ISU 이벤트 관리 여행 서비스 및 기타 기능과 같은 특정 기능을 위한 매니저 또는 코디네이터 또는 관리자 (임원이 아닌 ISU 직원 또는 임명된 매니저 또는 코디네이터 또는 관리자)

d) ISU 조직 내에서 관련 전문지식을 사용할 수 없거나 충분히 사용할 수없는 특정한 작업을 위해 임명된 고문 및 컨설턴트

A. 총회

제 9 조

1. 총회의 회의

총회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개최된다.

a) 정기총회는 매 짝수 년마다 열리되, 가능한 한 6월이나 7월 중에서 집행위원회가 개최일자를 지정한 후 총회일로부터 최소 6개월의 기한을 두고 모든 회원국들에게 통지된다.

b) 선거가 있는 차기 정기총회는 2026년에 열린다.

c) 앞으로 선거가 있는 정기총회는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해에 맞춰 매 4년마다 열리되, 동계올림픽이 끝난 후 같은 해에 개최키로 한다(2018년에 시작).

d) 선거가 없는 정기총회는 포럼을 포함한다(30조 6항을 참조).

e) 특별총회는 집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회원국 총수의 1/5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발의를 하는 경우에 개최된다.

2. 총회 회의 참석

총회 회의참석은 오직 회원국 회원, 임원, ISU 직원, 법정회계감사관, 그리고 집행위원회에서 초청한 미디어 대표를 포함한 게스트가 참가할 수 있다.

3. ISU 회원국의 대표자

각 회원국연맹이 정당하게 지명한 대표자만이 회원국을 대표하여 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 동 대표자는 자신이 대표하는 해당 회원국연맹의 일원이어야 하며, 동 연맹이 소재한 국가의 시민권자이거나 최소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거주한 영주권자이어야 한다.

4. 총회 의제 및 절차

총회에서 다뤄질 의제들과 안건처리를 할 때 준수하여야 할 절차들은 여기에 별첨한 "절차규정서(Procedural Provisions)에 나타나 있다.

5. 총회의 결정의 최종성

총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회원국들을 규약하며, 제27조의 4항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곤, ISU 체계 내의 항소는 물론 그 어떤 외부의 항소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 10 조

1. 총회 회의 장소와 일자

집행위원회는 정기총회와 특별총회의 각 개최장소와 일자를 결정한다.

만일 회원국들로부터 추천이 있으면, 총회의 개최장소 선택은 그러한 추천에 근거하여야 한다.

2. 총회의 정족수

각 회원국은 사무국이 정한 기일 이내에 자신이 총회에 참석할 지의 가부에 대해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정기총회 또는 특별총회가 유효하게 개최되려면 총 회원국 수의 최소 50% 이상이 총회에 참석해야 한다. 회원국들이 총회를 떠남으로써 남은 회원국 수가 감소하여 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 총회는 남은 회원국의 다수결의 찬성을 통해 속개될 수 있다.

3. 총회의 취소 또는 연기

정기 총회가 개최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모든 ISU 회원국에게 이를 통지하고 총회 연기 또는 취소 여부에 대해 이메일 투표를 실시한다.

4. 전자/디지털 투표

총회가 개최되지 않게 된 경우, 집행위원회는 총회 개최일로 최초에 결정했던 일자를 기준으로 6주 이내에, ISU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 시급하며 긴요하다고 집행위원회가 생각하는 의제 항목에 대하여 ISU 회원국들에 전자/디지털 투표를 요청하여야 한다.

5. 전자/디지털 투표 기한

집행위원회는 ISU 회원국이 최소 1주일 동안 투표를 발송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제 11 조

1. 정관, 절차규정, 일반규정 및 특별규정의 개정

집행위원회, 기술위원회 및 회원국은 정관, 절차규정, 일반규정 또는 특별규정의 어떤 내용을 개정해 달라는 제안을 총회에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집행위원회와 기술위원회는 회원국들로 접수 받은 제안을 정당하게 고려한 기술규칙의 개정안을 해당 부문에 제출할 권한을 갖는다.

2. 개정을 위한 다수

a) 절차규정을 포함한 정관 또는 일반규정과 특별규정 개정 시에는 2/3 다수의 가결이 있어야 하며, 두 경우에 회원국 총 수의 50%의 의무적인 직접 출석이 요구된다. 2/3 계산의 결과 값이 분수가 되는 경우, 그 다음으로 큰 정수를 2/3 다수로 취한다.

b) 각 기술위원회가 제안하고 각 종목별 스포츠 기술 이사, 각 부회장 및 집행위원회가 승인한 기술 규칙의 변경 사항 및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변경 사항은 총회 기간에 ISU 회원국이 이의를 제기하고 이 이의가 단순 과반수 표를 얻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락된다. 그와 같은 이의는 기술 규칙(들)의 변경 제안을 수락하지 않는 데 한하는 것일 뿐, 기술 규칙의 어떠한 개정도 제안할 수 없다. 기술 규칙의 규칙은 정관 또는 일반 규정 또는 특별 규정에 포함된 규칙을 변경하거나 개정할 수 없다.

제 12 조

언어 - 원문

영어가 ISU의 공식언어이며, 모든 통신문은 물론 총회의 제 절차, 공식문서, 계약 및 출판물에 공히 영어를 사용한다. ISU 법령집과 기타 모든 공식 출판물들에 있어 영어본이 원문이며, 다른 언어들을 지배한다. 즉, 불어, 독어, 러시아어 등이 보이더라도 이는 보조언어인 것으로 간주한다. 회원국은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것은 각자의 재량이나, 단 영어본과 번역본간에 어떤 불일치가 존재하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각종 국제적인 빙상경기들에 있어서도 모든 어나운스와 진행은 영어로 이루어지며, 필요할 경우에 한해 기타 언어가 추가로 사용될 수 있다.

제 13 조

1. 선거 - 피선거권

a) 회장, 부회장, 집행위원회 의원, 기술위원회 위원장, 기술위원회 위원, 징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징계위원회 위원(이들을 "임원진"이라 통칭한다)의 선출은 매 4년마다 열리는 총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임원진의 각 직별 임기는 공히 4년이며, 임원진의 모든 직들은 총회에서 선거가 시작되기 직전의 시점에 공석인 것으로 간주한다. 2014년 총회 이후부터 그리고 본 조의 3항에 의거하여, 임원진의 각 직은 4년의 각 임기를 최대 3회까지 연속으로 선출직 임기에 봉직할 수 있다. 이 규정의 명확한 표기를 위하여 2014-2016및 2016-2018기간을 1회의 기간으로 계산한다. 2014년 이전에 피선출되어 봉직한 기간은 동 최대 3회의 연속중임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또한 임원진 내에서 "직"의 이동이 있는 경우 독립적인 피선으로 간주하는 바, 이 말은 다른 직책으로 피선되었다면 동 3회 연속중임은 옮긴 직책부터 새로이 다시 기산한다는 의미이다. 각 "사무실" (회장, 부회장, 위원, 기술 위원장, 기술 위원, 징계위원회 의장, 징계위원회 구성원) 별도로 다른 직에 선출되면, 별도의 최대임기가 추가되는 것으로 계산된다.

b) 선거에 출마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i) 회원국이 소재한 국가의 시민권자일 것. 여기서 시민권자란 제 16조 1항, 제 20조 2항 및 제 25조 3항의 취지에 부합되는 경우를 말한다.

   ii) 이중 또는 다중 국적자인 경우, 상기 i) 호의 의미에 부합되는 시민권으로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이 동 선택된 국가의 시민권자라고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이렇게 신고된 시민권은 해당 시민권 국가의 회원국이 동 시민권을 확인 및 추인을 해 줘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

   iii) 상기 ii)호에 해당하는 자가 동일한 총회에서 다른 국적으로 다른 선거에 출마를 할 수 없으며, 변경된 또 다른 국적의 해당 회원국이 재출마자의 국적을 추인하였더라도 이를 불문한다.

2. 후보자가 제출하는 서류

모든 입후보자들은 선거를 위한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집행위원회가 승인하여 사무국이 배포한 표준양식에 자신이 출마하고자 하는 임원직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입후보자가 다른 복수의 임원직(즉 회장, 부회장, 집행위원회 의원, 기술위원회 위원장, 기술위원회 위원, 징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징계위원회 위원)에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임원직에 일단 당선된 자는 뒤이어 선거가 진행되는 다른 직에 대하여는 더 이상 출마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히 설명되고 양해되어야 한다.

임원직에 입후보 지명자를 내려는 회원국 또는 다른 회원국 또는 집행위원회의 선수 위원의 경우 선수위원회는 각각 총회 시작 적어도 6주 이전까지 다음의 ISU 서류들을 사무국에 발송하여야 한다.

a) 입후보자의 성명, 시민권, 회원국연맹의 소속여부 및 기타 인적 사항이 포함된 양식.

b) 입후보자의 이력서 (CV)가 포함된 양식.

c) 지명된 자가 어느 회원국연맹의 회장/위원장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는 서명된 신고서가 포함된 양식. 만약 그러한 회장/위원장인 경우엔, 당선될 경우 그는 지체 없이 그 현직을 사임할 것이라는 즉각적인 효력이 있는 확약서.

d) ISU 법령들(반드시 다음으로만 한정하지는 않으나 특히 본 정관과 ISU 윤리규정에 명시된 임원으로서의 의무들)을 완전한 수준으로 존중 및 준수할 것이라는 서명된 확약을 포함한 양식

아래의 보충 지명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 정해진 기한 후에 접수된 것 또는 불완전한 지명은 효력이 없다. 이 고지된 기한을 넘겨 도착한 지명 또는 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않은 지명은 모두 무효로 간주된다. ISU 사무국은 임원직 별 입후보자 명단, 소속 회원국, CV 등이 포함된 리스트를 선거가 치러지는 총회개최일로부터 3주 이전까지 각 회원국들과 현 임원진들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선출할 임원직에 비해 적은 인원이 지명되었을 경우, 해당 특정 임원직에 대한 보충 지명은 총회 개시 후 의장이 지정하는 기한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그와 같은 보충 지명에는 위에서 언급한 ISU 양식을 사용하여 하여야 한다. 보충 지명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상기 2항에 따라 특정한 임원직에 대하여 어떠한 지명도 접수되지 않은 임원직에 대해서만 출마해야 하며, 위의 2항에 따라 지명을 받은 후보자에 대항하여 출마해서는 안 된다.

3. 나이제한

재출마 여부를 불문하고 ISU 의 선출직 임원직(단, 본 정관의 제20조 2항 및 특별규정에 명시된 기술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제외)에 출마하는 자는 선출되는 시점의 나이가 75세 미만이어야 한다. 선출된 임원이 그 임기 도중에 75세에 이른 경우 그 사실을 이유로 현직 임기를 계속 봉직할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되지는 않는다.

4. 비적격자

일반규정에 정의되어 있는 비적격자는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5. 공석을 채우기 위한 특별선거

선출직인 임원직이 언제라도 공석이 되는 경우, 동 직에 대한 바로 이전의 선거에서 최대득표를 한 차순위 낙선자가 그 즉시 동 공석을 채운다. 집행위원회의 선수 위원에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 회장이 속한 부문과 다른 부문의 이전 선거에서 선출되지 않은 입후보자 중 최대 득표자가 즉시 동 공석을 채운다.

그러나 이 방식으로도 동 공석을 채우지 못한 경우, 집행위원회는 그 즉시 동 공석을 메울 자를 임명해야 한다. 이렇게 임명된 자의 임기는 해당 직에 대한 선거가 치러지는 바로 다음 총회 시에 만료된다.

6. 서열

2016년에 선출된 스피드스케이팅부문 부회장이 2018년총회까지 제1서열의 부회장으로서 직을 수행한다. 2018년에 선출된 피겨스케이팅부문 부회장이 2022년 총회 전 까지 제1서열의 부회장직을 수행한다.
이런 식으로 부회장 서열이 교대되면서 계속 이어지는 총회의 부회장 직을 수행한다.

7. 집행위원회 및 기술위원회 의원의 서열

집행위원회의원들은 각 부문별로, 그리고 5개의 각 기술위원회 위원들은 각 종목별로 따로따로 서열을 가지되, 서열은 해당 부문 또는 종목별로 이루어진 선거에서 최대득표자부터 내림차순의 순서대로 정해진다. 집행위원회 선수 위원은 서열이 없다.

8. 집행위원회 의원 선출 순서

집행위원회의원의 선출은 피겨스케이팅 부문의 의원선거를 먼저 시작하였던 2010년을 기준으로, 선거총회 때마다 부문별 선거 시작순서를 매번 교대하여야 한다.

제 14 조

1. 공석

현직 회장 직이 임기 중 공석이 된 경우, 제1서열의 부회장이 동 공석을 맡아 회장 직을 수행한다. 제 2 서열의 부회장이 다음 선거까지 제1서열의 ISU 부회장이 된다. 만일 회장의 공석으로 인해 승격된 제1서열 부회장의 출신 부문이 공석이 되었던 회장의 출신 부문과 서로 다른 경우, 상기 제 13조 6항과 8항에 명시된 부문 간의 교차규정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2. 부회장의 공석

어느 한 부문의 현직 부회장 직이 공석이 된 경우, 해당 부문 내의 집행위원회의원들 중 서열이 가장 높은 자가 공석이 된 동 부회장 직을 수행한다. 이처럼 최대서열자가 빠진 이후의 동 부문 내 집행위원회의원들의 서열은 상기 제 13조 7항의 원칙에 따라 서열이 상향 조정되는 방식으로 빈 자리를 메운다.

3. 집행위원회 의원의 공석

어느 한 부문 내 집행위원회의원들 중에서 공석(들)이 발생한 경우, 상기 제 13조 7항의 원칙에 의거하여 동 부문 내 의원들 내에서 빈 공석(들)을 채운다.

4. 기술위원회 의원의 공석

5개 기술위원회 중 어느 한 위원회의 위원장 직이 공석이 되거나 또는 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공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위원회 내에서 최고서열자가 위원장 직을 수행하며, 그 결과로 인한, 또는 위원의 공석으로 인한 공석들을 잔류위원들의 서열에 입각하여 채우되, 모든 경우들이 제 13조의 5항과 7항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5. 퇴직

회원국연맹의 ISU 회원국 멤버십이 끝나는 경우, 동 회원국 출신의 의원이나 위원(즉, 집행위원회의 의원, 5개 기술위원회 중 하나에 속한 위원 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자동으로 그 직에서 퇴직된다.

제 15 조

명예회원과 ISU 의 위촉

1. 집행위원회의 재량

선출직 임원의 직을 수행했던 전직 임원들이나 자발적으로 지명을 수락하여 고문의 역할을 수행했던 자들 중 국제적으로 빙상경기의 발전에 공헌을 한 사람들 중에서, 집행위원회는 자신의 독자적 재량으로 ISU의 명예회장, 명예부회장 또는 명예회원으로서 위촉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위촉은 총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기준

집행위원회는 명예직 위촉을 고려함에 있어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a) 명예회장의 경우, 최소한의 요건으로서 피지명자는 최소 2기 이상을 ISU 회장으로서 직을 수행했던 사람이어야 한다.

b) 명예부회장의 경우, 최소한의 요건으로서 피지명자는 최소 2기 이상을 ISU 부회장으로서 직을 수행했던 사람이어야 한다.

c) 명예회원의 경우, 최소한의 요건으로서 피지명자는 ISU의 기술위원회 위원, 기술위원회 위원장, 집행위원회 의원, 임원으로 봉직하였거나 스포츠 이사/매니저나 고문, 또는 징계위원회 및/또는 이전의 상소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소 2기 이상 선임되었던 사람이어야 한다. 본 c)호의 적용에서 서로 다른 직에서의 봉직 기간은 합산한다.

3. 명예회원의 자문역 자격

"명예회원"으로 일단 위촉이 되면 더 이상 현직 임원의 직으로 지명 또는 출마를 할 수 없으며, 국제경기에서 레프리(Referee), 테크니컬 컨트롤러(Technical Controller),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Technical Specialist), 데이터/리플레이 오퍼레이터(Data & Replay Operator), 져지(Judge), 스타터(Starter), 선수 스튜어드(Competitor Steward) 등으로 활동할 수 없으나, 요청을 받은 경우 자문역할은 할 수 있다.

4. 명예회원과 현직임원의 관계

"명예회원"들은 요청이 있는 경우 현직 임원들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명예회원과 현직 임원들과의 관계 유지를 지원 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5. ISU 금장훈장(Gold Award of Merit)

"ISU 금장훈장"은 국제적 차원의 ISU 빙상 스포츠에 대한 헌신과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집행위원회 재량으로 수여하는 상이다. 금장훈장의 수여대상은 주로 "임원진"들과 ISU 빙상종목들의 관계자들로서,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a) 대상자가 ISU 임원 또는 ISU 오피셜인 경우,

   i) ISU 레프리/테크니컬 컨트롤러/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스타터 또는 선수 스튜어드로서, ISU 챔피언십 및 동계올림픽대회에서 자신의 직무를 최소 15년 이상 수행한 자

   ii) ISU 져지로서, ISU 챔피언십 및 동계올림픽대회에서 자신의 직무를 최소 20년 이상 수행한 자

   iii) ISU 임원 또는 오피셜(official)로서, 최소 10년 이상을 봉직하였고 또한 ISU 조직과 빙상경기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확산하는데 특출한 또는 특별한 기여를 한 자; 단, 아주 예외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ISU 집행위원회는 여기에 언급된 기간 요건을 무시할 수도 있다.

b) 대상자가 ISU 임원/오피셜이 아닌 경우(가령, 회원국연맹의 관계자, 사무국 직원, 기타 기관의 관계자 등), 최소요건으로서 ISU 빙상종목 분야에서 최소 15년 이상 봉직해 특출한 기여를 한자.

c) ISU 금장훈장은 핀 (pin) 형태로 제작되어 서훈자에게 수여된다.

d) ISU 금장훈장의 서훈자 명단 일체는 정관/일반규정에 게재된다.

6. 기타 포상

집행위원회는 다른 종류의 포상제도를 새로이 만드는 결정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 어떤 조건에서 그러한 포상이 수여될 것인지에 관한 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7. 명예수상의 박탈

a) 총회의 승인을 거쳤더라도 이를 불문하고 ISU 의 명예시상제도에 따라 시상이 된 수상자가 만일 ISU 윤리규정을 위반하거나 ISU 법령 정신에 반하는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였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ISU 의 무결성이나 이익, 또는 포상의 정신을 훼손한 경우, 집행위원회는 기 수여된 동 명예수상을 박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b) 집행위원회는 결정을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총회에 권고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c) 집행위원회는 박탈을 결정하기 전에,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서면 해명 및/또는 사과를 보낼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 해명은 통지 서신을 수령한 후 15일 이내에 발송해야 한다.

d) 명예수상의 박탈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특히 법원이나 기타 기관의 어떤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명예회원(명예회장 및 명예부회장을 포함함)직을 정지할 수 있다.

e) 집행위원회의 박탈결정은 징계 제재가 아니며, 명예수상을 요구할 아무런 법적 권리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 규칙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f) 상기 1항에 열거된 명예수상의 경우, 집행위원회의 결정은 바로 다음 회차의 총회에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확인을 제외하고 본 제7항에 따른 집행위원회 및/또는 총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B. 집행위원회

제 16 조

1. 구성

ISU 집행위원회는 두 총회들 사이에 있는 ISU의 최고기구이다. 집행위원회는 한 명의 회장과, 피겨스케이팅부문에서 한 명의 부회장과 5명의 의원, 스피드스케이팅부문에서 한 명의 부회장과 5명의 의원들로 구성된다. 집행위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출신 회원국과 국적이 서로간에 다 달라야 한다. 또한 집행위원회의 선수위원회 구성원은 회장과 동일한 부문에 속하지 않아야 하며, 가능하다면 집행위원회의 다른 구성원과 동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하며 동일 ISU 회원국 출신이 아니어야 한다.

2. 회장

a) 회장은 모든 측면과 사안에서 ISU를 대표한다. 직책 수행 결격 또는 그 밖의 불능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장은 그 결격 또는 불능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제 1 부회장이 대신하거나, 또는 제1부회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2부회장이 대신한다.

b) 집행위원회의 감독 업무 내에서, 회장은 상업분야, 미디어/통신 및 법률 분야의 조정에 중점을 둔다.

c) 회장은 집행위원회 미팅과 총회 모임을 주재한다.

d) 집행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회장은 모든 주요 TV와 상업 협상을 감독, 참여 및 결정한다. 모든 상업적 계약은 회장이 서명을 하여야만 하며 결정된 모든 상업적 계약을 사무총장과 집행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e) 회장은 대외적인 국제스포츠기구들(반드시 다음으로만 한정하지는 않으나, 가령 IOC 및 기타 국제스포츠연맹들을 포함한다)에 대해 ISU를 대표한다.

f) 각 부문별 부회장의 제안을 고려하여, 회장은, 피겨스케이팅 부문의 경우 레프리, 테크니컬 컨트롤러,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데이터/리플레이 오퍼레이터, 오피셜평가위원회 (OAC)의 위원을, 스피드스케이팅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부문의 경우 레프리, 어시스턴트(보조) 레프리, 비디오 어시스턴트(보조) 레프리, 스타터, 선수 스튜어드들을 지명하여 이들로 하여금 동계 올림픽, 동계유스올림픽, ISU 챔피언십, ISU 피겨스케이팅 그랑프리 경기와 파이널(주니어 및 시니어), 피겨스케이팅 올림픽 예선 대회, ISU 월드컵 대회(월드컵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에 관련된 예외사항은 규칙 286조 3항, 289조 5c), 289조 7a)를 참조) 및 집행위원회가 소개한 새로운 ISU 경기들에 참가하도록 하는 결정을 한다.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각 부문별 부회장들은 각 종목별 스포츠 기술이사 및 기술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안서를 작성한다. 동계 올림픽 및 동계유스올림픽의 스피드스케이팅의 경우에는, 회장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아이스 기술 전문가의 추천과 스포츠

전문가의 추천에 대하여도 결정한다. 이러한 지명은 해당 오피셜의 회원국들과 대회 개최 국가에 매 시즌 가능한 한 조속히 늦어도 8월 15일까지 통보되어야 한다.

3. 부회장

a) 직책 수행 결격 또는 그 밖의 불능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부회장의 직은, 그러한 결격 또는 불능이 지속되는 동안, 해당 부문의 최다득표로 선출되었던 집행위원회 의원이 동 직을 대신한다.

b) 부회장은 총회에서 해당 부문(즉, 피겨스케이팅 및 스피드스케이팅)별로 미팅을 주재한다.

c) 각 부문별 부회장은 소관부문별로 스포츠 기술이사, 기술위원회 및 발전 위원회의 업무를 감독한다.

d) 특히 발전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각 부문별 부회장은,

i) ISU 발전프로그램, 모든 발전프로젝트 및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당 예산 등에 대해 발전 위원회가 작성한 제 제안서들을 결정한다.

ii) 해당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실행과 관련한 제 보고서들을 승인한다.

iii) 회계담당자, 발전 위원회 및 사무국의 협조 하에, 각종 프로젝트들의 회계의 정확성을 검토하고 및/또는 동 목적을 위한 외부의 회계감사인의 결정에 관여한다.

iv) 상기의 소호 i) – 소호 iii)에서 언급된 사항을 집행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e) 부회장들은 기술 규칙의 관리 등 각 부문별 기술위원회의 제반 업무와 활동을 모니터링 한다. 각각 부문별 부회장이 관할 기술위원회가 제안한 기술규칙 변경 및/또는 ISU 커뮤니케이션이 ISU 정책과 배치된다거나 및/또는 과도한 지출을 유발할 수 있다거나 및/또는 ISU 스포츠 분야 및/또는 이의 시행이 시의 적절하지 않거나 시기상조인 경우(예: 동계 올림픽이 너무 가깝거나 주어진 시간 내에 안전하게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각 부회장은 평가 및 결정을 허용하도록 집행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f) 각 부문별 부회장은 소관 부문별로 현재 진행중인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집행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각 부문별 부회장은 필요 시 타 부문의 집행위원회의원, 임원 및 고문들로부터 어떤 특정한 조치를 위한 자문과 협조를 구할 수 있다.

g) 이벤트 관리 영역에서, 각 부문별 부회장은 ISU 이벤트 관리 팀의 감독에서 사무총장과 협력하여 ISU 이벤트의 적절한 조직 및 행동을 보장하고 ISU 상업적 권리의 구현 및 보호를 보장한다.

h) 오피셜(Official) 들의 지명과 관련하여, 각 부문별 부회장은 제 16조 2항 f) 호에 의거하여 소관 부문별 스포츠 기술이사 및 기술위원회와 협조하여 지명안을 작성한 후 회장에게 그 결정을 품의해야 한다.

4. 집행위원회에 대한 지원

집행위원회는 다른 ISU 기관, 임원, 매니저, 코디네이터, 고문 및 컨설턴트의 지원을 받는다 (제 8조 참조). 재무 책임자와 법률 고문은 집행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권리가 있다. 회장은 또한 재량에 따라 이사들과 및 기타 개인을 초대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재무 책임자, 법률 고문, 초청된 이사 및 기타 개인은 발언권은 있지만 투표권은 없다. 집행위원회는 과거의, 계속 선출되지 않은 전 회장, 전 부회장 및 전 집행위원회 위원을 집행위원회가 결정한 특정기능에 임명할 수 있다. 선출된 임원은 고문 및 컨설턴트로 임명될 수 없다.

집행위원회는 제 18, 19, 20, 21, 22, 23 및 24조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ISU 기관, 임원, 매니저, 코디네이터, 고문 및 컨설턴트에게 특정 과제 (Job Descriptions)를 부과할 수 있다 (제 8조 참조).

제 17 조

1. 집행위원회의 기능

집행위원회의 기능과 권한들로는 다음을 포함한다.

a) ISU 의 정책을 정하고, ISU의 조직과 전략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에 관한 사항들을 결정하고 사무총장이 작성한 기존의 4년 계획에 대한 해당 4년 계획 및 상황보고서를 결정한다.

b) 제18조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사무총장의 임명, 의무와 책임의 결정, 및 필요할 경우 사무총장의 해고. 사무총장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회장을 포함해 전체 집행위원회 투표 위원의 3 분의 2 이상의 다수가 찬성해야 한다.

c) 재무 책임자, 법률 고문 및 이사 선임의 임명 및 종료. ISU 사무국 직원이기도 한 이사의 임명은 사무총장의 제안에 따른다. 집행위원회는 수시로 그러한 직책에 임명된 사람들이 수행할 업무를 결정한다.

d) 기타 임원, 매니저, 코디네이터, 고문 및 컨설턴트의 임명 및 해지. ISU 규정에서 ISU 집행위원회 임명 및/또는 특별한 상황에 필요한 것으로 예측 및 구체적으로 언급된 사항.

e) ISU 임원 및 사무국 직원 중 누가 ISU를 대신하여 서명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스위스 상공 등록부에 등록되는지에 대한 결정.

f) ISU 기관, 임원, 매니저, 코디네이터, 고문 및 컨설턴트가 수행하는 ISU 활동에 대한 관리(제8조). 여기에는 ISU 총회 결정에 따른 결의내용 이행에 관한 관리가 포함된다. 단, 결의안이 채택될 당시에는 미처 예상치 못했던 재정적 부담이 너무 과중한 경우, 집행위원회는 동 결의의 실행을 다음 회차 총회까지 연기할 수 있다.

g) 사무총장, 해당 이사 및 이벤트 매니저들이 올린 제안들을 고려하여, ISU 이벤트들의 개최지를 결정.

h) 자산의 관리와 회계가 적절한 통제 하에 있는지를 검사 및 확인한다.

i) 사무총장과 재무책임자가 작성한 상세한 제안에 따라 집행위원회가 결정한 연례 예산의 총회 제출.

j) 집행위원회가 이전에 제6조 3항 e) 및 f)호에 따라 특정 요건을 면제해주는 권한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신규 ISU 회원국 가입 등의 멤버십 안건, 및 ISU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멤버십을 위한 최소요건을 계속 유지하지 못한 회원국의 자격정지 안건을 결정한다. ISU 법령을 심각한 수준으로 위반한 경우, 집행위원회는 해당 ISU 회원국(들)의 자격을 정지해야 한다. 회원국의 자격정지는 집행위원회 의원 최소7인이 투표해야 한다. 이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으면, 동 자격정지는 총회를 통해서만 결정할 수 있으며, 또한 총회는 ISU 회원국을 제명 결정까지도 내릴 수 있다. 자격정지 또는 제명 전에 해당 ISU 회원국(들)에게 청문회를 열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k) 기술적인 경기규정위반과 관련한 기술위원회 및 ISU 오피셜들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항소들에 대하여는 청문회를 열 권리를 부여한 후 결정한다. 이와 같은 집행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서, 강제적인 법률에 이러한 항소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ISU 내의 항소시스템은 물론 외부의 그 어떤 법적 항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l)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시도하고,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ISU 회원국들 간의 모든 분쟁과 불만 사항에 대해 결정을 내린다. 이러한 논쟁에 관한 집행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m) 제 9조 1항 a)호 및 제 10조 1항에 의거하여, 회원국들로부터 접수한 개최희망도시들에 기초하여 차회 총회의 개최장소와 개최일자를 결정한다.

n)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장이 총회의 모든 세션의 의장 역할을, 그리고 분과별 각 부회장이 피겨스케이팅과 스피드스케이팅 총회 세션의 의장 역할을 하도록 권고할 전문가를 임명한다. 또한 개정할 제안서의 문구가 정확하게 작성되도록 서기 그룹(Drafting Groups)을 임명한다.

o) 총회의 포럼에서 다룰 주제들을 정하고 총회를 진행한다.

p) 의식과 관련된 각종 행사 진행으로서, 가령 ISU 챔피언십 및 기타 ISU 경기들에서의 메달 수여식, ISU 특별상의 발송 등과, 이러한 의식행사들에서 ISU를 대표하는 대표자의 지명 등이다. 단,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장은 상기의 ISU 대표자를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제 38조 3항 참조)

q) 예외적인 상황으로서 아래의 각 사항들이 요구되는 경우,

i) 일반규정, 특별규정 또는 기술규칙 상의 어떤 규칙을 수정 또는 유예한다.

ii) 비정상적인 혼선을 막는 차원에서 일반규정, 특별규정 또는 기술규칙 상의 어떤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요구조건을 예외로 하는 것을 인정한다.

본 호의 목적성에 비추어 "예외적인 상황"이란 비통상적이고 희귀적이며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으로서, 가령 집행위원회가 총회를 대신하여 그러한 조치를 하여야 할 합리적 당위성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단,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보장해야 하는 비상 상황이 없는 한, 집행위원회가 본 호 제1항 q)호에 따른 조치를 취하기 전에, ISU 회원국에게 14일 기한 내에 서면 답변을 통해 제안된 모든 규칙 수정 또는 적용 가능성의 유예에 대해 서면으로 의사 표시를 할 기회를 제공한다.

r) ISU 법령집들과 기타 ISU 결정들 또는 문서를 해석한다. ISU 정책, 절차, 규칙 등을 해석함에 있어 집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즉, 첫 번째로 정관, 두 번째로 일반규정, 세 번째로 특별규정, 그리고, 네 번째로 기술규칙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벤트

메모랜덤(Event Memorandum), ISU 통신문 및 회람문(Circular Letter)을 통해 구체화된 관례들을 포함하여 기 수립되어 있는 관행의 순서이다.

s) ISU 법령을 위반한 회원국들에 대해 금전적인 벌금을 부과한다. 벌금은 위법 행위의 심각성에 비례해야 한다.

t) 집행위원회는 ISU 기구들의 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시 언제나 관련 규정들을 수립하여 채택할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는 바, 여기서 관련 규정이란 반드시 다음으로만 한정하지는 않으나 가령 다음과 같다.

   i) ISU 법령에 따라 부여된 징벌에 관한 규정/규칙

   ii) ISU 법령을 존중 및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규칙

   iii) 선수, 코치, 매니저, 의료진, 트레이너, 오피셜 등에 대한 반-도핑 규칙

   iv) 총회에서 선출하거나 집행위원회가 임명한 모든 ISU 기구, 임원 및 매니저, 코디네이터, 고문 및 컨설턴트의 업무에 대한 규칙 및 절차 조항.

u) 집행위원회의 각종 조치에 대한 정확한 기록유지와 회의 의사록의 보관

v) 오피셜, 임원, 스케이터는 물론 ISU 조직, ISU 경기, ISU 선수권대회, 총회 또는 기타 활동들에 관여하는 현재 또는 미래의 관계자들 등에 대한 적격성 규칙의 위반 시비들을 판정한다.

w) 피겨스케이팅 또는 스피드스케이팅과 관련이 있는 활동으로서 ISU 빙상스포츠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참여를 늘리기 위한 회원국들의 제반 활동들에 대해, 동 회원국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제 3조 1항의 목적성에 비추어 동 활동들을 평가하고, 나아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제적인 활동이 되도록 측면 조정을 제공한다. 상기 활동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ISU 종목들(즉, ISU 법령집에 명시되어 있는 싱글/페어 스케이팅, 아이스댄싱,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 스피드스케이팅 및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과 어떠한 경우라도 상호 충돌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집행위원회의 최종결정

a) 집행위원회가 자신에게 주어진 기능과 권한을 발동하여 행한 결정들은 최종적인 것으로서, ISU 법령집에 명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이 없는 한, 그 어떤 항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한다. 집행위원회의 모든 최종적인 결정들은 다음 회차의 정기총회 또는 특별총회에서 상위결정권을 갖는 총회의 심사 대상이 된다. 제 30조의 21항을 참조한다.

b) 집행위원회의 어떤 결정이 ISU 법령집의 특정 조항에 해당이 되어 항소를 할 수 있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항소가 원 결정의 효력을 저지하는 효과가 없다고 결정할 권한을 가지는데, 이는 이러한 효력 저지 효과가 ISU의 명성이나 무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집행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에 그러하다. 이러한 효력 저지 효과를 거부하는 결정은 관할 항소 기관에 항소한다.

C. 사무총장

제 18 조

사무총장은 집행위원회가 임명하며 ISU 사무국 직원의 지원을 받아 다음에 대한 책임을 진다:

a) 총회 및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ISU 가 진행하는 제반 사업들 및 예산 소요 활동들에 대한 일일 관리.

b) 사무국 운영과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관리. ISU 임원직, 신입 ISU 사무국 직원의 모집 및 채용/해임에 대하여 집행위원회에 제안, 그에 따른 정보제공을 포함한다.

c) 회장에 대해 필요한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는다.

d) ISU 사무국의 운영 또는 ISU 사업에 필요한 서비스/운영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매년 집행위원회가 검토하고 승인한 ISU 내부 통제 시스템에 기술된 절차를 충실이 이행한다.

e) 상업적 계약의 협상 및 계약 체결에 참여하고 ISU 내부 관리시스템에 따라 모든 상업적 계약에 대하여 회장과 공동으로 서명하며, 상업적 계약 상황에 관하여 집행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f) 부회장들 및 이벤트 매니저들과 협력하여 상업적 계약들 (TV 와 광고)들을 실행하고 보호한다. 필요 시 부회장들 및 이벤트 매니저들과 상의하여 자신이 직접 또는 ISU 직원들로 하여금 ISU 경기들을 참관케 하거나 및/또는 실사방문을 한다.

g) 집행위원회가 총회에 추후 제출할 수 있도록 2 년 예산의 준비 및 집행위원회에 제출, 그리고 ISU 사무국 운영을 위한 년간 예산 결정을 위한 준비 및 집행위원회에 제출.

h) 적절한 절차와 통제를 확보하고 스위스 법률에 따라 실시된 연례 재정 감사 보고서를 출판함과 동시에, 집행위원회의 연례 심사 및 이의 승인과 집행을 통해 내부 통제 시스템을 유지한다.

i) 총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 회장의 총회 진행 보조 및 집행위원회의 지침에 따른 전략 및 정책 관련 4년 계획 및 기존 4년 계획에 대한 상황 보고서의 작성이 포함된다.

j) 신규 회원국의 가입 및 기존 ISU 회원국의 자격정지에 관하여 집행위원회에 권고한다. 사무총장도 자문을 구할 수 있다.

k) ISU 회원국들간의 모든 분쟁과 이의제기 건들을 모니터링 하고, 결정과 해결을 위한 방안을 집행위원회에 권고한다.

l) 커뮤니케이션 계획(대내 및 대외)과 PR 프로그램들을 기획/실행/모니터링 하고 대외 커뮤니케이션 채널과 통계자료들을 감독 및 조정한다.

m) 회장의 지시 하에 집행위원회 미팅에서 다뤄질 의제와 기타 안건들을 준비한다. 사무총장은 집행위원회 미팅에 참석하여 의견을 낼 수는 있으나 투표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n) 집행위원회 미팅 기간 중에 ISU 활동과 관련한 주요 사안들을 식별하여 보고한다.

o) 연맹의 진행 사항을 숙지하기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신의 재량에 따라 집행위원회가 아닌 ISU 기관의 미팅 또는 미팅 중간에 참석한다.

p) 내부 및 외부 관계자와 ISU의 이름으로 문서에 서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q) 회장, 명예위원(Diploma of Honor) 등과 함께 ISU 대표자로서 서명권한을 갖는다.

r) 회장의 재가가 있는 경우, IOC, IF, NOC, 외국의 시정부 등의 외부기관들을 접촉하고 모니터링 한다

s) ISU 조직 내에서 전문가 직원을 타 기구로 인사발령을 할 수 있다. 타 기구로 배치된 경우 배치받은 기구를 위해 일하게 되지만 인사권은 여전히 사무총장에게 있다.

t) 현황을 파악하고 회장과 집행위원회에 지원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집행위원회를 제외하고, 재량에 따라 ISU 내 모든 기관과의 미팅을 소집, 조정, 관리한다.

u) 현황을 파악하고 회장과 집행위원회에 적절한 정보제공을 하기 위해, 집행위원회를 제외하곤, ISU 내 아무 조직이든 상관없이 회의를 소집/조정/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v) 적정한 기밀유지 의무를 가지고 집행위원회와 ISU 기구들간의 소통역할을 하며, 집행위원회가 빠른 결정을 내리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w) 회장/집행위원회의 지시가 있는 경우 ISU 연맹의 제반 활동들에 대해 대외적인 대변인 역할을 한다.

x) 집행위원회가 수시로 부과한 특수과제들을 수행한다.

D. 이사

제 19 조

1. 이사들의 일반적 역할

이사들은 집행위원회가 임명한다. ISU 사무국의 직원이기도 한 이사들의 임명은 사무총장의 제안에 따라 실시한다. 자신의 활동 분야에서 숙련된 고위 전문가인 이사들은 스포츠 관리/조정, 마케팅, 홍보/통신, 재무, 통제, ISU 이벤트 관리 출장 업무 및 기타 기능과 같은 ISU 활동의 특정 분야를 감독하고 지도한다. 집행위원회는 제18, 20, 21, 22, 23 및 24조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이사들의 활동 분야, 보고 체계, 고유 직책 및 직무 과제를 결정한다.

원칙적으로, 스포츠 기술 문제와 스포츠 발전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이사는 해당 부문 부회장에게 보고한다. 다른 운영 분야를 담당하는 이사는 사무총장에게 보고한다.

2. 이사들에 적용되는 조건

모든 이사들은 각자가 거주하는 국가에 거주하는 시니어 ISU 사무국 직원 및/또는 특수한 전문성을 가진 개인이다. 이들은 ISU, ISU 회원국, 클럽 및/또는 빙상 활동과 관련된 그 어떤 공적 또는 사적 조직에서 공식적인 다른 직을 맡을 수 없으며, 또한 코치로 활동하여서도 아니 된다.

E. 기술 위원회

제 20 조

1. 기술위원회의 수

다음과 같은 기술위원회를 설립한다: 싱글 및 페어 스케이팅, 아이스댄스,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 스피드스케이팅 및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각 기술위원회마다 캐스팅 보트를 가진 선출직 회장, 3명의 선출 정회원(싱글 및 페어 스케이팅 기술위원회의 경우 4명의 선출 정회원) 및 2명의 추가 정회원(그 중 1명은 선수, 1명은 코치이다)으로 구성된다. 선수와 코치는 해당 기술위원회 및 해당 스포츠 기술 이사의 추천도 고려하여 집행위원회가 추후에 임명한다.

2. 자격과 구성

a) 하나의 기술위원회 내의 각 구성위원들은 서로간에 출신 회원국과 국적이 다 달라야 하며, 선수위원회 위원은 예외로 한다.

b) 오로지 현재의 ISU 레프리, ISU 테크니컬 컨트롤러, ISU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명단에 지명되어 있는 사람들 (코치는 제외)항 에 따르는 보수를 받는 코치는 제외) 또는 ISU 져지만이 싱글 및 페어 스케이팅 위원회 내의 5명의 선출 임원직 및 아이스 댄스 및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 위원회 내의 4명의 선출 임원직, 그리고 해당 종목에 한해서 총회에서 선출하는 임원직 선거에 출마할 적격성이 부여된다.

c) ISU 집행위원회는 해당 기술위원회 및 해당 스포츠 기술이사와의 협의 하에 각각의 기술위원회에 1명의 선수를 지명해야 한다. 지명된 선수는 반드시 선거가 있는 마지막 총회 이전의 8개 시즌 (즉, 8월 1일에서 4월 30일까지)에서 최소 1회의 ISU 이벤트에 출전한 경험이 있어야만 한다.

d) 선수를 지명한 다음, 집행위원회는 해당 기술위원회 및 해당 스포츠 기술이사와의 협의 하에 코치를 지명해야 한다. 지명된 코치는 선거가 있는 마지막 총회 이전의 과거 10개 시즌 가운데 최소 하나의 ISU 이벤트 또는 시니어 국제 이벤트에서 선수의 주된 코치였어야 하며, 이전에 총회 및 집행위원회가 지명한 선수가 선출한 위원들과 다른 시민권자 및 ISU 회원국 소속이어야 한다. 지명된 코치는 기술위원회 멤버십에 관한 한 규칙 102조 4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3. 기술위원회들의 기능

기술위원회들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a) ISU 회원국, 집행위원회 및 스포츠 기술이사들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싱글/페어 스케이팅, 아이스댄싱,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 스피드스케이팅 및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종목들의 제 "기술규칙들"을 제정, 모니터링 및 적용유지를 한다. 또한 각 기술위원회는 ISU 경기들이 진행되는 과정에 열리는 미팅들, 총회기간 중 기술위원회가 주관하는 워크숍들, 그리고 그러한 목적을 위해 개최되는 기타 미팅들에서 코치, 선수, 오피셜들로부터 견해를 구하기도 한다.

b) 총회, 집행위원회 및 각 종목별 스포츠 기술이사들이 위임한 보고서 (주로 기술 보고서)를 작성한다.

c) ISU가 비준한 대회들에서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오피셜들을 모니터링 하고 그들의 최종 직무성과를 평가한다. ISU의 OAC(오피셜평가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종목들의 경우, 기술위원회들의 상기 모니터링 및 오피셜 평가는 해당 종목의 OAC와 협력 하에, 그들의 권고를 반영하여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루어진 모니터링과 평가는 인터내셔널 (인터내셔널 경기들의 경우) 및 ISU (ISU 선수권대회의 경우) 레프리, 테크니컬 컨트롤러,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져지, 데이터/리플레이 오퍼레이터, 스타터 및 선수 스튜어드(또한 총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인터내셔널 경기 오피셜"로 간주될 수 있는 타 직종을 포함함)의 명부작성 시에 반영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이들은 각 회원국들이 지명 및 재지명하고 해당 부문 부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d) ISU 가 비준한 대회들에서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오피셜들의 기능과 역할을 밀착 팔로우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부문별 부회장에게 발전적인 권고를 한다.

e) 종목별 스포츠 기술이사들과 협력 하에 종목별 오피셜들을 위한 세미나, 강습회, 평가회 등을 진행한다.

f) 각 위원회 별로 위임된 책임과 역할에 대해 4개년 계획을 발전적으로 수립한 후 부문별 직속부회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또한 승인된 계획들의 실행을 모니터링 하고, 빙상스포츠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 계획의 수정을 권고하며, 요구되는 경우 현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한다.

g) 공통 스포츠 관심 분야 (예, 경기 일정, 규칙, 발전, 등)에서 다른 기술위원회의 구성원과 협력할 각 부문별 기술위원회의 구성원을 지정한다.

h) 제 16조의 2항 f)호에 의거하여 필요로 하는 ISU 이벤트 오피셜들을 임명할 수 있도록 후보들에 대한 서면 제안서를 부회장들에게 제출한다.

i) 각자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F. 선수위원회

제 21 조

1. 자격과 구성

a) 선수위원회는 5명의 선출직 선수 즉, 다음과 같은 종목 별로 각각 1명씩의 선수(스케이터)들로 구성된다.
—싱글 및 페어 스케이팅
—아이스 댄스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
—스피드스케이팅
—쇼트트랙스피드스케이팅

b) 선수위원회 위원 (스피드스케이팅 선수위원회 위원 제외)은 동계올림픽 시즌에 각 종목별 ISU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동료들이 선출한다. 올림픽 시즌 동안 ISU 세계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 싱글 디스턴스 형식이 개최되지 않는 스피드스케이팅의 경우, 선거는 가능하면 동계올림픽 동안에 실시되거나 대안으로 동계올림픽 시즌 동안 ISU 월드컵 스피드스케이팅에서 실시해야 한다.

c) 선거 임기는 4년으로 한다.

d) 선수위원회 출마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i) ISU 법령에 규정된 적격성을 갖춘 자
   ii) 선거 시즌 전 최근 4년 동안에 해당 종목의 시니어 ISU 대회에 참가한 경력이 있는 선수
   iii) ISU/세계 반-도핑규정 및/또는 징계규정 및/또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어떠한 징계도 받은 경력이 없는 선수
   iv) 선거 당일 기준으로 적어도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v) 선거 시즌 또는 자신이 ISU 대회에 출전한 마지막 시즌에 규칙 제109조에 따라 자산이 소속되어 선수로써 활동한 회원 연맹에 의해 후보로 추천되어야 한다.

e) 2022년 선거에서 재직 중인 선수위원회 위원은 상기 d)항 ii)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선수위원회의 1회 연속 임기에 다시 출마할 수 있다.

f) 2026년 선거 및 그 이후의 선수위원회 선거 (2030년, 2034년, 등)에서 재직 중이며 한 번의 임기만 수행한 선수위원회 위원은 상기 d)항 ii)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선수위원회의 1회 연속 임기에 다시 출마할 수 있다.

2. 추천/선거 절차

a) ISU는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해의 전년도 10월 1일까지 모든 관련 세부사항과 양식을 포함한 ISU 통신문을 발행한다.

ISU 회원국들은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해의 1월 1일까지 ISU 사무국에 추천서를 접수해야 한다.

ISU 회원국들은 국가 차원에서 선수 선거에 추천하고 추천에 남녀를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ISU 회원국은 부문당 1명의 선수만 추천할 수 있다. 어떤 선수가 ISU 대회에서 여러 종목에 출전한 경우에도 해당 선수는 한 종목에만 추천할 수 있다.

b) 선수위원회 위원은 비밀 투표로 선출된다. 각 종목별 ISU 세계선수권대회, 동계올림픽대회의 스피드스케이팅 경기 또는 ISU 스피드스케이팅 이벤트 (집행위원회가 결정한다)에서 선수로 출전하고 참가/인정을 받은 선수는 모두 1표를 행사할 자격을 갖는다. 최다 득표한 입후보자가 선출된다. 가부동수일 경우 2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한 입후보자가 선출된다. 그래도 가부동수일 경우, 추첨으로 선출을 결정한다. ISU 회원국의 기권 및 무효 투표는 출석하여 투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과반수 확인 시에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c) 선수위원회의 선거 이후 최초 회의에서 5명의 선출된 선수위원은 선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서로 다른 부문에서 각 선출하여야 한다(피겨스케이팅 부문은 싱글 & 페어 스케이팅, 아이스댄스와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을 포함하여 한 부문으로 그리고 스피드스케이팅 부문은 스피드스케이팅과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을 포함하여 다른 한 부문으로 한다). 선수위원회 선거 이후마다, 위원장 자리는 피겨스케이팅 부문의 선수로부터 스피드스케이팅 부문의 선수로 두 부문 간에 교대되어야 하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d) 선수위원 중 공석이 발생한 경우, 이전 선거에서 선출되지 못한 선수 중 해당 종목 최고 득표 선수가 이 공석을 채운다. 이런 방법으로 공석을 채울 수 없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공석을 채울 선수를 임명할 수 있다. 이러한 선수의 임기는 다음 선수위원회 선거까지이다. 선수위원회의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의 공석이 있는 경우, 이러한 공석이 발생한 후에 개최되는 회의에서 대체자를 선출한다.

e) 선수위원회 위원들은 선거 총회가 개최되기 늦어도 6주 전에, 총회에서 집행위원회에 선수 위원으로 선출될 입후보자의 우선 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3. 선수위원회의 기능

a) 규칙 및 규정, 이벤트, 일정, 스포츠의 판촉 및 마케팅, 건강 및 복지, 도핑 방지, 경력 준비, 교육 및 생활 기술을 포함하며, 또한 이에 한정되지 않은, 주제에 대해 ISU 내에서 선수의 견해를 표현하기 위한 의견과 아이디어에 대해 알아보며, 다양한 활동과 발전에 대해 선수들에게 알리고 업데이트하며, 직접적인 관심 주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교육한다.

b) 선수들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고, 각종 추천, 가령 스포츠 중재 법원(ICAS)의 중재자 선임과 관련한 추천을 하는 역할 등을 수행한다.

c) 스포츠를 발전시키고 증진한다는 ISU의 사명을 지원한다. 선수와 관련된 사안들을 고려하여 ISU 집행위원회, 기술위원회들, 스포츠 기술 이사들, 사무총장 및 기타 적절한 내부 기관에 조언한다.

d) 경기 내외적인 영역에서 건전한 선수 정신을 보호하고 지지하는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가

e) 스케이팅의 활성화와 어린 선수들을 고무시킬 수 있는 대사로써 활동

f) 해당 회원국 내부에 선수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회원국 연맹과 선수들에게 기여

g) IOC 선수위원회와 협조 체계 유지

G. 의료위원회

제 22 조

1. 자격과 구성

의료위원회는 집행위원회가 임명하며, 1인의 위원장과, 출신 회원국과 시민권이 서로 다른 의사들로서 최대 6인까지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위원들의 수는 요구되는 업무의 양에 따라 6인의 범위 내에서 증감된다.

2. 의료위원회의 기능

의료위원회는 세계 반-도핑 규정과 ISU 반-도핑 절차에 따른 의료 및 도핑검사와 관련하여 집행위원회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고 관련 업무들을 조정한다. 의료위원회의 주 기능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a) 종합적이고 공정하며 안전한 반-도핑시험프로그램(ISU 경기에서)을 유지, 확대 및 표준화를 하고, 경기 외적으로는 모든 유형의 도핑행위를 차단하는 절차를 연구한다.

b) 빙상스포츠 계에 대해 도핑 및 검사와 관련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제반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c) 반-도핑시험에 대한 행정적 절차를 개선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정보관리시스템과 절차를 통해 선수들의 의료기록과 부상통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d) ISU 경기들과 인터내셔널 경기들에 있어 응급의료지원체계를 유지/개선/표준화를 한다.

e) 타 유관기관들과의 선제적인 공조체계 및 관련연구를 계속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금지약물들에 대한 검출기법을 강화한다.

f) 회원국들에게 경기중의 부상방지를 위한 의료정보들을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회원국들과 임원들에게 장비 및 설비의 안전한 이용방법을 홍보하고, 부상패턴 별 발생빈도 등에 대한 자료를 배포한다.

g) 부상방지, 재활, 치료 후 복귀율 등에 대한 자료를 최신으로 유지하고 법적인 이슈들을 포함하여 타 스포츠계의 의료연구 및 발전동향을 조사한다.

H. 오피셜평가위원회

제 23 조

피겨스케이팅 오피셜의 평가

오피셜평가위원회(OAC)는 집행위원회가 임명하며, 국적이 서로 다른 ISU 레프리, ISU 테크니컬 컨트롤러 및 ISU 저지들의 풀(pool)로 구성된다. 이 풀은 피겨스케이팅부문 부회장의 추천을 평가하여 집행위원회가 임명하는 자들로 구성된다. OAC가 수행하는 평가업무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a) 수학적인 기준을 포함하는 집행위원회가 확인한 사전에 결정된 기준에 따라 파악된 저지의 점수에 있어서의 명백한 비정상 행위 및 혐의가 있는 (국가적인) 편향, 그리고

b) 테크니컬 패널이 내린 결정

OAC의 절차규칙은 총회에서 가결된 저징(채점)시스템과 인터내셔널 오피셜 카테고리를 기초로 집행위원회가 정한다.

I. 발전위원회

제 24 조

1. 임명 및 구성

집행위원회는 발전위원회 위원으로 4명의 위원까지 임명하고 발전위원회 위원들은 그들 중에서 코디네이터를 선출한다. 그 코디네이터는 각 부문의 부회장에게 보고하고 감독된다.

2. 감독

위원회는 부문별 부회장들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그들의 지휘를 받는다. 부회장들은 ISU의 발전프로그램들이 일관성 있게 추진이 되도록 결정을 내릴 때 협력해야 한다.

3. 협조

위원회는 발전프로그램이 ISU 정책 및 승인된 예산 하에서 원만히 실행이 되도록 부회장들, 스포츠 기술이사들 및 기술위원회들과 긴밀히 상호공조를 하여야 한다.

4. 기능

위원회는

a) 관련한 예산(ISU 예산 이내) 내에서 "발전"활동(가령 훈련캠프, 장학금, 세미나 등으로 분류되는)에 대한 연간 제안서를, 스포츠이사 및 기술위원회들과의 협력 하에 작성을 한다.

b) 회원국들 및 ISU 조직 내 각 기구들로부터 발전활동을 위한 자금지원 요청을 접수/취합/편성한 후 개별적인 "발전프로젝트"가 되도록 임시제안서(예산규모 포함)를 작성한다.

c) 발전프로그램의 하위 프로그램이나 계획들을 시의 적절한 방식으로 평가를 하되, 가용예산 내에서 예산배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d) 승인된 각 프로젝트 또는 발전활동에 대해 여러 성과지표들을 개발 및 수립하고, 각 지표별로 성공 또는 실패의 여부를 식별한다.

e) 분기별로 위원회의 출장계획(예상비용 포함)을 수립한다.

f) 개별 프로젝트마다 승인된 예산범위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들을 바탕으로 회원국에 대한 재정 지원의 이용을 적절히 체크한다.

g) 프로그램별 진행상황을, 특히 성과기준으로 평가한 후 부회장들과 집행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h) 프로그램별 기성부분과 현 진행상황을, 특히 성과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한 후, 총회개최 기간에 총회에 보고한다.

5. 활동과 예산 계획

a) 상기의 4항 a)호에 따라 작성된 연간 기준의 활동제안서와 관련예산안에 대해, 각 부문별 두 부회장들은 공동으로 승인 또는 비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b) 상기 4항에서 위원회가 작성한 기타의 모든 제안서들과 계획들은 실행에 부치기 전에 해당 부문의 부회장에게 제출하여 그의 승인 또는 비승인 결재를 받아야 한다(제 16조의 3항 d), i)항 참조).

6. 활동과 예산의 예상치 않은 변경

기 승인된 제안서를 변경해야 할 경우나 기 승인된 계획에 잡히지 않은 출장을 하여야 할 경우, 실행 전에 결재서류를 해당 부문의 부회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집행위원회의 지휘

집행위원회는, 수시로, 발전위원회의 기능과 책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발전프로그램의 제출, 검토 및 관련 활동에 대한 시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IV. 사법기구

제 25 조

징계위원회

1. 선출

ISU의 징계위원회(Disciplinary Commission, 이하 "DC")는 총회에서 선출되는 독립기구이다. ISU의 어느 한 기구나 부서에 의해, 스케이터, 임원, 오피셜 및 ISU의 제 활동들에 참여하는 기타 참여자 등(이하 "위반자")을 상대로 어떤 징계위반 또는 윤리규정위반(이하 "위반행위")임을 DC에 제소하는 경우, DC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동 제소 건을 처리하는 1심의 사법기구 역할을 수행한다.

2. 구성

DC 는 피겨스케이팅 또는 스피드스케이팅에 경험을 갖고 있는 위원장 1인과, "DC 패널단"으로 활동하는 4명의 위원들로 이루어진 "풀(pool)"로 구성된다. 이 4인 중 2인의 위원들은 피겨스케이팅에, 나머지 2인은 스피드스케이팅에 전문적인 경험을 보유한 자이어야 한다. 단, 위원장을 포함한 4인 풀 모두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여야 한다. DC 의 위원장 및 위원들은 4년 임기로서 총회에서 선출된다.

3. 독립성

DC 위원장과 위원들은 ISU 내에서 아무런 다른 직함을 갖지 않아야 하며, 출신 회원국과 국적이 모두 서로 달라야 한다. DC 위원장과 위원들은 자국(회원국)에서 빙상스포츠 관련 최고집행조직의 회장이나 구성원이어서는 안되고, DC 선거에 입후보 시, 만약 당선되면 이러한 현재의 직을 사임하겠다는 서면 서약서(당선이 안된 경우는 무효화되는 조건부 서약서)를 선거가 치러지기 전에 ISU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최소 인원 – 공석

a) DC의 최소 인원은 항시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 만일 어떤 영구적 공석이 발생한 경우, 직전 선거에서 차순위로 최다득표를 한 자로서 자격을 갖춘(즉, 피겨스케이팅 또는 스피드스케이팅에 적정한 수준의 경험을 보유한) 자가 동 공석을 메운다.

b) 만일 제소 건 심사의 필수구성요건인 3인 정족수에 어떤 일시적 공석이 발생한 경우, 상기 a)호와 동일한 방식을 따라 공석을 메운다(가능한 경우). 여기서 일시적 공석이란 병가, 이해의 충돌, 개인사유에 의한 불참 또는 기타 심리를 맡을 수 없는 일시적 사유 등에 의한 공석을 말한다. 따라서 어떤 사건(케이스)에 대해 일시적 공석이 발생한 경우 그 자리를 메운 자는 동 사건만 심리를 하는 케이스-바이-케이스 원칙을 적용한다.

c) 영구적 공석이나 일시적 공석이 발생하였음에도 상기에 서술한 방식으로 동 공석을 메우지 못하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즉시 적격자를 임명하여 동 공석을 메우도록 하여야 한다. 집행위원회에 의해 영구적 공석을 대리하도록 임명된 자의 임기는 차기 총회에서 DC 패널 선거시점에 기해 만료된다. 만일 차기 총회가 총선거가 없는 총회여서 DC 패널선거를 하려면 특별선거를 하여야 하는 경우, 동 피임명자는 나머지 다른 DC 위원들의 임기만료일 시점에 함께 그 임기가 만료된다.

5. 판정

각 사건(케이스)은 반드시 당사자들의 청문과정을 거쳐야 하며, 통상적으로 DC 위원장 1인과 동 위원장이 "절차규칙"을 따라 지명한 2인의 위원들로 구성된 총 3인의 패널에 의해 판정이 이루어진다. 어떤 특정한 사건에서 DC 위원장이 불가피하게 패널로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위원들 중에서 최다득표를 하여 서열이 가장 높은 위원이 위원장 대리를 하여 동 사건을 심리한다.

6. 제소(Filing of Complaints)

a) 선수, 오피셜, 임원 또는 ISU 활동의 기타 참가자는 징계 또는 윤리 규정 위반을 구성하는 사실이나 사건을 알게 된 후 1년 이내에 DC에 제소해야 한다.

b) 반-도핑 규칙의 위반에 대한 제소에는 1년 기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c) 본 조에서의 징계위반 또는 윤리규정위반은 ISU가 수립한 징계 또는 윤리규정을 중대하게 침해하였거나 통념상 규율적 또는 윤리적 가치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는 기타 행동이 있었음을 그 구성요건으로 한다.

7. 절차규칙

DC에 대한 제소와 이후의 수속절차는, DC가 제출하고 집행위원회가 승인한 후 차기 총회에서 비준된 "절차규칙"상에 좀 더 구체적인 절차가 존재하는 경우 이의 지배를 받는다. 수속절차는 서면으로 이루어진다. DC 는 자율적 재량으로 청문회를 소집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8. 관할권

a) 회원국들간 분쟁과 관련된 이의제기(Complaint)는 DC의 심리대상이 아니다. 선수, 오피셜, 임원 및 ISU조직이나 ISU 경기, 선수권대회, 총회 또는 기타 ISU 활동에 현재 또는 앞으로 참가/관여하는 자의 자격이 소위 적격성 규칙을 위반한다는 주장 또한 집행위원회가 판단하여 처리할 집행위원회의 소관사항이다. 동 적격성과 관련하여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DC 가 아니라, 스포츠중재재판소 (CAS) 에 항소하여야 할 사안이다.

b) ISU 내에 어떤 공식적인 직책에 사람을 임명을 하거나 기존의 근무직책의 유지 또는 인사이동은 사안은 어떤 권리의 대상이 아니라, 고용자 또는 사용자 (ISU 기구, 부서 또는 오피셜 등)의 고유권한일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신규임용 또는 기존 고용의 유지와 관련한 이의들은 DC 관할권이 아니다.

c) 오피셜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한 오류와 실수에 대하여 기술위원회 및/또는 집행위원회가 발행하는 평가, 경고, 강등 공문, 그리고 ISU 오피셜의 임명 또는 해고는 징계가 아니라 기술적인 결정이다. 따라서 DC의 관할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 오피셜의 오류와 실수가 오피셜의 의무 및/또는 ISU 윤리 강령도 위반하는 것으로 밝혀지면, 그러한 위반은 평가, 경고 및 강등 공문과는 별개로, 징계 제재와 DC 관할권이 적용된다.

d) 본 조에서 DC의 심리대상이 아닌 사안들에 대해, 오피셜, 임원 또는 ISU의 관련기구가 내린 모든 결정들은, ISU 법령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최종적인 것이다. 단, 이렇게 내린 결정이더라도 차기에 개최되는 정기총회 또는 특별총회에서 상위 결정권한을 갖는 총회의 결정에 의해 바뀔 수 있다. 즉, 총회는 항소기구이자 상급심리기구로서 동 결정들을 확인해 주거나 또는 수정이나 변경을 하도록 하는 권한을 갖는다.

e) 어떤 이의제기 건이 명백히 징계 또는 윤리규정 위반과는 상관이 없어 보이거나 또는 근거가 약하거나 승소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경우, DC 위원장은 자신의 재량으로 동 건을 DC 전원패널에 회부하지 않고 기각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DC 위원장이 관할권의 모호함 또는 명백한 근거결여를 이유로 기각하는 약식판정을 내린 경우, 이는 CAS에 항소대상이 된다.

9. 제재

a) "위반자"로 기소된 자가 실제로 "위반"을 하였음에 밝혀진 경우, DC는 다음과 같은 제재들에 대한 처분을 내릴 수 있다.

i) 경고

ii) 15,000 스위스프랑이 넘지 않는 벌금

iii) 어느 한 ISU 활동 또는 일체의 ISU 활동을 기간을 정하여 동 기간 동안 참가를 금지시키는 일시적인 정지조치

iv) 어느 한 ISU 활동 또는 일체의 ISU 활동에 대한 영구적인 자격박탈

v) "위반자"가 "위반"을 범한 경기(들)에서 획득한 메달, 점수, 상 등의 모든 성과/결과물의 박탈 또는 무효화

b) 상기 a)호에 명시되어 있는 제재들(단, "경고"는 제외함)은 일정한 기간 동안 조건부로 집행을 유예하는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바, 여기서 조건부란 위반을 범한 자("위반자")가 동 일정한 기간 동안 또 다른 위반을 저지르지 않는 경우, 및/또는 DC가 명시한 구제조치를 위반자가 완료한 경우 등이다.

c) DC 는 위반의 중차대함 및 감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건별로 사실에 입각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수준의 제재(들)을 내려야 한다. 위반자의 협조는 감량 요소로 간주될 수 있다.

d) 경고인 경우를 제외하곤, 기타 제재조치와 동시에 벌금을 함께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다.

10. 도핑 케이스에 대한 제재

도핑 케이스들은 DC의 관할권에 해당한다. 도핑 케이스가 발생한 경우, DC는 ISU 반-도핑 절차에 의거하여 제재를 내려야 한다..

11. DC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제소

DC 위원(위원장을 포함함)을 대상으로 한 제소의 경우, 징계심리는 집행위원회가 담당하며, 이 때의 심리절차는 DC 의 절차규칙을 준용한다.

12. 항소

DC 판정에 대한 항소, 상기의 8항 e)호에 해당하는 경우엔 DC 위원장의 판정에 대한 항소, 상기의 11항에 따른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항소들은 제 26조에 따라 제소가 가능하다.

13. 불복결정의 법적인 효과

DC 판정에 불복하는 항소의 경우, 동 DC 판정은 CAS의 최종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효력이 중지되나, 단 ISU 반-도핑규칙의 우|반을 이유로 하여 내려진 제재결정은 예외사항으로서, 그 즉시 효력이 발휘된다. 아울러, 만일 ISU 법령을 위반한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고 그것이 ISU의 명성이나 무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DC 는 집행위원회의 신청에 의하거나, 또는 자발적으로, 항소는 효력중지 효과를 가지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V. 중재

제 26 조

스포츠중재재판소(CAS) - 항소중재부

1. 항소

본 정관에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 DC 또는 집행위원회의 판정/결정에 불복하는 항소는 스위스 로잔에 소재한 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항소중재부(Appeals Arbitration Division)에 제기할 수 있다.

2. CAS 의 관할권

CAS 는 다음 항소 건들에 대해 심리권한과 판정권한을 갖는다.

a) DC 판정에 대한 항소, 또는 제 25조 8항 e)호에 해당하는 경우엔 DC 위원장의 판정에 대한 항소

b) 집행위원회의 페널티부과처분에 대한 항소, 또는 집행위원회에 의한 회원국의 자격정지 처분에 대한 항소

c) 스케이터, 오피셜, 임원 또는 ISU 활동들에 대한 기타 참가자들이 적격성이 없다고 선언하는 집행위원회의 모든 결정에 대한 항소

d) 집행위원회가 DC 위원의 혐의에 대하여 심리하는 징계기구로서 내린 모든 결정에 대한 항소

e) ISU의 결정에 대한 주로 윤리 기준 또는 기술 및 스포츠 기준의 적용과 관련된 오픈 국제 대회에 대해 인준을 하지 않기로 하는 모든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항소. ISU의 결정에 관련한 다른 모든 분쟁에 대해서는, ISU는 해당 사안을 스포츠 관련 중재에 관한 법령에 따라 CAS의 보통 중재 절차에 회부하기를 원하는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중재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3. 피고

항소는 위반으로 피소된 개인 또는 회원국(이하 "위반자")이 제기하거나, 제 26조의 2항 a)호에 해당이 되는 경우 ISU가 제기한다.

4. 기한

항소권을 갖게 된 자는 항소대상결정을 받은 일자로부터 21일 이내에, CAS와 항소중재부 사무국에 항소를 서면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5. 언어

스포츠와 관련한 항소를 CAS에 제기하여 중재를 구하는 전 과정은 모두 영어로 이루어지며, 그 법적 진행과 절차는 CAS의 "스포츠관련 중재코드"의 특별규정인 "항소중재절차"에 의거한다.

6. 판정의 최종성

CAS의 판정은 최종적인 구속력이 있으며 타 민사재판소의 관할권을 배제한다. 이는 스위스 법률에 따라 스위스 연방 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 및 모든 해당하는 국가의 절차 법률에 따른 공공 정책에 근거하여 판정의 집행 또는 인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제 27 조

스포츠중재재판소 (CAS) - 일반중재부

1. CAS의 관할권

모든 회원국들, 동 회원국들에 소속된 모든 회원들, 및 ISU조직, ISU경기, ISU 선수권대회, 집행위원회 또는 기타의 활동에 관여하는 모든 참가자들과, ISU 는, 스위스 로잔에 소재한 스포츠중재재판소 (CAS)의 일반중재부(Ordinary Arbitration Division)에 의한 중재결정은 본 정관 제 25조와 제 26조의 지배를 받지 않는 모든 유형의 클레임과 분쟁에 대해 전속관할로서 판정방법과 판정결과를 불문하고 당사자들을 규약하는 중재결정이라는데 동의하는 바이다. 여기서, 모든 유형의 클레임 또는 분쟁이란 다음을 말한다.

a) (1) ISU 자체, 임원, ISU 오피셜, 또는 ISU를 대리하는 에이전트나 직원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2) 이 27조의 윗부분에 열거된 지위를 가진(또는 그러할 것으로 ISU가 주장하는) 대상자(들)을 상대로, ISU가 제기하는, 클레임으로서, CAS가 아니었다면 민사법원에 소송을 통해 제기되었을, 피해 및 금전보상 클레임과 기타 클레임들

b) 스위스 민법 제75조에 의거한 청구들

2. 중재청구

본 조에 의거한 중재청구는 청구인의 비용으로 CAS의 일반중재부로 제기되어야 한다. 스위스 민법 제75조에 의거한 중재청구의 경우엔, 청구대상이 되는 결정을 청구인이 알았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일자로부터 1달 이내에 청구인의 비용으로 CAS 의 일반중재부로 제기되어야 한다. ISU 의 결정이 ISU 웹사이트(www.isu.org)에 게시가 된 경우, 최초 게시일자를 여기에서 말하는 "청구인이 알았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일자"인 것으로 간주한다.

3. CAS판정의 최종성

CAS 의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들을 규약한다. 모든 중재절차는 영어로 진행되며, 중재판정 결과는 관할권을 갖는 법원에서 집행될 수 있다.

4. CAS 및 민사법정의 배제

제 25조의 8항 d)호에 의거하여 ISU 총회가 이의/항소 건에 대해 내린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서, 스위스 민법 제75조에 의거한 중재청구를 제외하곤, 타 민사재판소 또는 CAS의 관할권을 배제한다.

VI. 통신과 청산

제 28 조

1. 통신

ISU의 모든 통신문들에는 회장과 사무총장의 서명이 둘 다 들어가야 한다. 단, 예외적인 경우로서 특히 집행위원회결정의 경우 회장 단독의 서명만 들어갈 수도 있다. 원본은 사무국이 보관한다.
모든 ISU 통신문들은 오로지 ISU 웹사이트에만 게재가 되는 것이므로, 각 회원국들은 ISU 통신문들을 모니터링 하다가 필요한 내용의 경우 인터내셔널 오피셜들을 포함한 모든 소속 회원/관계자들이 그 내용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결정의 공표

집행위원회가 의결한 각종 일반결정들과 주요 결정들은 모두 ISU 웹사이트에 게시되며, 동 ISU 웹사이트는 일반 대중에게 언제든 접근이 허용된다. ISU 통신문들을 비롯한 이러한 결정들은 ISU 웹사이트에 게시된 일자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휘된다. 그 외에도, DC의 최종판정과 DC 판정에 불복하여 이루어지는 CAS 의 후속 최종판정들 또한 결정이 내려진 바로 그 다음 근무일에 그 전문이 ISU 웹사이트에 게시되며, 자유로이 일반 대중이 접속하여 볼 수 있도록 계속 유지된다.

3. 통신문에 게재된 결정의 효력

어떤 규칙의 해석 및/또는 규칙변경이나 효력중지 등에 대한 통신문이 총회와 총회 사이에 게재되는 경우, 동 통신문은 표결을 위해 총회에 부쳐지지 않는 한(부쳐지지 않았다면), 바로 다음의 차기 총회개최 시점에 자동으로 무효화된다.

제 29 조

1. ISU의 청산

ISU의 청산은 회원국정수의 최소 80% 이상의 총회 출석에, 출석정수의 4/5의 다수결 찬성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있다.

2. 청산인 및 자산의 분배

총회는 단순다수결에 의해 청산인을 선임하고 자산의 분배 방식을 결정하며, 이는 비영리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

VII. 절차규정

A. 총회 – 조직

제 30 조

1. 초청장

총회 출석에 대한 초청장은 개최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전까지 모든 회원국들에게 발송이 되어야 한다.

2. 총회에 대한 제안

a) 정관, 일반규정 및 특별규정의 변경제안을 총회 의제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경우, 해당 회원국 또는 기술위원회는 총회가 열리는 연도의 직전연도의 12월 1일까지 제안 안을 ISU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위원회의 의견 제안은 반드시 총회 개최 전년도 11월 15일까지 법률고문의 사전 검토를 위하여 제출 되어야 한다.

정관, 일반규정 및 특별 규정의 변경을 위한 ISU 회원국, 집행위원회 및 기술위원회의 제안은 그 요약본을 모든 ISU 회원국들, 집행위원회, 스포츠 기술이사들 및 기술위원회들에게 1월 31일까지 발송해야 한다.

제안을 제출하였던 회원국들과 기술위원회들은 자신의 제안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정된 제안 안을 동 년 3월 30일한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회원국들의 수정안 및 집행위원회의 수정안들을 포함하여 업데이트된 총회 최종 의제들이 ISU 통신문 형태로 동년 4월 30일까지 모든 회원국들과 임원들에게 출판된다.

b) ISU 회원국들은 기술 규칙 변경 제안을 총회 전 9월 1일까지 사무국에 발송하여 각 종목별 기술위원회들 및 스포츠 기술이사들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다음 각 종목별 스포츠 기술 이사들 및 각 종목별 부회장이 승인한 기술위원회의 기술 규칙 변경 제안 요약, 및 집행위원회의 제안은 1월 31일까지 ISU 회원국들과 임원들에게 발송해야 한다.

ISU 회원국들과 임원들은 제안된 기술 규칙 변경에 관한 의견을 3월 1일까지 사무국에 제출하여 각 종목별 기술위원회들 및 각 종목별 스포츠 기술 이사들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다음 각 종목별 부회장(제16조, 3항 e)가 적용됨)이 승인한 기술위원회들 및 스포츠 기술 이사들의 기술 규칙 변경 제안 및 집행위원회의 제안의 업데이트된 요약은 총회 의제에 포함시키고 ISU 통신문을 통해 동 년 4월 30일까지 모든 ISU 회원국들과 임원들에게 출판되어야 한다.

c) 모든 제안들은 영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수정의 경우, 새 문장이 삽입될 때와 기존 문장에 새 단어를 추가할 때에는 반드시 밑줄을 긋도록 한다. 직접적이든 아니면 회원국과의 호스팅 계약에 의한 것이든 ISU에게 비용발생이 되는 제안인 경우, 제안 시 예산안을 함께 동봉해야 한다.

3. 규정의 일관성

총회에서 가결된 의제들이 조속히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정관, 일반규정, 특별규정 또는 기술규칙상의 어느 조항들이 총회의 결정취지와 맞지 않거나 배치되는 경우, 또는 그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 조항들은 가장 최근에 채택된 총회의 결정에 따라 수정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해당 총회의 서기위원회(Drafting Committee)나 사무총장은 개정된 새 정관과 규정을 발표를 하기 전에 동 부적합 조항들을 적절히 교정해 주어야 한다. 모든 수정조항들은 출간물 형태로 발표를 하기 전에 검토와 승인 또는 좀 더 정확성을 기한 적절한 수정을 하도록 반드시 먼저 집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초안작성 문제

정관 및 그 절차규정, 또는 각종 규정들의 자구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제안은 총회 의제로서 포함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것들은 사무총장이 취합한 후 총회의 서기위원회에 직접 제출한다.

5. 긴급안건

정관 또는 일반규정과 특별규정에 대한 제안 및/또는 기술규정에 대한 집행위원회 및/또는 기술위원회의 제안이 상기에 적시한 제출마감일자를 넘겨 제출이 되더라도, 만일 동 제안이 즉시 모든 회원국들에게 배포가 될 수 있도록 영어로 작성되었으며, 총회 개최일을 기준으로 3주 이전까지 사무국에 제출이 되었고, 또한 총회의 출석정수 4/5의 다수결 찬성에 의해 긴급안건으로 인정이 된 경우, 총회에서 토의 및 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6. 주제에 대한 포럼

선거가 치러지지 않는 총회의 경우 포럼(Forum)을 개최하게 되는데, 동 포럼의 목적은 차기 총회에서 다뤄질 ISU 전략 및 규칙들의 변경을 포함하여, ISU의 제반 스포츠활동에 있어서의 관심사들을 주제로 토의를 하기 위함이다.

선거가 없는 총회는 반드시 포럼을 개최하여야 하며, 포럼을 통해 회원국들 및/또는 ISU 임원들(제 17조의 1항 o) 참조)이 제안하거나 발표한 주제내용들은 집행위원회에 전달된다. 포럼의 세부 프로그램은 총회 의제들과 함께 발표가 되게 되는데, 이 프로그램은 소위 "긴급안건"으로, 또는 포럼이 열리는 총회에서 변경을 위한 안건으로서 다뤄질 대상이 아니다. 포럼의 역할은 단지 최고기구로서의 총회가 수행하여야 할 과제 등을 토의를 통해 도출함으로써 집행위원회를 지원하고 자문하는 역할일 뿐이다.

7. 제안에 대한 심의 및 토의

a) 제안에 관련된 진술은 짧게 하여야 하며 사안 별로 의장이 다른 시간 제한을 명령하지 않는 한 삼 (3) 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의장은 특정 제안에 관해 발언을 하는 할당된 합계 시간에 관해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

b) 어떤 특정 제안에 대해서는 회원국 당 오로지 한 명의 대표만이 발언을 할 수 있다. 특정한 제안을 제출하지 않는 ISU회원국은 해당 제안에 대하여 첫 번째로 발언할 권리가 있다. 어떠한 ISU 회원국의 대표도 동일한 제안에 관해 2회를 초과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안에 관한 논의 중간의 중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 목적 상 계수하지 않음).

c) ISU 회원국 또는 ISU 기구의 대표자는 어떤 언급이 있은 후 즉시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특정한 점에 관한 중간 질문을 할 수 있다. 중간 질문은 간결해야 하며, 의견이나 설명적인 진술은 허용되지 않는다. 발언자의 답변은 즉각 이루어져야 하며 반드시 짧게 유지해야 한다.

d) 제안된 규칙 변경에 관한 ISU 회원국의 모든 대표의 발언은, 기술 규칙의 변경을 제외하고는 특정한 제안된 규칙 변경에 관한 수정 또는 변경 제안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만일 제안된 규칙 변경에 대한 수정 또는 변경 제안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대표자는 서면으로 이를 제시해야 한다. 첫 번째 투표에서는 원래의 제안자가 해당하는 수정 또는 변경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 한은 원래의 제안을 수정 또는 변경 제안에 대항하여 투표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투표를 얻은 제안의 버전에 대해 최종 투표에서 투표를 실시한다. 만일 상호 배타적인 둘 이상의 수정 또는 대체적인 제안이 존재할 경우, 첫 번째 투표에서는 이들 제안을 상호 반대되는 것으로 투표를 하여야 한다, 두 번째 투표에서는, 원래의 제안을 한 사람이 해당하는 수정 또는 대체적인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 한, 상대적으로 많은 표를 얻은 수정 또는 대체적인 제안을 원래의 제안에 대항하여 투표를 한다. 상대적으로 많은 표를 얻은 제안에 대해 최종 투표를 실시한다.

e) 원래의 제안을 한 사람은 해당하는 제안에 관한 투표가 실시될 때까지 자신의 제안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f) 절차적인 동의 (예를 들어 토론의 종결을 요구하거나 회의의 종료를 요청하거나, 비밀 투표를 통한 투표를 요청하는 등)은 총회가 개의 중인 동안은 언제든 제출할 수 있다. 절차적인 제안의 경우, 진행 중인 토의는 해당 동의에 대한 투표가 완료될 때까지 중단한다.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동의 내용에 대하여 짧은 동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는 해당 동의에 대한 투표를 사전 토의 없이 즉각 실시한다. 절차적인 동의는 본 규칙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은 단순 다수결로 결정한다.

g) 이미 투표를 실시한 제안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는 동의는 ISU 회원국의 모든 대표자, 회장, 집행위원회 그리고/또는 관련 기술위원회에서 의장이 총회 또는 해당하는 분과 회의의 종료를 선언하기 전에 제출할 수 있다. 재고를 요청하는 동의는 투표자의 2/3의 다수결로 통과한다. 만일 재고를 요청하는 동의가 통과될 경우, 제안에 대한 토론은 의장이 재개한다.

h) 총회 또는 분과 회의 과정에서 상당히 수정되고 수락된 모든 제안은 서기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필요할 경우, 서기위원회는 2차, 최종 투표에 제출할 문안을 총회 종료 전까지 수정하여야 한다.

8. 임원들의 총회출석

집행위원회의원, 스포츠이사, 기술위원회 위원, 선수위원회 위원, 징계위원회 위원, 의료위원회 위원, 발전위원회 위원 및 고문들은 자문역할로서 총회에 출석할 수는 있으나 투표권은 행사하지 못한다(단, 출석한 회원국 대표자가 1인뿐이고, 이 자가 임원인 경우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9. 명예위원의 총회출석

명예위원은 회원국 별 출석인원 쿼터에 구애 받지 않고 총회에 출석할 수 있다. 의장의 재량으로 발언권을 얻을 수는 있으나 명예회원의 자격으로는 투표권을 가질 수 없다.

10. ISU 회원국의 투표권

회원국의 투표권은 신원을 밝힌 자로서, 해당 회원국의 정관/정관 등에 의해 대표자로서 공히 지명이 된 대표자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다른 회원국에게 자신의 투표권을 대행하는 것은 불허한다.

11. 총회에서의 투표

총회에서의 투표는 출석한 회원국 대표자들이 행사한다. 두 종목부문(피겨스케이팅과 스피드스케이팅) 모두 멤버십을 획득하고 있는 회원국은 2개의 투표권을 갖는다. 단, 총회에서의 투표 시 두 개의 투표권을 가/부에 나눠서 행사할 수 없다(즉, 찬성에 1표, 반대에 1표 식으로 행사하는 것이 불허된다). 종목부문이 하나인 회원국은 1개의 투표권만을 갖는다. 피겨스케이팅 또는 스피드스케이팅 각각에 대한 특별규정과 기술규칙 관련 안을 처리할 때에는 2개의 투표권을 갖는 회원국이더라도 해당 규칙의 안건처리 시 1개의 투표권만을 갖는다.

정관, 그 절차 규정 및 규정에 대한 결의 및 제안에 관한 투표는 어떤 ISU 회원국 이든 비밀 투표를 요청하지 않는 한 공개 투표를 통해 실시한다. 비밀 투표의 요청에 관한 투표는 어떠한 토론도 없이 즉시 실시한다. 비밀 투표의 요청에 관한 투표는 만일 재석 투표권자의 최소한 10분의 1의 지지가 있을 경우 통과된다.

총회 또는 ISU를 조직하는 ISU 회원국은 정관, 그 절차 규정 및 규정의 결의 및 제안에 대한 투표뿐만 아니라 선거를 위한 투표에 대한 전자 기록 시스템을 제공하여야 한다. 해당 시스템은 반드시 공개 및 비밀 투표를 허용해야 한다. 투표의 결과는 표시판에 공개되어야 한다. 공개 투표의 경우, 표시는 ISU 회원국이 투표를 하였을 경우에는 찬성, 반대 또는 기권했는지 여부를 표시한 모든 재석 ISU 회원국의 명단을 포함하여야 한다.

12. 출석통보

총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코자 하는 회원국은 개최일로부터 최소 7일 이전까지 출석의사를 사무국과 개최 조직위에 반드시 통지를 해야 한다. 규칙 102조 2항에 의거하여 출석자격이 없는 자는 대표자로서 지명되어서도 안되고 또한 총회참석도 불허된다.

13. 대표단 인원수

a) 하나의 ISU 회원국을 대표하여 피겨 및 스피드스케이팅 모두를 관리할 수 있는 합계 인원 수는 그와 같은 ISU 회원국 대표단에 최소한 1명의 현역 선수를 포함할 것에 대한 권고와 함께 여섯 (6)명으로 제한한다. 한 종목부문만 멤버십을 갖고 있는 회원국의 경우엔, 대표단으로서 총회출석이 가능한 최대 인원 수는 4명으로서, 가능한 한 최소 1인의 현역 스케이터를 대표단에 포함시키기를 권고한다.

회원국의 임원들(회장, 부회장, 집행위원회의원, 기술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징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의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및 고문들)은 대표단의 일원으로서 총회참석을 하여도 무방하나, 여하한 경우에도 총회에서 투표권을 갖지 못한다. 단, 출석한 대표단이 1인뿐이고 그 자가 임원에 해당이 되는 경우엔 예외이다. 명예위원은 여기서의 인원 수 쿼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b) 비영어권 회원국의 경우, 한 명(피겨스케이팅 또는 스피드스케이팅의 어느 한 부문만 멤버십을 갖고 있는 경우) 또는 두 명(두 부문 모두 멤버십을 갖고 있는 경우)의 통역자를 대표단 일원으로 동행시킬 수 있다. 이 통역자(들)은 총회의 컨벤션 홀 내에서 해당 대표단의 바로 옆에 동석하여 요구되는 통역업무를 바로 제공할 수 있다. 통역자(들)의 수는 상기 a) 호에서의 인원 수 쿼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c) 상기 b)호에서 말하는 통역서비스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회원국이 부담하여야 하지만, 요청이 있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건별로 비용지원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비용지원을 요청하고자 하는 회원국은 총회가 열리는 해의 3월 30일까지 사무국에 요청서를 발송해야 한다. 요청서 발송 시 대동할 통역자의 통역자격증명과 이력증빙문서를 함께 첨부하도록 한다.

14. 국가연맹의 투표권

한 회원국 내에 둘 이상의 연맹이 ISU에 정식 멤버십을 갖고 있는 경우, 이들은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

15. 국가연맹의 권리

이전에 ISU로부터 멤버십 자격을 획득하지 못한 국가별 연맹이 신규로 "회원국"자격을 획득한 경우, 동 연맹은 자국을 대표하여 자격획득 즉시 투표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권리를 갖는다.

16. 결의

통상적인 결의 안건들은 총회에 출석한 회원국들의 단순 다수결에 의한 가결로써 통과한다.

17. 다수결

기권은 다수결확인에 산입되어야 한다. 무효 투표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18. 총회 회의의 의장

총회의 회의는 회장이 주재를 하여야 하며, 회장이 참석할수 없을 경우에는, 제1 부회장, 또는 이마저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2 부회장이 주재를 한다. 만일 회장이나 부회장이 모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은 집행위원회의 가장 선임 (재임 연수 기준) 위원이 맡고, 재임 연수가 같을 경우에는 직전 선거에서 가장 많은 수의 표를 득표한 집행위원회 위원, 또는 득표 수가 같을 경우에는 그 가운데 가장 연장 (나이 기준)자인 집행위원회 위원이 맡는다.

의장은 결의와 개정을 동의할 권리가 있다.

의장은 일반적으로 해당 요청을 접수한 순서에 따라 발언자에게 발언권을 부여한다.

의장은 모욕적인 언사를 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거나, 요점만을 말하지 않거나, 또는 발언 시한을 초과하거나 또는 기타의 절차 규칙을 위반하는 참석자에게 정숙을 명할 수 있다. 심각한 방해가 디는 경우, 그리고 해당하는 경고를 한 후에는, 의장은 참석자를 특정 회의 또는 전체 총회에서 배제할 수 있다. 관련 개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총회는 재석 인원의 단순 다수결 투표를 통해서 즉각 토론 없이 배제를 결정한다.

19. 부문별 회의

각 부문(피겨스케이팅과 스피드스케이팅) 별 회의들은 총회와 동시에 진행하되, 타 부문과는 분리된 공간에서 진행한다.

20. 부문별 회의의 의장

분과 회의의 의장은 관련 부회장, 또는 부회장이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분과의 가장 선임 (재임 연수 기준)인 집행위원회 위원이 맡으며, 재임 연수가 같을 경우에는 직전 선거에서 가장 많은 직전 선거에서 가장 많은 수의 표를 득표한 집행위원회 위원, 또는 득표 수가 같을 경우에는 그 가운데 가장 연장 (나이 기준)자인 집행위원회 위원이 맡는다.

총회 회의의 의장의 권리 및 임무와 관련한 규정 (상기 18항)이 그에 따라 적용된다. 하지만, 참여자의 배제는 오로지 특정 회의 또는 분과의 모든 회의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21. 총회/집행위원회/사무총장/스포츠이사의 결정권한

총회는 모든 사안들에 대한 의사결정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그러한 의사결정권한은 통상적으로 빙상스포츠의 발전을 위한 원칙과 방향성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총회는 집행위원회, 사무총장 그리고 스포츠이사에게, 해당 기술위원회 및 의료위원회 등의 조력을 받아, 상세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22. 회의진행과 의사록

모든 총회의 진행은 영어로 진행하며 총회에서 적법하게 통과된 모든 결의 및 제안은 ISU 회원국에게 회람하는 총회 의사록에 전부 기록해야 한다.

23. 선거

회장, 부회장들, 집행위원회 의원들, 징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 그리고 기술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에 대한 선거는 비밀투표에 의해—필요로 하는 경우 2단계로 진행됨—선출된다. 총회는 각 선거를 시작하기 직전에 출마자들에게 비밀투표의 수락여부를 묻게 된다.

24. 출마후보들의 수가 한정적일 때의 선거

어떤 기구 내에서 선거를 통해 충원할 빈 포지션이 하나인 상황에서 출마자가 1인뿐이거나 빈 포지션이 여러 개이더라도 출마자의 수가 빈 포지션의 수와 동수인 경우, 출마자들은 투표 없이 모두 당선된 것으로 간주한다. 필요할 경우, 빈 포지션의 충원이 아니라, 단지 서열을 정하기 위해 특별투표가 열릴 수도 있다.

25. 유효투표

회원국들은 선출대상인 빈 포지션들의 각각에 대해 모두 출마자들의 이름을 선택하여야 한다. 만일 투표지에 표기된 선택된 이름들의 수가 선출대상인 빈 포지션들의 수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 또는 출마하지 않은 자의 이름이 표기된 경우 등은 모두 무효처리 된다.

26. 1차 투표와 2차 투표

첫 번째 투표에서의 선거는 절대 다수를 필요로 한다. 절대 다수란 투표에 참가한 모든 유효표의 과반수를 의미한다. 만일 첫 번째 투표에서 절대 다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두 번째 투표에서 가장 많은 유효표를 득표한 후보자가 선출된다.

27. 가부동수 투표

둘 이상의 후보들이 선거에서 동일한 득표를 한 경우, 해당 후보들만을 대상으로 결정투표를 실시한다. 여기서도 가부동수가 나온 경우엔, 추첨으로 당선을 결정한다.

28. 서열

서열결정을 위한 선거에서 가부동수가 나온 경우, 재투표를 실시한다. 여기서도 또 다시 가부동수가 나온 경우엔, 추첨으로 서열을 결정한다.

29. 선거의 기술적 운영

집행위원회는 자신이 지명한 독립적인 전자투표시스템 서비스 회사로 하여금 투표에 전자적인 투표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을 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지명된 동 서비스회사는 사용하려는 해당 시스템이 이미 검증시험을 마쳤고 결과에 대한 100% 정확도를 보장하며, 또한 비밀투표와 관련한 모든 데이터들은 엄격히 기밀유지에 부칠 것임을 서면으로 서약해야 한다. 또한, 집행위원회는 총회가 인정하는 투표참관인들로 하여금 동 전자투표시스템의 정확도와 생성데이터의 기밀유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동 전자투표시스템이 오작동 하는 경우, 전통적인 종이투표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전자적이든 종이방식이든 이를 불문하고 선거와 관련된 모든 기록물들은 해당 총회가 종료된 직후 선거참관단의 배석 하에 사무총장의 책임으로 모두 폐기를 시켜야 한다.

30. 참관단

집행위원회는 투표참관인들에게 서기단이 작성한 총회의사록과 각종 결의안 속기록들을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출간 및 배포 전에 내용의 정확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B. 총회 의제

제 31 조

1. 회장에 의한 총회 개회 선언

2. 총회가 정관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소집되었다는 확인

3. 총회의사록 책임간사의 선출

4. 출석한 대표자들의 자격과 투표권 확인

5. 총회의사록 참관인(2인) 선출

6. 정관, 그 절차규정 및 일반규정과 관련한 제/개정안이 채택된 경우 가결원안 전문의 작성을 책임질 서기위원회(최소 3인일 것)의 선출

7. "총회회의절차서"의 요구항목들을 포함한, 총회 의제들의 승인

8. 직전 총회의 의사록 승인

9. 회장의 격년보고서

10. 발전위원회의 격년보고서

11. 제 30조 6항의 주제들에 대한 포럼

12. 징계위원회가 달리 조치를 취하지 않은 마지막 총회 이후 기간 동안 집행위원회, 사무총장, 이사들 및 기술위원회들의 결정에 대한 질문, 이의제기 및 항소.

13. 직전 총회 이후부터 현재의 기간 동안 이루어진 징계위원회 결정들에 대한 보고

14. 마지막 총회 이후 ISU의 재정 관리에 관한 감사 보고서, 보고서의 승인 및 그에 관련된 집행위원회, 사무총장, 재무 책임자 및 이사들의 해임.

15. 집행위원회, 기술위원회들 및 회원국들이 제안한 정관 및 그 절차규정의 개정안들에 대한 상정과 동의

16. 일반규정의 개정안들에 대한 상정과 동의

17. 총회연도 및 차후 2년 기간에 대해 집행위원회가 제출한 예산안 심의 및 동의

18. 다음 총회까지 직을 수행할 감사 회사의 선출.

19. 각 부문별 일반규정 개정안들의 상정과 동의

20. 집행위원회, 사무총장, 스포츠이사 및 기술위원회들의 결정과 조치들에 대한 비준

21. 선출직 공천자들에 대한 이의제기

22. 회장 선거

23. 피겨스케이팅부문 부회장과 스피드스케이팅부문 부회장에 대한 선거

24. 집행위원회 위원 10명 중, 피겨 종목에 5명과 스피드 종목에 5명 선거

25. 집행위원회의 선수 위원 선출.

26. 부회장들은 의원선거결과를 각 기술위원회에게 통지 및 설명한다.

27. 징계위원회 위원장과 4인의 위원들의 선출

28. 기 수립된 ISU 4개년 계획에 대한 현황보고서 제출

29. 총회연도의 5월 1일까지 모든 회원국들에게 배포되었던 차기 4개년 계획의 승인; 동 계획의 승인 시 기존의 4개년 계획은 자동 폐기된다.

30. 명예위원들의 선출

31. 정관, 그 절차규정 또는 기타 규정들에 의거하여 총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기타 모든 안건들

32. 회장에 의한 총회 폐회 선언

C. 스피드스케이팅부문 의제

제 32 조

1. 부회장에 의한 회의 개회 선언

2. 회의의사록 책임간사의 선출

3. 출석한 스피드스케이팅 대표자들의 자격과 투표권 확인

4. 회의의사록 참관인(2인) 선출

5. 스피드스케이팅 규정들과 관련된 제/개정안이 채택된 경우 가결원안 전문의 작성을 책임질 서기위원회(최소 3인일 것)의 선출; 마찬가지로,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규정들에 대해서도 동일 성격의 서기위원회 구성을 위한 선출을 한다.

6. 의제(Agenda)에 대한 승인

7. 직년 2개년 동안 이루어진 스피드스케이팅부문 활동에 대한 부회장의 보고

8. 스피드스케이팅과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의 특별규정 개정안들에 대한 상정과 동의

9. 스피드스케이팅 기술위원회 위원장과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기술위원회 위원장은, 스피드스케이팅과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의 각 소관별 기술규칙 개정안들을 회의에서 보고한다.

동 보고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a) 정관(A. 총회)의 절차적 규정에 따라 총회 전 포럼/워크숍 중에 ISU 회원국들, 집행위원회 및 스포츠 기술이사들이 소관별 기술위원회에 제출한 제안과 의견의 요약.

b) 안건별로 코치, 스케이터 및 오피셜들로부터 취합한 의견들에 대한 요약

c) 소관별 기술위원회가 판단하는 주요 결론내용과 가장 핵심적인 개정내용 등에 대한 요약

d) 소관별 기술위원회 및 스포츠 기술이사들이 처리하고 소관 부회장이 총회 전 워크숍 중에 추가적으로 논의하도록 승인하여 의제에 포함된 기술 규칙 변경안의 개정에 대한 세부 요약.

10. 상정된 기술규칙 변경의안에 대해 회원국들이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 뒤이어 투표로 처리되는데, 본 정관 제 11조 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단순다수결에 의해 거부안이 가결된다.

11. 스피드스케이팅 종목의 기술적 업무를 담당할 기술위원회 구성들에 대한 선출로서, 선출은 다음 순서로 이루어진다.

a) 위원장 선출

b) 3인의 정위원들에 대한 선출

c) 주: 2명의 추가 기술위원회 위원들(즉, 스케이터 1인과 코치 1인)은 상기 선거 이후 집행위원회가 임명 (또는) 선출된다(제 20조 1항과 2항 참조).

12.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종목의 기술적 업무를 담당할 기술위원회 구성원들에 대한 선출로서, 선출은 다음 순서로 이루어진다.

a) 위원장 선출

b) 3인의 정위원들에 대한 선출

c) 주: 2명의 추가 기술위원회 위원들(즉, 스케이터 1인과 코치 1인)은 상기 선거 이후 집행위원회가 임명 (또는) 선출된다(제 20조 1항과 2항 참조).

13. 상기 11항과 12항에 있어, 어느 기술위원회를 먼저 선출할지에 대한 순서는 2006년 총회에서 스피드스케이팅 기술위원회 선출을 먼저 시작한 것을 기점으로 서로 바꿔가며 진행한다(즉, 2006년 총회는 스피드스케이팅 기술위원회(상기 11항)를 먼저 선출하였으므로, 2010년 총회는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기술위원회(상기 12항)를 선출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 된다).

14. 기 수립된 각 기술위원회 별 4개년 계획에 대한 현황보고서 제출

15. 각 기술위원회 별 차기 4개년 계획의 제출과 승인

16. 기타

17. 부회장에 의한 회의 폐회 선언

D. 피겨스케이팅부문 의제

제 33 조

1. 부회장에 의한 회의 개회 선언

2. 회의의사록 책임간사의 선출

3. 출석한 피겨스케이팅 대표자들의 자격과 투표권 확인

4. 회의의사록 참관인(2인) 선출

5. 싱글/패어 스케이팅 규정들과 관련된 제/개정안이 채택된 경우 가결원안 전문의 작성을 책임질 서기위원회(최소 3인일 것)의 선출; 마찬가지로, 아이스댄스와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 규정들에 대해서도 동일 성격의 서기위원회 구성을 위한 선출을 한다.

6. 총회 의제 승인

7. 직년 2개년 동안 이루어진 피겨스케이팅부문 활동에 대한 부회장의 보고

8. 싱글/페어 스케이팅, 아이스댄스와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 특별규정들의 개정안들에 대한 상정과 동의

9. 싱글/페어 스케이팅, 아이스댄스 및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의 각 기술위원회 위원장은, 싱글/페어 스케이팅, 아이스댄스와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의 기술규칙 개정안들을 각 소관별로 보고한다.
동 보고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a) 정관(A. 총회)의 절차적 규정에 따라 총회 전 포럼/워크숍 중에 ISU 회원국들, 집행위원회 및 스포츠 기술이사들이 소관별 기술위원회에 제출한 제안과 의견의 요약.

b) 안건별로 코치, 스케이터 및 오피셜들로부터 취합한 의견들에 대한 요약

c) 소관별 기술위원회가 판단하는 주요 결론내용과 가장 핵심적인 개정내용 등에 대한 요약

d) 소관별 기술위원회 및 스포츠 기술이사들이 처리하고 소관 부회장이 총회 전 워크숍 중에 추가적으로 논의하도록 승인하여 의제에 포함된 기술 규칙 변경안의 개정에 대한 세부 요약.

10. 상정된 기술규칙 변경의안에 대해 회원국들이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 뒤이어 투표로 처리되는데, 본 정관 제 11조 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단순다수결에 의해 거부안이 가결된다.

11. 싱글과 페어 스케이팅 종목들의 기술적 업무를 담당할 기술위원회 구성원들에 대한 선출로서, 선출은 다음 순서로 이루어진다.

a) 위원장 선출

b) 4인의 정위원들에 대한 선출

c) 주: 2명의 추가 기술위원회 위원들(즉, 스케이터 1인과 코치 1인)은 상기 선거 이후 집행위원회가 임명 (또는) 선출된다(제 20조 1항과 2항 참조).

12. 아이스댄스 종목의 기술적 업무를 담당할 기술위원회 구성원들에 대한 선출로서, 선출은 다음 순서로 이루어진다.

a) 위원장 선출

b) 3인의 정위원들에 대한 선출

c) 주: 2명의 추가 기술위원회 위원들(즉, 스케이터 1인과 코치 1인)은 상기 선거 이후 집행위원회가 임명 (또는) 선출된다(제 20조 1항과 2항 참조).

13.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 종목의 기술적 업무를 담당할 기술위원회 구성원들에 대한 선출로서, 선출은 다음 순서로 이루어진다.

a) 위원장 선출

b) 3인의 정위원들에 대한 선출

c) 주: 2명의 추가 기술위원회 위원들(즉, 스케이터 1인과 코치 1인)은 상기 선거 이후 집행위원회가 임명 (또는) 선출된다(제 20조 1항과 2항 참조).

14. 상기 11항, 12항 및 13항에 있어, 어느 기술위원회를 먼저 선출할지에 대한 순서는 2006년 총회에서 싱글/페어 스케이팅 기술위원회 선출을 먼저 시작한 것을 기점으로 교대로 바꿔가며 진행한다(즉, 2006년 총회는 싱글/페어 스케이팅 기술위원회(상기 11항)를 먼저 선출하였으므로, 2010년 총회는 아이스댄스(상기 12항)를, 2014년은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 기술위원회를 선출하게 되고(상기 13항), 2018년은 반복 로테이션 된다).

15. 기 수립된 각 기술위원회 별 4개년 계획에 대한 현황보고서 제출

16. 각 기술위원회 별 차기 4개년 계획의 제출과 승인

17. 기타

18. 부회장에 의한 회의 폐회 선언

E. 집행위원회

제 34 조

1. 집행위원회 회의의 연간 최소횟수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회가 정한 일자에 1년에 최소 2번의 회의를 가져야 한다.

2. 집행위원회 회의와 결정

집행위원회의 결정은 회의에서의 직접 또는 통신으로 도착한 의원들의 의사표시를 기초로 이루어진다.

3. 다수결

집행위원회의 모든 결정들은 출석의원들의 단순다수결에 의해 가결된다. 단, 제 17조의 1항 b)호에 의거한 유일한 예외가 존재하는 바, 그것은 사무총장의 임명과 제명에 대한 결정으로서, 회장의 투표권을 포함하여 의원총수의 2/3 이상의 찬성에 의해 가결된다. 공식투표들은 모두 공개투표인 바, 즉 투표권자들의 거수, 목소리 등이 회의록에 모두 기록된다. 단, 예외적인 경우로서 집행위원회는 출석정수의 단순다수결에 의한 비밀투표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이 비밀투표에서 만일 가부동수가 나온 경우, 2차 비밀투표가 진행된다. 2차 비밀투표에서도 가부동인인 경우엔, 공개투표로 전환되어 재차 투표가 이루어진다.

4. 회장의 캐스팅 보트권한

회장은 집행위원회회의를 주재하며, 자율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캐스팅보트를 갖는다.

5. 집행위원회 회의 정족수

7인의 의원들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또는 통신의 방법으로 투표제한시간 이내에 참여를 하는 경우, 정족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6. 집행위원회 회의 의제

회의에서 다룰 모든 제안들과 의제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회장은 개회일로부터 최소 7일 이전까지 전 의원들에게 배포가 되도록 해야 한다.

7. 제안

집행위원회의원들이 제기하는 제안들은 그 내용이 집행위원회의 관할 및 소관업무에 해당이 되는 경우, 통신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8. 투명성

전자우편을 통한 순환 투표의 경우, 투표 결과가 완료된 후, 각 집행위원회 위원의 답변은 사무총장에 의해 다른 집행위원회 위원에게 전달된다.

9. ISU 회원국 분쟁에 대한 결정

회원국들간의 분쟁이나 회원국(들)이 타방에 제기한 이의제기(Complaint) 건들에 대한 결정은, 그렇게 결정한 사유서 및 집행위원회의원들의 견해요약서와 함께 회장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집행위원회의원들의 견해는 통신을 통해 사실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10. 예산증액

집행위원회는 사무총장 및 회계책임관과 협의하여 총회에서 기 승인된 예산의 개별항목을 증액하는 승인을 할 수 있다. 총회가 승인한 예산과 관련하여 만일 수입 또는 지출항목의 변동이 결과적으로 누적이익잉여금에 상당한 수준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회람문(Circular Letter) 형식으로 그 내용을 회원국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11. 기밀유지

집행위원회회의에서의 결정내용, 집행위원회의원들의 투표내용, 회의록 및 집행위원회의원들에게 발송된 기타 문서들은, 그것들이 적법하게 출간되지 않는 한 모두 기밀로 취급된다.

집행위원회의원이 본 기밀유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 관련 규칙에 따라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F. 기술위원회

제 35 조

1. 업무계획

각 기술위원회는 각자의 업무계획을 수립한 후 부문별 직속 부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집행위원회에 예산 계획을 승인 받아야 한다.

2. 회의

기술위원회는 회의가 정해질 때마다 때마다 소관 스포츠 기술이사들을 동석시켜야 한다. 기술위원회 회의의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최대 일 개월 이내에 집행위원회, 사무총장, 각 스포츠 기술이사, 법률고문 및 재무 책임자에게 발송되어야 한다.

3. 자문협의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술적 사안들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스포츠 기술이사와 회합을 해야 한다.

4. 감독

각 기술위원회의 업무들은 소관 부회장의 감독과 통제를 받는다. 각 부회장은 해당 분야의 스포츠 기술이사들에게 특정 책임을 위임할 수 있다.

5. 결정

기술위원회의 결정은 회의에 출석한 재석위원들의 찬성표 또는 마감시간 내 도착한 전자우편을 통한 찬성표에 기초한 단순 다수결에 의해 가결된다. 회의에서 공식적인 의제에 대한 투표들은 공개 투표여야 하고, 투표권자들의 거수, 목소리 등이 회의록에 모두 기록된다. 단, 예외적인 경우로서 기술위원회는 출석정수의 단순다수결에 의한 비밀투표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이 비밀투표에서 만일 가부동수가 나온 경우, 2차 비밀투표가 진행된다. 2차 비밀투표에서도 가부동인인 경우엔, 공개투표로 전환되어 재차 투표가 이루어진다.

6. 기술위원회에 대한 정보제공

각 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부문 내의 각 타 위원회들의 활동 및/또는 고문들의 제 활동상황에 대해 계속적인 정보제공을 받고 있어야 하며, 특히 기술위원회들과 관련이 있는 결정들의 경우 스포츠 기술이사들을 통해 그 즉시 정보제공을 받아야 한다.

G. 선수 위원회

제 36 조

1. 업무 계획과 통제

선수위원회는 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제출하여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 선수위원회의 업무는 집행위원회의 통제를 받으며, 집행위원회는 그 통제권한을 선수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선수위원회 위원들은 ISU 사무총장이 배정한 ISU 사무국 직원의 행정적 도움을 받아서 자신들의 활동을 수행한다.

2. 회의

선수위원회는 적어도 1년에 한번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통상적으로 총회가 개최되는 해에 총회에, 참석하여 총회 직전일에 총회 장소에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총회가 없는 해에는 시즌이 종료된 후 최초의 집행위원회 회의 전날에 그 집행위원회 회의 장소에서 회의를 개최한다. 선수위원회 위원의 추가적인 회의 그리고/또는 출장은 각 사례별로 회장이 승인할 수 있다.

H. 의료위원회

제 37 조

1. 업무계획

의료위원회는 자신의 업무계획과 예산안을 수립한 후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회의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소관 스포츠 기술 이사들과 회의를 가져야 한다. 선수권대회 의료 자문의 보고서는 집행위원회에 발송해야 한다.

3. 집행위원회에 참석

도핑검사나 반-도핑 사안들과 관련하여 협의 또는 자문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장은 의료위원회 위원장을 집행위원회회의에 초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료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표명은 할 수 있으나 투표권은 가지지 못한다.

4. 감독

의료위원회의 업무들은 집행위원회의 감독과 통제를 받는다.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회의원(들)을 특정하여 의료위원회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료위원회가 수행하는 모든 활동들(특히, ISU 정책과 연관된 활동 및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활동)로서 일상의 단순한 행정업무를 제외한 모든 활동들은 동 권한수탁이 된 집행위원회의원(들)의 승인대상이 된다.

I. 임원과 오피셜 및 기타 정의

제 38 조

임원과 오피셜의 정의 및 기능

1. ISU 임원들

ISU의 임원(Office Holder)들이란 정관 제 8조 b)항에 특정되어 있는 직―임명직이든 선출직이든 이를 불문함―을 수행하는 자(기술위원회의 임명직 코치는 제외한다)로서, "적격자"이어야 한다.

2. 오피셜

오피셜(Official)이란 ISU 법령에 준거하여 조직되는 경기들에서 ISU 법령에 명시된 기능들을 수행하는 자(즉, ISU 대표자들, 동계올림픽대회의 기술자문(Technical Delegate), 이벤트 매니저/어시스턴트 이벤트 매니저, 지역 어시스턴트 이벤트 매니저(RAEMS), 레프리, 져지,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테크니컬 컨트롤러, 데이터/리플레이 오퍼레이터, 스타터, 선수 스튜어드), 및 총회에서 "ISU" 오피셜 카테고리에 들어간다고 결정하는 자들을 말한다.

3. ISU 대표자의 기능

ISU 대표자(Representative)란 ISU 선수권대회 또는 기타의 ISU 경기에 대해 집행위원회가 그러한 대표를 맡기에 적절하다고 지명한, 각 ISU 경기에서 가장 직위가 높은 ISU 오피셜을 말한다.

ISU 대표자는 해당 경기에서 ISU 를 대표하며, ISU 선수권대회/경기의 진행과 관련하여 ISU 법령과 ISU 메모랜덤에 명시된 모든 기능들을 수행한다. 또한 반드시 다음으로만 한정하지는 않으나, 특히 레프리, 해당 이벤트 매니저 등과 같은 다른 오피셜의 소관사항이 아닌, 경기의 조직이나 진행 등과 관련한 모든 주요 사안들을 결정한다.

ISU 대표자는 어떤 특별한 상황에 처해 반드시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곤, ISU의 제 상업적 계약들의 계약 조항들이나 조건들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

4. ISU 이벤트 매니저/ISU 어시스턴트 이벤트 매니저의 기능

a) ISU 이벤트 매니저와 ISU 어시스턴트 이벤트 매니저는 집행위원회에 의해 임명되며, 주 기능은 ISU 경기들이 조직 및 운영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조정하는 역할이다. 이들은 사무총장 또는 해당 부문의 부회장 또는 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된 이사에게 보고한다.

b) ISU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 내에서는, 이들은 ISU 대표자(지명이 된 ISU 대표자가 동 경기장에 있는 경우—제 38조 3항 참조) 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ISU 이벤트 코디네이터와 ISU 어시스턴트 이벤트 코디네이터는 ISU 상업계약들이 원만히 실행이 되고 또 권리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사무총장 및 해당 경기의 ISU 사무국 직원들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c) 모든 ISU 이벤트 매니저들과 어시스턴트 이벤트 매니저들은 각자의 거주국에 그대로 머무르면서 필요시 해외출장을 가는 형식이며, 활동의 범위/정도/기간에 따라 집행위원회가 정한 보수를 받게 된다. 이벤트 매니저들의 경우, ISU 자체, ISU 회원국, 제휴클럽 및/또는 빙상경기나 활동과 관련된 공공 또는 민간의 조직에서 책임을 갖는 그 어떤 공식적인 직책을 가질 수 없으며, 또한 ISU 코치로도 활동할 수 없다.

d) 상기에서 설명한 ISU 이벤트 코디네이터와 ISU 어시스턴트 이벤트 코디네이터의 기능과 관련하여, 그 구체적인 업무분장은 집행위원회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여 정한다.

5. 지역 어시스턴트 이벤트 매니저 (RAEMs – 피겨스케이팅 부문에만 해당)

피겨스케이팅 부문에서만은, 사무총장은 피겨스케이팅 담당 부회장과 협력하고, 이벤트 매니저들 및 어시스턴트 이벤트 매니저들과 협력하여, 피겨스케이팅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조직에 관한 기능 및 컴퓨터 기능을 보유한 개인들로 구성된 지역 어시스턴트 이벤트 매니저(RAEMs) 풀을 훈련하고 유지해야 한다.

인력 풀에 포함된 RAEM들은 집행위원회가 임명하게 되며, 이들은 소속 회원국과 지역의 조직위원회에서 자신의 경험을 제공하고 지원하기 위해 각자의 거주국에서 열리는 ISU 경기들에 참가하여 활동하게 된다.

6. 동계올림픽대회의 ISU 기술자문

동계올림픽대회에서 활동하게 될 ISU의 T/D(기술자문)들은 ISU 집행위원회가 임명하며, 이들은 ISU가 동계올림픽대회에 참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당시 시점에 유효한 올림픽헌장에 주어진 제 권리와 책임에 기초하여 ISU는 물론 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OCOG) 및 IOC에게 필요한 경기자문을 제공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제 39 조

그 외의 정의들

1. ISU 법령집(ISU Statutes)

ISU 법령집은 ISU의 정관 (Constitution) (그 절차규정을 포함함), 일반규정 (General Regulations), 특별규정(Special Regulations), 기술규칙(Technical Rules), 윤리규정(Code of Ethics), 반-도핑규칙(ISU Anti-Doping Rules), 반-도핑절차 (ISU Anti-Doping Procedures) 및 현재 효력이 잔존하는 모든 통신문 (Communications) 들로 구성된다.

2. 규정

ISU 법령집에서 "일반" 또는 "특별"이라는 접두어 없이 단지 "규정"이라고 표현하는 경우, 일반규정과 특별규정 둘 다를 포함하되, 기술규칙은 포함하지 않는다.

3. 부문과 종목

a) ISU의 부문들
- 피겨스케이팅 부문
- 스피드스케이팅 부문

b) 피겨스케이팅 부문은 다음의 세부종목들을 포함한다(세부종목 이름만으로 성별구분을 알 수 없는 경우 괄호 ( ) 안에 별도로 표기함)

i) 싱글 및 페어 스케이팅 종목:
- 여자 싱글 스케이팅
- 남자 싱글 스케이팅
- 페어 스케이팅 (여자 1명과 남자 1명)

ii) 아이스댄스 종목:
- 아이스댄스 (여자 1명과 남자 1명)

iii)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 종목: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 특별규정 규칙 800의 2항에 따라 여자와 남자로 팀을 구성)

iv) 피겨스케이팅 팀 경기는 여자 1~2명, 남자 1~2명, 페어스케이팅 1 커플, 아이스댄스 1 커플로 구성한다(규칙 300의 1항과 2항을 참조할 것).

c) 스피드스케이팅 부문은 다음의 세부종목들을 포함한다(세부종목 이름만으로 성별구분을 알 수 없는 경우 괄호( )안에 별도로 표기함):

i) 스피드스케이팅 종목
- 여자
- 남자
- 팀 추월/여자 팀 추월
- 팀 추월/남자 팀 추월
- 여자 매스 스타트

- 남자 매스 스타트
- 여자 계주
- 남자 계주
- 혼성(남+여) 계주

ii)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종목
- 여자
- 남자
- 여자 계주
- 남자 계주
- 혼성(남+여) 계주

4. ISU 경기

"ISU (공식)경기들"(영문표기 시 Event의 첫 문자가 대문자임을 유의할 것)이란 규칙 100의 3항 b)에 나열되어 있는 경기들을 말한다.

5. 경기

"경기" 또는 "경기들"(영문표기 시 event의 첫 문자가 소문자임을 유의할 것)이란 "ISU 공식경기들"이 아닌 기타의 모든 경기(들)을 통칭하는 어휘로서, 가령 인터내셔널 경기와 국내경기(단, ISU 주관이 아닐 것), 시범경기, 쇼, 투어 등을 말한다

6. 개인시리즈경기(Individual Series event)

개인시리즈경기란 ISU 시리즈와 연계된 경기로서, 규칙 100의 3항 c) 에 나열되어 있는 경기들을 말한다.

7. 인터내셔널 경기 / 국내 경기

인터내셔널 경기는 규칙 107의 1-11항에 따라 나열된 경기(ISU 경기 및 기타 경기)이다.
동계올림픽대회(OWG) 및 동계유스올림픽대회(YOG)는 ISU가 인터내셔널 경기로 운영한다(규칙 107의 2항 및 규칙 126을 참조). 클럽간 경기는 규칙 107의 15항에 따라 정의된다.

8. 경기

"경기"(영문표기 competition이 소문자 "c"로 시작됨을 유의할 것)란 다음을 의미한다

a) 세그먼트의 수는 물론 순위경기인지 또는 예선라운드(예선, 준준결승, 준결승, 결승)인지와는 상관없이, 선수들간의 겨룸을 통해 최종결과가 도출되는 어떤 하나의 경기를 말한다. 선수는 개인자격 또는 팀의 일원으로 그러한 경기를 치른다.

b) 피겨스케이팅부문의 경우, "ISU 공식경기" 또는 기타 경기에서 한 개 이상의 세그먼트들로 구성된 세부종목 경기들을 말한다.

c) 스피드스케이팅부문의 경우, 1 레이스의 정해진 거리 또는 계주의 형태로 펼쳐지는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조 경기의 경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예선라운드 또는 예선을 가질 수 있음)들, 또는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의 예선라운드(예선 등)에서 펼쳐지는 경기들을 말한다.

9. 세그먼트(segment)

세그먼트란 피겨스케이팅경기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일부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싱글/페어 및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의 경우 쇼트프로그램을, 아이스댄스의 경우 쇼트댄스와 프리 댄스를 가리킨다.

10. 거리/레이스

거리(distance)란 스피드스케이팅 또는 쇼트트랙경기에서의 각 종목별 거리를 말한다. 미터 단위의 구체적인 거리는 스피드스케이팅과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의 각 해당 특별규정에 명문화되어 있다.

각 거리별 활주에 있어서의 레이스에 대한 규칙들은 스피드스케이팅과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의 각 해당 특별규정과 기술규칙을 따른다.

11. 예선라운드들(사전 예선, 예선, 히트, 8강, 준준결승, 준결승)과 결승

예선라운드(Qualifying Round)는 예선통과자들을 걸러내기 위한 경기들로서, 사전 예선, 예선, 히트 등으로 구성된다. 엔트리의 수에 따라 8위예선(eight final), 준준결승, 준결승 등을 치러 결승에 진출할 선수(또는 팀)을 결정하기도 한다. 결승이란 거리별 해당 종목의 최종경기를 말한다. 예선 라운드에는 패자부활전(Repechage Races)도 포함될 수 있다.

12. 나이 카테고리

나이 카테고리는 규칙 108에 정의되어 있다.

13. 스케이터 - 선수

스케이터(skater)란 ISU 경기는 물론 기타 경기들(시범경기, 쇼 등을 포함함)의 스케이팅 종목에 참가하는 자로서, 참가적격적이든 부적격자이든 이를 불문한다. 선수(competitor)(페어스케이팅과 아이스댄싱의 경우 커플과 팀을 지칭)란 스케이터와 같은 의미이나, 경기장에 입장하여 직접 기량을 펼치는 스케이터를 구체적으로 적시할 때 사용된다.

II.

일반규정

A. 일반

규칙 100

1. 정의

"연맹" 또는 "특별클럽"이라는 용어가 이하에 나타날 경우, 이는 국제빙상연맹(이하 "ISU"로 약칭함)을 구성하는 연맹 또는 특별클럽을 의미한다.

2. 제휴클럽

"제휴클럽"이라는 용어는 "회원국" 연맹에 소속 또는 제휴된 스케이팅 클럽을 의미한다.

3. ISU 경기

a) ISU의 빙상종목들에 대한 스포츠 활동은 ISU의 주요 경기들, 즉 이른바 "ISU (공식)경기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ISU는 ISU 경기들과 관련한 모든 권리들, 가령 이름, 프로그램의 포맷, 채점규칙, 컴퓨터 프로그램, 조직, 마케팅, 광고, 방송 및 재출력 등에 모든 권리를 가지며, ISU 는 이러한 권리들의 상표권등록, 라이선싱 등은 물론 마케팅과 홍보수단을 개발해 나감으로써, "ISU 경기들"이 국제적인 빙상스포츠 행사들로서 연속성을 갖도록 보장한다.

b) 오해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 "ISU 경기들"이란 다음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ISU 선수권대회, ISU 피겨스케이팅 그랑프리 결승과 시리즈(시리즈의 경우, 아래의 3.c) 호를 참조할 것), ISU 피겨스케이팅 그랑프리 주니어 결승과 시리즈(시리즈의 경우, 아래의 3.c)호를 참조할 것), ISU 피겨스케이팅 월드 팀 트로피, 피겨스케이팅 올림픽 예선 대회, ISU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 주니어 월드컵경기 등과, ISU 가 직접, 조직/파이낸싱/프로모션이 되는 기타 경기들(ISU 시범경기와 쇼를 포함함)과 ISU 인터내셔널 경기 들로써, 특별히 "ISU"로 지명된 것들.

c) 일종의 연계 시리즈로 치러지는 인터내셔널 경기의 각 ISU 시리즈는 현재 기준으로 다음 경기들, 즉 ISU 피겨스케이팅 그랑프리(시니어와 주니어), 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시니어와 주니어),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으로 구성되며, 이 경기들도 이른바 "ISU 경기들"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단, 국가별 개별경기들의 TV 방영권(규칙 105의 1항을 참조할 것)과 마케팅/광고권은, 해당 회원국과 ISU 간에 체결된 어떤 특정한 계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여전히 동 경기를 조직하는 해당 회원국에게 있다.

d) 규칙 107에 식별은 되어 있으나 상기의 a)~c) 범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국제적인 경기 뿐만 아니라 상기의 a)~c) 범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시범경기, 쇼, 투어 등은 ISU의 허가 하에 회원국 차원에서 조직 및 진행이 되지만(단, IOC 가 조직 및 관장하는 동계올림픽과 동계유스올림픽은 제외한다), 이는 "ISU 경기"가 아니다.

4. 권리

ISU 는 "ISU 경기들"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가진다. ISU는 경기개최국에 소재한 회원국연맹의 최대의 협조 하에 직접 ISU 경기를 개최할 권한이 있으며, 만일 개최국의 연맹이 그 국가에서 IUS 경기를 조직하는데 협조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경우 다른 조직과 협조할 수 있다.

규칙 101

1. 법적효력

"일반규정"의 변경과 수정은 총회(Congress)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총회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단, 출간된 의제 (Agenda)에 특별히 허용키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그러한 변경 또는 수정은 총회 진행 중에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ISU의 피겨스케이팅부문과 스피드스케이팅부문 모두를 지배하며, 국제적인 경기에 관한 한 모든 회원국들과 각 회원국들의 "제휴클럽"들에도 공히 구속력을 갖는다.

3. 규정준수

모든 인터내셔널 경기들과 시범경기들은 대회가 열리는 시점에 유효한 ISU 규정들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진행이 되어야 한다(예외사항들의 경우, 규칙 104과 11b항을 참고할 것).

B. 적격성

제 102 조

1. 적격성 지위

a) ISU의 적격성 규칙은 다음과 같은 고려에 기초하고 있다.

i) 적격성 규칙은 다음과 같은 ISU의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 스케이팅의 윤리적 가치뿐만 아니라, 스케이팅 및 인터내셔널 스케이팅 경기의 진실성, 건강 및 안전과 양호한 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ii) 이와 같은 제반 목적은 특히 다음과 같은 수단을 통해 달성된다.

- 인터내셔널 스케이팅 경기가 전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스포츠의 원칙에 부합하는 공정한 방식으로 규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ISU 집행위원회가 승인하는 모든 참신성의 적용 대상이 되는) 스케이팅에 대한 통일된 규칙을 보장한다.
- 특히 (i) 스케이팅을 스케이팅 스포츠 도박 활동 및 기타 인터내셔널 스케이팅 경기의 조작의 위험을 야기하는 행동으로부터 보호하고, (ii) 선수에 대한 성적 학대를 방지하며, (iii) 오피셜과 ISU 달력 상의 이벤트의 정직성을 보호하고, (iv) ISU와 관련한 부패한 활동을 금지하며, (v) 이해의 충돌을 방지할 스케이팅의 윤리적 가치 및 ISU 윤리 코드의 집행.
- 반-도핑 규칙 및 선수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구체적인 규칙의 집행.
- 선수, 오피셜 및 기타의 스케이팅 경기 참가자들과 관중들이 가능한 한 많은 스케이팅 이벤트에 참가할 수 있도록, 경기 시즌 (즉, 8월 1일부터 4월 30일 사이) 중에 경기 간의 제약 또는 충돌이 없도록 하는 인터내셔널 스케이팅 경기의 조직.
- 발전 및 연대 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한 모든 차원에 있어서의 스케이팅의 자원적인 구조와 스케이팅의 발전에 대한 지원.

b) ISU만이 유일하게 ISU가 비준한 이벤트에 있어서 이와 같은 목적들을 적절하게 보호하고 집행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반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적격인 선수가 다음과 같은 인터내셔널 경기에 참가하기로 선택하는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것이 필수적이다.

i) 만일 해당 이벤트가 ISU 정관의 3조에 기초하여 ISU 의 관할권에 속할 경우에는 ISU가 비준한 경기.

ii) 레프리, 테크니컬 컨트롤러,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져지, 스케이터, 선수 스튜어드 및 기타 ISU가 승인한 오피셜을 포함하는 ISU가 인정하고 승인한 오피셜들이 진행하는 경기

iii) (ISU 집행위원회가 승인한 참신성에 따르며,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경우에는 해당할 ISU 규칙이 면제되는) ISU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경기.

c) 선수와 오피셜의 국내대회 참가와 비 경쟁적 행사, 예를 들어 출연, 광고, 시범 경기, 쇼 그리고 다른 레크리에이션 형태 또는 쇼 형태의 특성을 가진 행사에 대한 참가는 오직 각 회원국의 규정과 조건에 따른다. 그러한 회원국의 규정과 조건은 본 규칙 102조 상의 ISU 적격성 규칙의 일부분일 수 없다. 그러나, 회원국은 선수들이 그러한 비경쟁적인 행사에 출연하지 못하게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 회원국 연맹은 과거와 현재에 선수들을 지원한 것을 고려하여 그러한 비 경쟁적인 행사에 참가하여 선수들이 받는 출연료의 10%까지 공유할 수 있다.

회원국들은 소속선수들이 승인되지 않은 경기들에 참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부적격"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2. "부적격자"의 정의

부적격자가 되어 ISU 활동이나 경기에 참가할 수 없게 되는 사람은, ISU 경기 종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만 한 ISU의 비준을 받지 못한 인터내셔널 경기에 출전 또는 공적으로 활동하거나 또는 달리 본 규칙 102조를 위반함으로써, 집행위원회에서 아래 본 규칙 102조 7항에 따라 부적격성을 부과한 경우이다.

3. 적격자의 참가

여타 규칙들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아래의 4항 및 규칙 121의 3항 a) 호 참조), 선수를 포함하여 "적격"인 자들만이 ISU경기, ISU 총회, 동계올림픽대회, 동계유스올림픽대회, 인터내셔널 경기에 참가가 허용된다.

적격자는 참여하는 스케이터가 속한 회원국 연맹이 수립한 조건을 준수하여 부적격 스케이터를 포함할 수 있는 시범경기 및 쇼 (레크리에이션 및/또는 쇼 형태의 특성을 가진 다른 행사들을 포함한다)에 참가할 수 있다, 적격자는 ISU가 승인한 오픈 인터내셔널 경기에 참가할 수 있으며, 그 경기는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초청된 부적격 스케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

나아가, 적격자는 특별히 분명하게 지정된 참가자 그룹, 예를 들어 어덜트 또는 장애인 선수들에게 개방된 경기에 집행위원회로부터 각 경기 별로 사전서면으로 승인을 받아 참가할 수 있다. 회원국은 자국의 선수 또는 오피셜이 적격자로서 국제 활동에 참가를 하였지만, 이후 부적격자로 될 수 있는 행위에 관여하는 경우 그 즉시 동 내용을 ISU 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를 진다.

4. 적격성의 제한

적격자에 대한 제약이란 다음을 말한다.

a) 아이스 쇼 또는 시범경기투어의 주최측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자는 본 규칙의 다른 조항들에 의거하여 그 어떤 부적격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하여도, ISU경기, 동계올림픽대회, 동계유스올림픽대회, 또는 ISU 나 회원국이 비준한 어떤 인터내셔널 경기에서 레프리, 어시스턴트 레프리, 테크니컬 컨트롤러,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선수 스튜어드, 져지, OAC 위원 또는 스타터로 활동할 수 없으며, ISU의 집행위원회, 기술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고 ISU 총회에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할 수 없다.

b) 회원국 및 동 회원국의 제휴클럽에 소속된 유급직원과 보수를 받는 코치는 ISU 경기 또는 ISU 나 회원국이 비준한 어떤 인터내셔널 경기에서 레프리, 어시스턴트 레프리, 테크니컬 컨트롤러, 져지, OAC 위원, 스타터 또는 선수 스튜어드로 활동할 수 없으며, ISU의 집행위원회, 기술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의 선출직 위원이 될 수 없다. 단, 정관 파트 A., 절차규정의 제30조 13항에 의거하여, ISU 총회에 참석할 수는 있으나 투표권은 갖지 못한다. 그러나, 본 b)호에 해당하는 자는 ISU가 비준한 경기들에서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또는 데이터/리플레이 오퍼레이터로는 활동할 수 있다.
혼선을 피하기 위해 본 규칙에서 말하는 "유급직원"이란 고용관계상의 법적 성격을 불문하고 회원국 연맹(또는 제휴클럽)을 위해 주당 평균으로 25시간을 초과하여 유급 근무를 하는 자로 정의된다.

c) 규칙 102 의 2항에 정의되어 있는 경기들에 1998년 7월 1일 이후 오피셜로 참가를 한 적이 있는 자는 기술위원회의 임명직 위원 또는 ISU 세미나나 강습회의 리더로 활동할 수 없다.

d) 부적격 스케이터라도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또는 데이터/리플레이 오퍼레이터로는 활동할 수 있다.

5. 지불

회원국 또는 ISU(해당이 되는 자)가 지급하는 지불이란, 선수, 레프리, 어시스턴트 레프리, 테크니컬 컨트롤러,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져지, 데이터/리플레이 오퍼레이터들, 스타터 또는 선수 스튜어드들이 규칙 107에 열기된 모든 경기들에 참가함으로써, 또는 ISU 집행위원회 의원, 기술위원회와 징계위원회 위원들 및 고문들과 기타 ISU 소속 직원들이 인터내셔널 경기들 및 기타 ISU 활동들을 준비하거나 또는 참가를 한 결과로써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지불이 이루어진 경우, 그 지불금액을 2달 이내에 서면으로 ISU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상표

a) ISU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 ISU경기들 및 ISU의 관할 하에 조직되는 기타 모든 피겨스케이팅 경기들에 있어, 선수, 팀 오피셜, 코치 및 기타 서비스인력들이 착용하는 의상에는, 자신의 이름, 소속 회원국연맹의 이름 및/또는 로고, 및/또는 소속 회원국 국가의 공식 약어 및/또는 소속 회원국 국가의 공식 국가 명칭 등이 들어갈 수 있으며, 단 글자의 최대높이는 15cm 이하여야 한다. 또한, 동 의상에는, 광고문구, 상표, 로고 또는 기타 식별력이 있는 표시(이것들을 이하 "마킹"이라고 칭한다)를 최대 4개까지 들어갈 수 있으나, 단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하며, 각 마킹 당 크기가 최대 60cm^2 이내여야 하고, 담배나 술 광고가 아니어야 한다. 이러한 의상들은 "키스-앤드-크라이" 존, TV 인터뷰 존을 포함하여 빙상면이 아닌 장소에서, 또는 본 경기 전 공식 웜-업 중에, 또는 연습세션 중에 착용이 가능하다. 의상 공급업체를 나타내는 마킹은 하나에 한해, 그리고 그 크기가 최대 30cm^2 이하에 한해 표식을 넣을 수 있다. 부츠와 블레이드에는 그 어떤 "마킹"도 허용되지 않으며, 단 부츠 힐의 경우 10cm^2 이하의 크기로 부츠제조업체의 상호가 들어갈 수 있고, 블레이드와 블레이드 보호대(가드) 각각의 경우 20cm^2 이하의 새겨진 형태로 제조업체를 나타내는 표식이 한 개 들어갈 수 있다. 본 항의 준수여부를 체크하기 위해 오피셜은 착용이 된 상태에서 마킹 사이즈들을 재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본 경기, 대회 말미에서의 시범경기 및 메달수여식 기간에는 상기에서 말한 부츠와 블레이드에서의 마킹 외에는, 그 어떤 마킹도 스케이터가 착용하는 의상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단, 스케이터 및 소속 회원국연맹의 이름, 및/또는 로고, 및/또는 회원국연맹을 나타내는 공식약어는 예외로 한다.

상기에서 언급한 장소가 아닌, 기타의 비-빙상면 장소에서는 마킹이 더 들어가든 또는 사이즈가 더 크든 상관이 없다. 단, 마킹이 추가되는 경우 각 회원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모든 ISU 선수권대회 및 ISU 의 관할 하에 조직되는 기타 모든 스피드스케이팅 또는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경기들에 있어, 동일한 국가 팀(즉, 동일한 회원국)에 소속된 모든 선수, 팀 오피셜, 코치 및 기타 서비스인력들은, 공식 연습세션을 포함하여 선수권대회 또는 기타 경기가 열리는 전 기간 동안 아이스 트랙과 경기장 공간 내에서 착용하는 유니폼은 모두 동일해야 하며, 동 유니폼은 소속 국가를 정확히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해당 경기에 선수들을 파견한 회원국이 기 수립한 디자인을 그대로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각 회원국은 자국의 팀 유니폼들(스킨 슈트, 워밍업 재킷, 지퍼 바지, 포디움 재킷 및 팀 인력들의 재킷)의 디자인 안을 미리 ISU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를 진다.

선수, 팀 오피셜, 코치 및 기타 서비스인력들이 착용하는 의상과 개인장비들에는, 각자의 이름, 소속 회원국연맹의 이름 및/또는 로고, 및/또는 소속 회원국 국가의 공식 약어 등이 들어갈 수 있다(상기 (vi)호와 동일함). 또한, 경기장과 TV 인터뷰 중 그리고 시상식에서 착용하게 될 동 의상에는, 광고문구, 상표, 로고 또는 기타 식별력이 있는 표시(이것들을 이하 "마킹"이라고 칭한다)들이 들어갈 수 있으나, 단 담배나 술 광고가 아니어야 하고, 마킹들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i) 아래의 표는 레이싱 슈트 및 워밍업 슈트 (재킷 및 지퍼 바지), 안전 장비 및 팀 유니폼 위의 모든 마킹(제조업체 상표 제외)에 대하여 허용하는 전체 합계 최대 사이즈와 마킹 당 최대 수와 사이즈를 나타낸다. 레이싱 슈트는 2 개의 피스로 구성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상체 1피스(스피드스케이팅의 모자 포함)와 하체 1피스. 모든 마킹은 품위가 있어야 한다.

마킹의 위치	표시 당 최대 규격	표시의 수	합계 최대 규격
상체 (허리 위 팔 포함, 헤드기어와 헬멧)	50 cm^2	최대 6	650 cm^2
하체 (허리 아래)	250 cm^2	최대 2	

제조업체가 스폰서의 역할도 수행하는 경우(ISU 이벤트에만 해당), 6항 b), ii)에 따른 제조업체 상표 외에, 유니폼 전체에서 최대 50 cm^2 사이즈의 제조업체 광고 마킹을 노출시킬 수 있다. 이 마킹은 상체에 표시해야 한다.

ISU 스피드스케이팅 대회의 매스 스타트와 ISU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대회에서 헬멧 측면의 두 옆면은 선수의 번호를 표시하기 위해 예약되어 있다.

ISU 대회에서 헬멧의 앞부분은 ISU에 예약되어 있다. 각 시즌마다 ISU 회원국은 일정 기간 동안 회원국 자신의 마킹을 위해 헬멧 앞부분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ISU가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시즌 중 언제든지 ISU는 스폰서가 있는 이벤트 또는 기간에 대한 앞 부분에 대한 해제를 취소할 수 있다.
완장과 헬멧 커버는 ISU의 독점적인 영역이다. 조직위원회는 완장에 표시를 하기 위해 ISU의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ii) 아래에서 기술하는 제조업체의 상표만은 스케이트/부츠, 안경, 장갑, 정강이 보호대, 헤드기어, 목 및 발목 보호대, 블레이드 가드 및 의상과 같은 기술장비 상에 허용된다. 스케이트의 경우, 부츠 2개, 블레이드 2개, 블레이드와 부츠를 연결시키는 기구 2개로 총 6개인 것으로 간주한다. 제조업체 상표는 업계 표준을 반영해야 한다.

아래 표는 허용되는 최대 사이즈 및 제조업체 상표 수를 나타낸다. 다른 마킹에 제조업체의 상표를 포함하거나 다른 마킹과 함께 제조업체의 상표를 결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항목	합계 최대 규격	표시 당 최대 규격	표시의 수
스케이트			
부츠 한 켤레	40 cm^2	20 cm^2	2 (부츠 한 짝당 1 개)
블레이드 한 켤레	40 cm^2	20 cm^2	2 (블레이드 한 짝당 1 개)
연결 구조물 한 켤레	12 cm^2	6 cm^2	2 (새겨넣기) (각 구조물당 1 개)
경기용 스피드스케이팅 레이싱 슈트			
상체 (모자 포함)	60 cm^2	30 cm^2	1
하체		30 cm^2	1
경기용 쇼트트랙 레이싱 슈트 및 워밍업 슈트			
상체	60 cm^2	30 cm^2	1
하체 또는 바지		30 cm^2	1
스포츠 및 기술 장비			
헤드기어	16 cm^2	8 cm^2	2
안경	16 cm^2	8 cm^2	2
글로브 한 켤레	16 cm^2	8 cm^2	2 (1 글로브 한 짝당 1 개)
목 보호대	20 cm^2	20 cm^2	1
발목 보호대	20 cm^2	20 cm^2	1
블레이드 가드	20 cm^2	20 cm^2	1

상표 대신, 선수 자신의 이름을 상표에 대한 동일한 사이즈 제한에 따라 모든 장비에 (프린트, 새겨 넣기, 자수,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iii) 일반적으로 최대 두 (2) 개의 제조업체 상표 (제조업체 상표당 최대 이십 (20) cm^2)가 헬멧 상에 허용된다. 암 밴드와 헬멧 상에는 어떠한 상표도 허용되지 않는다.

iv) 본 규칙을 준수함을 전제로, 자국의 대표단, 즉 선수, 팀 오피셜, 코치 및 서비스인력을 위한 의상의 디자인(단, 어떤 상업적인 이미지나 등록상표는 불허함)과 마킹은 순전히 해당 회원국의 고유권한이자 책임이다. 가능한 한, 빙상선수의 이미지 등으로 마킹 도안을 할 것을 권고한다.

v) 본 항의 준수여부를 체크하기 위해 오피셜은 착용이 된 상태에서 마킹 사이즈들을 재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vi) 스케이터의 레이싱용과 웜업 용 슈트에는 소속국가의 국가 명 또는 국가별 공식 ISU 약어(각 글자의 높이는 최소 5 cm ~ 최대 15 cm 일 것)가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스피드스케이팅의 경우 국가 명 또는 그 약어가 상의의 등 부분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에서는 국가명 약어를 양 아래 다리의 바깥쪽에 표시하여야 하며, 글자의 규격은 높이 7 cm 이상이어야 하고 글자는 무릎에서 발목 방향으로 수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7. 적격성의 상실

a) 적격성 규칙 위반의 결과는 적격성의 상실로 귀결될 수 있다. 적격성 규칙이 아닌, 다른 어떤 규칙에 의해 비자격처분 또는 자격정지처분을 받았더라도 "적격성" 지위를 상실하지는 않는다. 다만, 해당 징계규정의 내용에 따라 ISU 경기나 활동들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에 제약이 뒤따른다.

b) ISU 집행위원회는 자신의 독자적 판단으로 위반요건을 충분히 구성하였다고 여겨지는 증거들이 입수되는 경우, 적격성 지위와 관련하여 이전에 항의(protest)가 제기되었던 그렇지 않던 이를 불문하고 위반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해 적격성 규칙 위반조치를 내릴 수 있다.

c) 판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제출한 서면 그리고/또는 구두 증거에 관하여 집행위원회가 내린다.

- ISU는 관련 개인에게, 특히 그와 같은 규칙이 보호하는 합법적인 목적과 관련하여 혐의와 ISU가 적격성 규칙에 대한 위반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하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한다. 통지는 등기 우편으로 송달해야 한다.
- 관련 개인은 해당 통지에 대해 관련 개인이 확인을 한 일자로부터 일 (1) 개월 (이 기간은 합당한 이유가 있는 요청에 따라 일 (1) 개월을 연장할 수 있음) 이내에 서면을 통지에 대응할 수 있다.
- 만일 ISU가 혐의를 유지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ISU는 해당 대응에 대해 일 (1) 개월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 관련된 사람은 답변에 대해서 일 (1) 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답신을 제출할 수가 있다. 관련된 사람은 또한 구두 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 구두 청문은 집행위원회앞에서 또는 집행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행위를 하는 ISU 회장 및 사무총장이 진행한다.

집행위원회가 적격성 규칙이 보호하는 목적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유발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ISU 집행위원회는 관련 개인에 대해 통지를 전달할 때 임시의 부적격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한 모든 결정은 자체적인 신속 절차에 따라 스포츠 중재 법원이 즉각 심의할 수 있다.

d) 이 규정 102조 2항의 위반은 일정기간 또는 영구적인 부적격의 부과나 경고를 집행위원회에서 부과할 수 있다.

ISU 집행위원회는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그리고 각각의 개별 사건의 모든 관련 상황 특히, 위반자의 과실의 정도, 해당 개인의 이전의 기록 및 규칙 102, 1항에서 규정하고 그에 따라 적용하는 ISU 적격성 규칙에 관한 위반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해당하는 제재를 결정해야 한다. 제재의 결정에 있어서, 집행위원회는 또한 비준을 득하지 못한 이벤트의 특성과 목적을 감안해야 한다.

이와 같은 틀 안에서, ISU 집행위원회는 위반의 심각성에 따라, 그리고 관련 개인의 합법적인 이해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선수에 대해서

i) 명백히 ISU의 비준을 득하였을 것이나 조직한 국가의 행정적인 실수로 인해 비준을 받지 못한 이벤트에 참가한 선수의 최초의 위반에 대해서는 "과실 없음" 결과를, 또는 선수가 해당 이벤트가 비준을 받지 못한 이벤트라는 것을 알았을 합당한 이유가 있으나 (그리고 조직한 국가의 행정적인 오류가 있었다는 기미는 전혀 없으며) 해당 이벤트가 그 외에는 적격성 규칙이 보호하는 ISU의 목적을 준수한다는 것을 입증한 참가 선수의 최초의 위반에 대해서는 "경고"의 결과를 발급한다.

ii) 해당 이벤트가 비준을 받지 못한 이벤트였을 것이 분명한 경우의 비준을 받지 못한 이벤트에 처음 참가한 경우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최대 일 (1) 년의 부적격 기간을 부과한다.

iii) 해당 이벤트가 비준을 받지 못한 이벤트였을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경고 또는 비준을 받지 못한 이벤트에 대한 모든 추가 참가에 대한 최대 이 (2) 년의 부적격 기간을 부과한다.

오피셜에 대해서

i) 그렇지 않았으면 비준을 받았었을 비준을 받지 못한 이벤트에 대한 최초 참가를 포함하는 경미한 위반의 경우에는 경고를 발급한다.

ii) 해당 이벤트가 비준을 받지 못한 이벤트였을 것이 분명한 경우의 비준을 받지 못한 이벤트에 대한 최초의 참가에 대해서는 최대 일 (1) 년의 부적격 기간을 부과한다.

iii) 그렇지 않았으면 비준을 받았었을 비준을 받지 못한 이벤트에 대한 모든 추가적인 참가에 대해 최대 이 (2) 년의 부적격 기간을 부과한다.

iv) 해당 이벤트가 분명히 비준을 받지 못하였을 비준을 받지 못한 이벤트에 대한 두 번째 참가에 대해 최대 이 (2) 년의 부적격 기간을 부과한다.

v) 이벤트가 분명히 인정되지 못했을 비준을 받지 못한 이벤트에 참가에 대해 최대 15 년의 부적격 기간을 부과한다.

8. 예상되지 않은 문제

ISU의 규칙들에 달리 예견되어 있지 않는 적격성 관련 문제의 경우, 해당 문제는 관련 회원국이 ISU 적격성 규칙의 정신과 취지에 입각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규칙 103

1. 적격자로서의 자격회복

규칙 102의 조항들에 의거하여 현재 또는 과거에 "부적격자" 제재를 받은 오피셜은, 집행위원회에 의해 "적격자"로서의 자격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 이후로 ISU 선수권대회, 동계올림픽대회, 동계유스올림픽대회 또는 인터내셔널 경기에서 레프리, 어시스턴트 레프리, 테크니컬 컨트롤러, 져지, OCA 위원, 스타터 또는 선수 스튜어드로 활동할 수 없으며, 또한 집행위원회의원, 기술위원회나 징계위원회 위원 또는 ISU 총회에 참석하는 대표단 일원이 될 수 없다.

2. 적격자로의 자격회복

현재 또는 과거에 부적격 제재를 받은 자는 해당 부적격 부과기간의 절반이 지나면 자격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3. 자격회복 신청

집행위원회에 적격자로서의 자격회복신청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a) 관련 개인에 의해 또는 그와 같은 관련 개인을 대신하여 ISU 회원국에 의해 (그와 같은 요청은 부당하게 유보해서는 안 된다).

b) 제재 당 동일인에 대해 단 1회만.

c) 모든 관련 정보들을 포함하여 ISU의 공식양식을 모두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4. 자격회복 신청에 대한 결정

ISU 집행위원회가 자격회복신청 건을 승인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즉시 자격회복 또는 자율적으로 정한 일정한 유예기간을 둔 후의 조건부 자격회복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5. 국내활동에 대한 자격회복

모든 국내경기들에 대한 부적격자의 자격회복 신청 건은 해당 회원국의 요청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C. ISU 회원국의 의무

규칙 104

1. ISU 회원국

ISU 회원국이란 정관 제 6조에 의거하여 선택된 다음 중 하나를 말한다.

a) 국가별 연맹(회원국연맹) 또는

b) 특별클럽

2. 주소

각 회원국은 자신의 공식명칭, 주소 등이 최신으로 유지되도록 ISU 사무국과 통신하여야 하며, ISU의 사무총장에게는 자신의 공식명칭, 주소, 웹사이트,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및 회장과 사무총장 성명 등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공식명칭

ISU 및 ISU와의 각종 교신에 있어 회원국연맹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해당 회원국연맹의 공식명칭(국가 이름이 아님)을 사용한다.

4. 통신과 지급 안내

a) 회원국, 제휴클럽 및 이와 유사한 조직의 일원이 ISU와 통신코자 할 때에는 해당 "회원국"을 반드시 경유해야 한다.

b) 공식적인 통신들, 특히 각종 공식적인 양식(가령, 엔트리 양식, 피지명 양식 등)이 요구되는 경우와, ISU나 ISU 경기를 조직하는 회원국에 제출하는 ISU 경기 참가 신청서의 경우는, 신청 회원국의 회장이나 사무총장(또는 상임이사, 사무총장, CEO 등과 같은 동급의 자)의 서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c) ISU 지원금이체를 위한 지급 안내문의 경우엔, 해당 회원국의 회장과 사무총장 둘 다 서명이 된 것이어야 한다.

d) 회원국들과 스케이터들간의 통신은 규칙 111을 따른다.

5. 공식회지

공식적으로 출간되는 저널이나 회지가 있는 경우, 해당 회원국은 그 이름과 주소지를 ISU 사무총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ISU 회원국 명부

회원국 명부는 그 최신 자료가 ISU 웹사이트에 게재되며, 매년 10월 1일까지 ISU 통신문 형태로도 출간되어 배포된다.

7. 연회비

회원국의 연간회비는 300 스위스 프랑이다. 필요 시 집행위원회는 이 회비를 증액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8. 납부

현재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회비는 늦어도 1월 31일까지 납부되어야 한다.

9. ISU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상실

연회비나 ISU에게 지불하여야 할 기타 금원을 연체한 회원국은 해당 연도의 7월 1일을 기해 지불이 완제될 때까지 회원국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상실된다.

10. 제명

연 기준으로 7월 달에 연체사실에 대한 최고가 있었음에도 이듬 해 1월 1일까지 여전히 완제가 안된 회원국은 회원국으로서의 멤버십이 박탈될 수 있다.

11. 인터내셔널 경기에서의 규칙과 참신한 양식의 준수

a) 인터내셔널 경기를 조직하는 회원국과 조직위원회 등의 관련조직들은 해당 경기를 규약 하는 제 규정들과 규칙들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갖는다.

b) 이하에서 '참신한 양식'이라고 칭하게 될 특별 규정 및 기술 규칙에 관련한 기술적인 설격의 수정 및 신규 방법/시스템은 인터내셔널 경기 또는 오픈 인터내셔널 경기에서 시범적으로 기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집행위원회가 실행/승인할 수 있으나, ISU 선수권대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ISU 회원국의 참신한 양식을 포함하는 경기에 대한 신청은 오픈 인터내셔널 경기와 관련된 집행위원회가 발간하는 ISU 통신문 내에 약술되어 있는 절차에 따라 ISU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집행위원회가 승인한 참신한 양식의 상세 내용은 관련 경기에 대한 발표에 포함하여야 한다. 참신한 양식을 포함하는 경기를 조직하는 ISU 회원국은 경기 종료 후 두 주 이내에 관련 기술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부적격자 참여 경기

집행위원회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회원국들과 제휴클럽들은 부적격자가 참여하는 빙상경기를 조직하거나, 지원 또는 시설을 제공할 수 없다.

13. 최고 스케이터 공표

각 ISU 회원국은 ISU 회원국 선수들의 가장 중요한 성적을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정보는 최소한 전국 선수권대회의 결과와, 스피드스케이팅의 경우, ISU 회원국의 스피드 스케이터가 남자의 경우 500m, 1000m, 1500m, 3000m, 5000m 및 10000m, 여자의 경우, 500m, 1000m, 1500m, 3000m, 5000m의 표준 트랙에서 달성된 5개의 최고 기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14. 인터내셔널 스피드스케이팅경기 기획

a) 차기 시즌에서 인터내셔널 경기를 조직하고자 하는 회원국은 클래스, 장소, 일자, 트랙타입(인도어/아웃도어, 인공/천연 등), 트랙과 빙면의 사이즈 등을 명시적으로 6월 1일까지 사무국에 "통지문"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같은 대륙에서 둘 이상의 경기들이 개최되는데 그 경기일자들이 서로 겹치는 경우, ISU 사무총장은 그 사실을 즉시 해당 회원국들에게 알려 중으로써 당사자들간에 일자 재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동 당사자 회원국들은 재조정을 한 최종결과를 동년 7월 1일한 ISU에게 통지해야 한다.

사무국은 8월 1일까지 그 경기들이 어나운스 된 통지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동 통신문은 규칙 112에 따른 회원국의 어나운스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b) 인터내셔널 스피드스케이팅 경기들에 대한 해당 연도의 최종경기일정 통신문에 포함이 되지 않은 인터내셔널 경기를 조직하고자 하는 회원국은 "인터내셔널 경기" 지위를 갖는 동 경기의 개최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해 상기에 정의한 "통지문"을 ISU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c) 차기 시즌에서 국가별 선수권대회와 전국대회(매치)를 조직하고자 하는 회원국은 자국 내에서 치르고자 동 선수권대회 또는 전국대회 별로 클래스, 장소, 일자, 트랙타입 등을 명시적으로 10월 1일까지 ISU에 "통지문"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동 선수권대회 및 전국대회의 각 대회시작일로부터 4주 이전까지 통지문을 사무국에 이메일로 발송해야 한다. 동 통지문에는 규칙 112의 1항과 2항 또는 3항에 명시된 정보들이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

15. 인터내셔널 피겨스케이팅경기 기획

a) 각 ISU 회원국은 다음 시즌에 조직을 계획하고 있는 인터내셔널 경기를 3월 1일까지 사무국에 발표해야 한다. 또한 ISU 회원국들은 규칙 107의 15항에 해당하는 경기를 발표할 수 있지만, 이 경기들의 목록은 별도로 작성해야 한다. 2개 이상의 경기가 상충되는 날짜에 조직되고 있는 경우, 사무총장은 즉시 해당 조직위원회에 통지하여 서로 날짜를 조정하게 해야 한다. ISU 회원국들은 4월 1일까지 준비 사항을 ISU에 통지해야 한다.

b) 그 후 사무국은 모든 결과를 바탕으로 한 동 경기들의 최종 경기일정을 통신문의 형태로 5월 1일까지 어나운스를 하게 된다. 동 통신문은 규칙 112에 따른 어나운스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c) 해당 연도의 [ISU의 인터내셔널 피겨스케이팅 통신문]에 포함이 되지 않은 인터내셔널 경기를 조직하고자 하는 회원국은 "인터내셔널 경기" 지위를 갖는 동 경기의 개최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해 상기에 정의한 "통지문"을 ISU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16. 배제

a)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또는 제휴클럽)을 다음의 활동으로부터 배제 할 수 있다.

   i) ISU 의 승인이나 비준이 요구되는 모든 국제적인 빙상경기들, 그리고

   ii) 기타의 모든 ISU 활동들로서, 반드시 다음으로만 한정하지는 않으나 가령 총회, 세미나, 워크숍, 발전프로그램 등, 이러한 배제는 회원국(또는 제휴클럽)이 ISU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로서, 반드시 다음으로만 한정하지는 않으나 가령 동 회원국(또는 제휴클럽)의 대표자나 임원의 부적절한 처신에 의한 위반 등이 있었다는 합리적인 증거에 기반한 것이어야 한다.

b) ISU 징계위원회가 어떤 선수 및/또는 회원국 임원에 대해 ISU 활동을 금지시키는 결정을 하거나 또는 그러한 선수 또는 임원이 부적격자임을 천명한 사실이 ISU 통신문 형태로 어나운스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빙상경기의 엔트리로 참가 또는 협조를 하거나, 자신 소속의 동 선수 또는 임원을 빙상경기나 시범경기(회원국 자신이 조직하였든 그렇지 않든 이를 불문함)에 출전하는 것을 허용한 회원국은, 이후의 승인된 모든 ISU 경기들로부터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일시적인 참가금지 또는 심지어 영구적 참가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여야 한다.

c) 본 16항(배제)에 명시된 제재는 ISU 법령에 의거하여 발동 가능한 기타 다른 모든 제재들에 부가적인 것으로서 별도의 제재를 배척하는 이유를 구성할 수 없다.

d) 단, 제재대상인 회원국 또는 동 회원국의 제휴클럽에게는 방어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 혐의를 두고 있는 위반의 성격, 사건과 관련한 모든 사실관계 및 기타 모든 증거들의 내용이 고지된다. 이러한 정보들을 고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접수일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자신의 항변의사를 사무국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 본 호에서의 권리는 박탈된다.

e) 제재대상인 회원국 또는 동 회원국의 제휴클럽에게는 제재결정과 그 사유에 대한 내용이 서면으로 전달된다. 이 경우, 집행위원회는 결정사유를 포함한 제재결정서 또는 그 요약문을 ISU 통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f) 회원국은 멤버십 유지를 위하여 최소한의 표준적인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는 명제에 기반하여 본 규칙 104의 16항 조항은 정관 제 6조, 제 7조 및 제 17조에 의거하여 집행위원회가 결정하는 그 어떤 조치나 행동을 그 어떤 식으로든 제약, 제한 또는 규약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17. 시범경기

a) ISU 경기, 동계올림픽대회, 동계유스올림픽대회의 프로그램이 폐회 시 시범경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동 시범경기 또한 본 경기의 일부인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기들에 선수를 파견하는 회원국은 동 시범경기에 자국의 선수들을 참가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만일 선수가 이러한 시범경기 참가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해당 회원국은 동 시범경기가 있던 날로부터 기산으로 60일의 기간 동안 그 어떤 경기에도 동 의무 미준수 선수의 경기참가를 불허해야 한다. 부상이나 병으로 불참하여야 할 경우엔, ISU 의료자문, 또는 그러한 기능을 하도록 임명된 다른 의사가 동 의료자문과의 협의 하에 발급된 진단서에 의해 증빙되어야 한다.

b) ISU 경기, 동계올림픽대회 또는 동계유스올림픽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는 시범경기 외에도 시범경기를 위한 사전연습에도 의무적으로 참여를 해야 한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 시범경기 출연으로 받게 되는 보수의 50%를 삭감한 후 지급한다

규칙 105

TV 와 기타 매체 전시 준비

1. ISU의 권리

a) ISU 시리즈(가령, ISU 월드컵, ISU 피겨스케이팅 그랑프리 등)의 개별경기를 조직하는 회원국이 자국의 영토에 한해 갖는 TV와 기타 매체의 전시권인 경우를 제외하고, ISU 경기들("ISU 경기들"에 대한 식별은 규칙 100의 3항을 참조할 것)의 TV 및 기타 매체들에서의 "전시"와 관련한 모든 준비는 오로지 ISU에 의하여 관련한 TV 와 기타 매체 운영회사들과 이루어져야 한다.

b) 상기에서 ISU가 갖는 TV 및 기타 매체 전시권이란 존재 가능한 모든 유형의 중계 및 전시관련 권리들을 포함하는 바, 반드시 다음으로만 한정하지는 않으나 가령 ISU 경기의 생중계와 녹화중계, ISU 경기들과 기타 활동들의 그 자체는 물론 참가자들에 대한 하이라이트 영상 등을 포함하며, 반드시 다음으로만 한정하지는 않으나 가령 비디오카세트, DVD, 콤팩트 디스크, 이동기기, 인터넷, 전화, 컴퓨터 등 현재는 물론 앞으로 실현 가능한 모든 유형의 매체(TV 및 기타 매체를 포함함)들과 송출방법을 불문한다. 이러한 TV 및 기타 매체 전시권은 ISU 단독으로, 또는 ISU 가 TV 나 기타 매체 운영회사들에게 라이선스를 주는 방법으로 시현되며, 여기서 무료, 페이-투-뷰(pay-to-view), 인터랙티브, 주문형 서비스, 퍼블릭 및/또는 프라이빗 시청 등을 불문하고, 해설, 음악 또는 기타 사운드가 함께 제공되는 등 이를 불문하며, 또한 ISU 경기의 전체영상이나 그 하이라이트 영상의 송출방법이 현재는 물론 앞으로 실현 가능한 것으로서, 반드시 다음으로만 한정하지는 않으나 가령 위성, 지상파, 인터넷, 모바일 텔레포니 네트워크 또는 케이블, DSL 리셉터, 전화선, 또는 이들의 복합 등과 같은 기타 물리적 전송선 등 이를 불문하고, 송출표준이 현재 적용되는 것을 따르든 차후 적용될 표준을 따르든 이를 불문한다.

c) ISU가 갖고 있는 TV와 기타 매체 전시권은 ISU 경기/활동들의 프로모션을 위해 그리고 피겨스케이팅과 스피드스케이팅의 전반적인 긍정적 이미지와 저변확대를 위해 주요 ISU 경기장면들을 제 3자에게 제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부수적 권리들을 포함한다.

2. ISU 회원국 및 조직위원회의 책임

ISU 경기의 회원국과 조직위원회는 경기가 열리는 아이스링크 내에 그 어떤 TV 및 기타 매체의 촬영 카메라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단, ISU가 승인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 경기를 관람하는 관객들의 시야 내에 그 어떤 광고물도 없도록 해야 할 책임을 갖는다.

3. 집행위원회의 위임권리

ISU 집행위원회는 어떤 컨설턴트나 미디어 업체 또는 경기를 조직하는 회원국에게 자신을 대표하여 TV 중계권료나 기타 매체의 전시권료 협상을 위한 권한의 전부나 일부를 위임할 수 있으며, 단 이 모든 상업적 계약의 궁극적인 최종 승인권은 여전히 ISU 에게 있다.

4. 사후 권한

ISU 선수권대회나 기타 경기가 이미 해당 경기/대회를 조직하는 회원국에게 배정이 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TV 및 기타 매체들과의 전시권 협의는 해당 회원국과 협력하여 진행하되, 그러나, 모든 경우들에 있어 모든 협의의 최종 승인권은 여전히 ISU 에게 있다.

5. 회원국의 권리

인터내셔널 경기의 피겨스케이팅 종목과 (본 규칙에서 상기에 명시된 "ISU 경기들"을 제외한) 기타 경기들의 경우, TV 또는 기타 매체와의 전시권은 해당 경기를 조직하는 회원국이 갖는다. 구체적으로, 동 회원국이 판매할 수 있는 전시권들로는 다음과 같다.

a) 자국의 영토에 한정한 중계권과 기타 매체와의 전시권; 단, ISU 이익과의 충돌을 피하는 차원에서, 해당 국제경기에 대한 독점적 TV 중계권의 계약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다.

b) 특정한 다른 국가(들)에서의 재방송권을 TV 또는 기타 매체의 운영회사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단 ISU 집행위원회로부터 ISU 또는 동 다른 회원국(들)의 이익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사전 서면승인서를 득한 경우에 한한다.

6. 권리의 배타성

본 규칙(규칙 105)에서 허용되는 TV와 기타 매체와의 전시권은 본 규칙에 명시된 경기들에 한한다. ISU와 그 회원국들의 관할을 받는 기타 경기들과 시범경기들의 경우, TV 비디오, 필름, 미디어 등 그 어떤 매체와도 그 전시권은 엄격히 불허된다.

규칙 106

1. ISU 경기들에 대한 재정보조금

ISU 경기들에 있어 회원국들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수상자들에 대한 상금 지원금을 포함함)은 집행위원회가 수립한 예산안에 근거하여 총회의 승인으로 이루어지며, 집행위원회는 모든 회원국들의 이익이 존중되고 지켜지는 방향으로 기 수립된 기준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재정 보조금 삭감

만일 대회/경기를 조직하는 회원국이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동 회원국에 대한 재정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D. 경기

규칙 107

ISU 선수권대회와 인터내셔널 경기의 개념

1. ISU 선수권대회

a) 세계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
b) 세계 주니어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
c) 유럽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
d) 4대륙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
e) 세계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
f) 세계 주니어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
g) 유럽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
h) 4대륙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
i) 세계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
j) 세계 주니어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
k) 유럽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
l) 4대륙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
m) 세계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 선수권대회
n) 세계 주니어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 선수권대회

ISU 선수권대회들은 모두 "ISU 경기들"(이 개념은 규칙 100의 3항을 참조할 것)에 해당한다.

2. 동계올림픽대회 (OWG) 및 동계유스올림픽대회(YOG)

OWG와 YOG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독점적인 자산이다. IOC는 올림픽 헌장에 의거하여 그리고 ISU 집행위원회와 협의하여 OWG와 YOG의 프로그램 및 관련 조건(IOC 자격 제도 원칙, 오피셜 카테고리, 비용에 대한 책임 등)을 수립한다. ISU는 IOC의 후원 하에 OWG와 YOG에서 스피드스케이팅,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피겨스케이팅(싱글 및 페어 스케이팅/아이스댄스) 및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 (단,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을 OWG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려면 IOC의 승인을 얻어야 함) 등과 같은 ISU 스포츠 종목들에 대해 기술적인 통제와 관장을 책임진다. OWG와 YOG의 빙상경기들은 ISU 인터내셔널 경기(규칙 126 참조)로서 ISU가 관장한다.

3. 인터내셔널 경기

a) 제4항에서 12항에 명시된 인터내셔널 경기는 다음과 같은 경기이다.

i) 경기를 조직하는 회원국은 경기에 참가하는 타 회원국을 최소 1개국 이상 초빙해야 한다.

ii) 선수들의 엔트리(명단)는 각 해당 회원국이 정한다.

iii) 최소 2개국 이상의 회원국들로부터 선수들이 출전해야 한다.

iv) ISU 규칙들을 따라 경기진행이 되어야 한다.

b) 시리즈로 조직되는 모든 인터내셔널 경기들에 있어 ISU 계약들과의 충돌을 피하는 차원에서 TV 중계권과 기타 광고계약들은 ISU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c) 두 개 이상의 회원국 공동 개최의 국내 선수권대회는 인터내셔널 대회가 아닌 국내 대회로 간주된다, 다만, 그 대회는 공동 국내 선수권대회로 어나운스 되고, 각 참여 회원국에서 개별적으로 기록이 공지된다. 그러한 공동 국내 선수권대회를 제외하고, 외국 ISU 회원국 출신 선수가 최소한 1명 이상 참여하는 ISU 회원국이 (공동) 조직하는 모든 경기는 인터내셔널 대회로 간주되며, 본 4항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규칙 110에 따라 발표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아래의 4항에서 13항까지에 따른 경기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4. ISU 월드컵

a) 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주니어/시니어)

b) ISU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시리즈에 해당하는 월드컵들은 모두 "ISU 경기들"(이 개념은 규칙 100의 3항을 참조할 것)에 해당한다.

5. ISU 피겨스케이팅 그랑프리와 파이널

a) ISU 피겨스케이팅 그랑프리(시니어 및 주니어)는 인터내셔널 경기의 시리즈로서 시니어 인터내셔널 경기와 주니어 인터내셔널 경기가 시리즈로 구성된다 해서 ISU 시리즈경기라고도 한다.

b) 이러한 경기의 참가, 스케이팅 요구사항, 포인트 제도, 상금, 등에 관한 특별 규정은 ISU 그랑프리 조정 그룹이 피겨스케이팅 부회장과 협의하여 제정해야 하며,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해당 시즌에 첫 번째로 예정되어 있는 인터내셔널 경기가 개최되기 최소 3개월 전에 ISU 회원국들에게 배포되어야 한다. ISU 그랑프리 조정 그룹은 집행위원회가 임명한다.

c) 시리즈로(주니어와 시니어)서의 각 그랑프리 시리즈와 파이널은 모두 "ISU 경기들"(이 개념은 규칙 100의 3항을 참조할 것)에 해당한다.

6. 피겨스케이팅의 챌린지 시리즈

피겨스케이팅의 챌리지 시리즈는 많은 선수들이 ISU 선수권대회 출전 자격을 획득하고 준비하기 위한 기회로서의 인터내셔널 피겨스케이팅 (시니어) 경기의 시리즈이다. 이 시리즈는 재무적으로 집행위원회가 연차적으로 결정하여 ISU 통신문을 통해 공표하는 조건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7.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의 챌린저 시리즈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의 챌린저 시리즈는 많은 팀들이 ISU 선수권대회 예선 및 본선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련의 국제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 대회(시니어 및 주니어)이다. 이 시리즈는

집행위원회가 결정하여 재정적으로 지원하며, 그 조건은 매년 ISU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발표하는 조건에 따른다.

8. ISU 월드 팀 트로피 피겨스케이팅

ISU 월드 팀 트로피 피겨스케이팅은 회원국들의 국가 팀별 대항전으로서 ISU 경기에 해당한다. ISU 월드 팀 트로피의 경기일자, 개최장소, 참가 팀 수, 자격제한/참가/엔트리에 대한 기준, 기술적 포맷, 출발순서, 결과결정, 오피셜 참가 및 기타 기술적 관련내용과 경기운영 내용은 ISU 집행위원회가 결정하여 발표 형식으로 배포된다.

9. 인터내셔널 시니어 경기

a) ISU 의 모든 회원국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b) 단, 일부 국가들에게 제한을 두거나 어떤 다른 식의 제약이 가해질 수 있다.

10. 인터내셔널 주니어 경기

a) ISU 의 모든 회원국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b) 일부 ISU 회원국들에게 제한되거나 어떤 다른 식의 제약이 가해질 수 있다.

11. 인터내셔널 노비스 경기

a) ISU 의 모든 회원국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b) 일부 ISU 회원국들에게 제한되거나 어떤 다른 식의 제약이 가해질 수 있다.

c) 소관 기술위원회는 해당 스포츠 기술이사와 협의하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ISU 통신문 형태로 배포한다.

12. 인터내셔널 마스터즈/어덜트 경기와 기타 스케이터 특별 그룹에 의한 경기

마스터즈(스피드스케이팅부문)경기와 어덜트(피겨스케이팅부문) 경기와 기타 구체적으로 정의된 스케이터 특별그룹을 위한 경기가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ISU와의 협력 하에 치러질 수 있다.

13. "메달 위너" 인터내셔널 시니어 경기

"메달 위너(Medal Winner)" 인터내셔널 시니어 경기는 "적격성"을 갖춘 시니어 스케이터들만을 대상으로 하며, 회원국의 협력 하에 ISU가 조직하거나 또는 승인한 피겨스케이팅 및 스피드스케이팅 경기를 말한다.

"메달 위너" 인터내셔널 시니어 경기는 ISU 규칙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기술적 요구조건들과 일반적인 포맷은 다른 인터내셔널 경기나 오픈 인터내셔널 경기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기술적 요구조건들은 소관 ISU 기술위원회가 해당(피겨스케이팅 및 스피드스케이팅) 각각의 스포츠 기술이사(들)과 협의하여 정한 후 소관부문의 직속 부회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다음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a) 스케이터(들)은 정상적인 멤버십을 갖고 있는 회원국에 소속된 자들이어야 한다.

b) 스케이터(들)은 소속 회원국이 개최한 경기에 출전했던 자들이어야 한다.

c) 스케이터(들)은 유럽, 4대륙 또는 세계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에서, 또는 세계 올라운드, 단거리 또는 세계 스프린트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에서, 또는 세계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에서, 또는 동계올림픽대회에서 메달(금, 은 또는 동메달) 수여자이어야 한다.

14. 오픈 인터내셔널 경기

a) 오픈 인터내셔널 경기는 제삼자가 조직하며/또는 제삼자와 ISU 회원국이 공동 조직하며/또는 해당 경기 내에서 적격자와 (규칙 102, 2항에서 정의하는) 부적격자가 함께 경기를 하고/또는 참신한 양식을 포함하는 경기이다.

b) 해당 이벤트는 ISU의 비준을 득해야 하며, 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i) 적격 선수의 엔트리는 오로지 해당하는 ISU 회원국의 적격 참가 선수의 통제에 따라 이루어지거나, 또는 ISU 회원국가가 아니거나 해당 분과에 ISU 회원국 자격이 없는 국가에서는, 해당하는 ISU 회원국의 승인 또는 ISU가 부당하게 유보 또는 거부되는 일 없이 ISU의 통제 하에 이루어진다.

   ii) 경기는 ISU 집행위원회가 승인하는 참신성에 따르는 IS 규정에 따라 치뤄져야 하며 따라서 다른 경우였으면 적용 대상이 될 USU 규칙의 적용이 면제된다.

15. 클럽간 경기

a) 클럽간 경기란 ISU 회원국에 소속되어 있는 클럽이 조직하되 ISU 회원국 자체가 조직하지 않는 경기이면서 해당 경기 내에서 최소한 하나 이상의 다른 ISU 회원국에 소속된 클럽의 선수가 참가하는 경기를 의미한다.

b) 클럽간 경기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관련 ISU 회원국의 해당하는 규칙 및 조건이 적용된다.

   i) 클럽간 경기는 경기를 조직하는 클럽이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치뤄져야 하며 그 중요성은 클럽 차원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클럽간 경기의 결과는 ISU 대회, 동계 올림픽 및 동계 유스 올림픽 경기 참가를 위한 자격 기준 및/또는 최소 총 요소 점수, 세계 입상/랭킹 포인트 및/또는 자격 기록을 획득하는데 사용하지 않는다.

   ii) 클럽간 경기는 인터내셔널 경기 (예: 마스터스, 어덜트, 클럽, 칙스 등)에서 경기를 할 수 없는 선수들이 조직할 수도 있다.

   iii) 하지만, 만일 어떤 클럽간 경기에 ISU 일반 규정의 규칙 108 및 해당하는 ISU 특별 규정 및 기술 규칙에서 정의하는 시니어, 주니어 그리고/또는 노비스를 위한 경기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 경기는 모든 해당하는 ISU 규칙에 따라 치루어야 한다. 조직하는 클럽이 속한 ISU 회원국은 조직하는 클럽의 준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iv) 조직하는 클럽은 반드시 클럽간 경기가 ISU 이벤트 및 인터내셔널 경기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포함하되 그에 국한하지 않는다.

- 어나운스먼트는 반드시 명백하게 해당 클럽이 속한 ISU 회원국이 아닌 해당 클럽을 이벤트의 조직자로 지정해야 한다.
- AN 경기 자료, 특히 엔트리 명단, 출발 순서 및 결과에서는 참가 선수의 클럽을 기술해야만 하며, ISU 회원국의 약어는 클럽의 명칭 뒤의 괄호 안에 기술할 수 있다.

c) TV 방영의 경우 규칙 105의 제 6항에 명시된 요구조건들이 적용된다.

16. 경기 명칭에 대한 제한

사무총장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모든 인터내셔널 경기들의 명칭에 "ISU", "선수권대회", "세계(월드)", "유럽", "대륙" 등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17. 국내경기.

국내경기들은 소관 회원국이 수립한 규칙들의 적용 대상이다.

18. ISU가 비준한 경기.

ISU가 공표한 경기들만이 ISU가 비준한 경기들인 것으로 간주된다. ISU가 어떤 이벤트의 비준 신청을 거부할 경우, ISU는 해당 스케이팅 커뮤니티에 통보를 하기 위한 통지를 발급해야 한다.

ISU는 주제에 대한 불확실성 또는 혼동에 대응하고 만일 적절할 경우에는 ISU 적격성 규칙이 보호하는 목적에 관련하여 제안된 비준을 받지 못한 이벤트에 대해 ISU가 가지고 있는 우려에 대처하기 위하여 특정한 이벤트가 비준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스케이팅 커뮤니티에 통보할 권리를 유보한다.

규칙 108

1. 나이별 및 선수구분과 경기에서의 나이계산 방법

a) 시니어라는 어휘는 이 규칙과 ISU 정관에서 최소 참가 나이 요건이 15세인 특정 경기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며, 이 경우 해당 경기 바로 직전인 7월 1일 이전의 스케이터의 출생일에 의해 결정된다.

b) ISU 경기 명칭에는 그 어디에도 "시니어(Senior)"라는 어휘를 사용하지 않는다.
ISU 경기들의 공식 명칭은 ISU가 통신문, 관련각서 등의 형태로 배포하는 ISU 의 지침이나 또는 ISU의 공식 상표명 및 그 가이드에 표시되어 있는 명칭들을 말한다.
경기를 조직하는 위원회나 단체가 본 규칙에 명시된 나이산정방법에 따라 대회에 나이제한을 두고자 할 때 통지문이나 경기 프로그램의 본문 중에 "시니어 (Senior)"라는 어휘를 사용할 수 있다.

2. 스피드스케이팅과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의 나이 제한

a) i) 2022/23 시즌의 경우, 인터내셔널 시니어 대회 및 ISU 시니어 선수권대회는 대회 전 7월 1일 이전에 적어도 15세에 도달한 스케이터만 출전할 수 있다.
ii) 2023/24 시즌의 경우, 인터내셔널 시니어 대회와 ISU 시니어 선수권대회는 대회 전 7월 1일 이전에 적어도 16세에 도달한 스케이터만 출전할 수 있다.
iii) 2024/25 시즌부터, 인터내셔널 시니어 대회, ISU 시니어 선수권대회 및 동계 올림픽은 대회 전 7월 1일 이전에 적어도 17세에 도달한 스케이터만 출전할 수 있다.

b) 주니어란 대회 전 7월 1일 이전에 나이가 19세에 도달하지 않은 스케이터를 말한다.

c) 인터내셔널 경기의 경우 주니어 나이를 A/B/C/D의 4개 군으로 세분하는 바,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군	대회전 7월 1일 이전의 나이
A	17 ~ 18세
B	15 ~ 16세
C	13 ~ 14세
D	12세 이하.

d) 세계 주니어 선수권대회의 경우, 그 선수권대회 전 7월 1일 이전에 나이가 15세에 도달한 주니어 스케이터들만 참가가 가능하다.

3. 싱글과 페어 스케이팅 / 아이스댄스의 나이제한

a) i) 2022/23 시즌의 경우, 인터내셔널 "시니어" 선수권대회 및 ISU 시니어 선수권대회 전의 7월 1일 이전에 나이가 적어도 15세 도달한 선수들만 참가가 가능하다.

ii) 2023/24 시즌의 경우, 인터내셔널 시니어 대회와 ISU 시니어 선수권대회에서는 대회 전 7월 1일 이전에 적어도 16세에 도달한 스케이터만 출전할 수 있다.

iii) 2024/25 시즌부터, 인터내셔널 시니어 대회, ISU 시니어 선수권대회 및 동계 올림픽에서 대회 전 7월 1일 이전에 적어도 17세에 도달한 스케이터만 출전할 수 있다.

b) 인터내셔널 주니어 선수권대회와 ISU 주니어 선수권대회에 있어, 주니어란 경기 전의 7월 1일 이전에 나이가 다음 조건들을 만족하는 스케이터를 말한다:

i) 최소 13세에 도달한 선수

ii) 싱글 경기의 경우, 여자와 남자 모두 19세의 나이에 도달하지 않은 선수; 그리고

iii) 페어 스케이팅 및 아이스댄스 경기의 경우, 여자는 19세, 남자는 21세의 나이에 도달하지 않은 선수.

c) 인터내셔널 노비스 경기에 있어, 노비스(Novice)란 경기 전의 7월 1일 이전에 나이가 다음 조건들을 만족하는 스케이터를 말한다

i) 초급 노비스- 13세의 나이에 도달하지 않은 선수.

ii) 중급 노비스 - 15세의 나이에 도달하지 않은 선수.

iii) 고급 노비스- 10세의 나이에 도달하고, 소녀(싱글/페어 스케이/ 아이스 댄스)와 소년(싱글)의 경우 15세, 그리고 소년(페어 스케이팅/아이스 댄스)의 경우, 17세의 나이에 도달하지 않은 선수.

4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의 나이제한

a) i) 2022/23 시즌의 경우, 인터내셔널 시니어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 경기와 ISU 시니어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 선수권대회의 경우, 시니어 팀은 대회 전의 7월 1일 이전에 나이가 적어도 15세에 도달한 선수들로만 구성되어야 한다.

ii) 2023/24 시즌의 경우, 인터내셔널 시니어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 대회 및 ISU 시니어 세계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 선수권대회에서 시니어 팀은 모두 선수권대회 또는 대회 전 7월 1일 이전에 적어도 16세에 도달한 스케이터로 구성한다.

iii) 2024/25 시즌부터, 인터내셔널 시니어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 대회 및 ISU 시니어 세계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 챔피언십에서 시니어 팀은 모두 챔피언십 또는 대회 전 7월 1일 이전에 적어도 17세에 도달한 스케이터로 구성한다.

b) 인터내셔널 주니어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 경기와 세계 주니어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 선수권대회의 경우, 주니어 팀은 모두 대회 전의 7월 1일 전에 나이가 적어도 13세에 도달하고, 19세에 도달하지 않은 선수들로만 구성되어야 한다.

c) 인터내셔널 노비스 경기에 있어, 노비스 팀은 경기예정일을 기준으로 바로 직전의 6월 30일까지 산정한 나이가 다음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선수들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i) 적어도 10세에 도달한 선수

   ii) 아직 15세에 도달하지 않은 선수

5. 페널티

각 회원국은 시니어 및 주니어 인터내셔널 경기, ISU 선수권대회 및 동계올림픽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본 규칙에 명시한 요구조건들을 충족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회원국은 다음 시즌에 열리는 "시니어"와 주니어(해당이 되는 것) ISU 선수권대회와 인터내셔널 경기들에 선수들을 파견할 수 있는 권리가 상실될 수 있다.

규칙 109

ISU 선수권대회, ISU 경기 그리고 인터내셔널 경기에 참가

1. ISU 회원국을 통한 참가

규칙 100의 3항 그리고 규칙 107의 1, 3, 4, 5, 6, 7, 8, 9, 10, 11, 12 및 13항에 나열된 ISU 선수권대회, ISU 경기 및 인터내셔널 경기는 ISU 회원국의 구성원인 선수만 참가할 수 있다. 참가는 해당 ISU 회원국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유스올림픽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규칙 126 그리고 올림픽 헌장과 내규 조항들이 각각 적용된다.

2. 시민권/거주/이동허가

a) 스케이터는 회원국의 시민권자이거나 회원국에 적어도 일년 이상 거주한 자의 경우에만 대회 참가가 가능하다.

b) 페어 스케이팅과 아이스댄스는 파트너 한 명만 제 2항 a)의 해당 요구사항을 만족하면 된다. 하지만 다른 파트너는 반드시 회원국의 시민권자이거나 거주자(resident) 이어야 한다.

c) ISU 선수권대회, ISU 경기 그리고/혹은 인터내셔널 경기에 어느 회원국 소속으로 참가를 하였고 미래에는 다른 회원국 소속으로 참가하려는 스케이터는 직전 회원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 허락은 불합리하게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이러한 선수들은 다른 회원국 소속으로 ISU 선수권대회, ISU 이벤트 그리고/혹은 국제대회에 참가한지 12개월 경과하여야만 ISU 선수권대회, ISU 경기 그리고/혹은 인터내셔널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

d)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 팀은 25% 이내의 스케이터까지 (16명 팀 중 4명의 스케이터 그리고 12명 팀 중 3명 의 스케이터) 그 팀이 속한 회원국 소속이 아닌 다른 회원국 소속이 허용된다, 단, 이들은 각각 자신이 속한 회원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스케이터들에게는 2 a) 조항에 명시된 시민권/거주 요건 및 2. c) 조항에 명시된 대기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체 선수는 퍼센트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다.

3. 이적 증명

자신이 시민권을 가지지 않은 국가에 있는 연맹의 소속으로 대회에 참가하는 스케이터(상기된 2. d)에 따라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 팀의 25% 이하 쿼터에 해당하는 스케이터는 예외이다), 그리고 과거에 ISU 선수권대회, ISU 경기 그리고/혹은 인터내셔널 경기에 참가했지만 미래에는 다른 회원국 소속으로 참가하려는 스케이터는 자신이 그 소속으로 참가하려는 회원국을 통해 ISU 사무국으로부터 이적 증명(CC)를 획득한 경우에 한하여 대회 참가가 가능하다.

4. 시즌 제한

같은 시즌 동안(7월 1일 - 6월 30일) 스케이터는 모든 ISU 선수권대회, ISU 경기 그리고 인터내셔널 경기에 하나의 회원국 소속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해당 사항은 ISU 스포츠 다수 종목에 참가하는 선수들에게도 적용된다.

이 조항은 상기 2. d)항의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 팀의 25% 이하 쿼터에 따른 선수들에게도 적용된다.

5. 요건의 면제

만약 특별한 상황이 정당화해 준다면, 집행위원회는 상기된 2. a) 와 c)에 따른 시민권/거주 요건 또는 회원국의 허가요건 및/또는 대기기간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예외적인 경우 집행위원회 스스로 선수를 특정한 대회에 참가시킬 수 있다. ISU에 의해 특별 참가된 해당 선수는 그가 시민권을 가지거나 또는 거주하는 국가의 쿼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6. 이적증명에 대한 거절권리

비록 형식과 요건이 이 규칙에 부합하더라도, 집행위원회가 해당 신청서가 스포츠 정신에 위배된다고 인정한다면(예. 회원국이 몇몇 외국인 선수들을"수입"(import)" 하려고 하는 경우, 특히 해당 외국인 선수들이 그 회원국의 새로운 국가대표팀 또는 팀의 상당한 부분을 형성하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스케이터에 대한 회원국이 제출한 이적증명 신청서를 거절할 수 있다.

7. 절차의 통지

모든 관련 절차들은 ISU 통신문에 발표된다.

규칙 110

인터내셔널 경기의 발표일자

인터내셔널 경기(선수권대회의 경우, 규칙 129를 참조할 것)의 개최에 대한 공식 공표는 첫 번째 경기가 열리는 날을 기준으로 스피드스케이팅은 4주 전까지, 피겨스케이팅은 2달 전까지 영어로 ISU 웹사이트에 게재되어야 하는 바, 공표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대회를 조직하는 회원국에게 있다. 즉, 동 회원국은 공표를 하고자 하는 예정일자로부터 최소 1주일 이전까지 공표내용을 담은 파일이 ISU 사무국에 도착되도록 함으로써 시의 적절하게 ISU 웹사이트에 게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규칙 111

ISU 회원국과 스케이터간의 직접통신 금지

회원국(또는 제휴클럽)은 경기참가와 관련하여(단, 경기장 도착과 출발시간에 대한 문의는 제외) 타 회원국 소속의 선수에게 직접 통신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

규칙 112

인터내셔널 경기의 발표내용

1. 일반 항목

인터내셔널 경기의 개최에 대한 공표에는 다음의 일반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a) 경기가 개최되는 장소에 대한 내용

b) 링크의 타입(천연/인공 또는 노천/실내 등)에 대한 내용

c) 경기일정과 시작시각

d) 엔트리(명단) 마감기한.

e) 수상의 범위와 내용

2. 스피드스케이팅의 보충항목

상기의 일반항목들 외에도, 인터내셔널 경기의 스피드스케이팅의 경우 아래의 보충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a) 규칙 200에 따른 레이스의 타입에 대한 내용

b) 트랙 및 패딩 시스템에 대한 내용으로서, 규칙 203, 227 및 228의 요건을 따라야 하며, 아니면 규칙 204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3.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의 보충항목

상기의 일반항목들 외에도, 인터내셔널 경기의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의 경우 아래의 보충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a) 트랙에 대한 내용으로서, 규칙 280의 요건을 따라야 하며, 또한 빙면 및 얼음을 둘러싸는 보호매트(barrier padding)의 타입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b) 스케이터의 최대 수

c) 레이스의 타입에 대한 내용으로서, 규칙 294와 295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d) 추첨 절차(drawing procedure)

e) 결승까지의 진행과정

f) 최대점수

4. 싱글 및 페어스케이팅/아이스댄스 및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의 보충항목

상기의 일반항목들 외에도, 싱글/페어 스케이팅, 아이스댄스 및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의 경우 아래의 보충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a) 빙면의 크기(폭과 길이), 그리고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의 경우 져지 플랫폼의 위치와 빙면의 입구/출구가 표시된 링크도면

b) 패턴댄스, 쇼트 프로그램, 리듬댄스, 프리스케이팅, 프리댄스의 기술적인 세부사항(기간 및 특별 조건 포함).

c) 음악 재생 수단 그리고 음악 및 백업 음악의 제출 형식, 방법, 일정 (규칙 343 및 823 참조). 허용되는 음악 형식은 CD, MP3, AAC-포맷, WAV 및 WMA이다.

d) 최초의 져지 미팅과 라운드테이블 토의의 개최일과 개최시각

e) 규칙 353과 규칙 843에 따른 프로그램 컴포넌트의 가치계수 (multiplying factor)

f) 규칙 108을 따른 나이 요구조건

g) 규칙 102와 규칙 109를 따른 적격성 요건, 시민권 및 이적 증명

h) 공식 지정 호텔

i) 조직위원회의 주소와 담당자.

j) 스케이터의 최대 수(규칙 115의 1항 참조)

5. 보충조건

대회를 조직하는 회원국(또는 제휴클럽)은 ISU 법령들과 충돌하지 않음을 전제로 어나운스먼트에 보충적인 조건들을 추가할 수 있다(선수권대회에는 미해당).

6. 관중을 위한 정보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을 포함하여 ISU 선수권대회 피겨스케이팅(가능한 경우 타 경기들을 포함함)을 조직하는 회원국(또는 제휴클럽)은 경기 개최시점에 관중들에게 팜플릿이나 프로그램 표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져징 기준과 채점결과 판정방법 등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규칙 113

어나운스먼트의 지연제출 또는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된 어나운스먼트

만일 어나운스먼트가 늦게 제출되거나(규칙 110) ISU 법령에 반하는 조건이 포함된 경우, 소관부문의 부회장은 회원국들의 선수들로 하여금 동 해당 경기에 출전을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동시에 경기를 조직하는 해당 회원국에게는 의무 미준수 내용을 적시한 경고를 발부하게 된다. 동 경고가 만일 2회 연속으로 발부되는 경우, 해당 회원국은 차후 2년간 인터내셔널 경기를 개최할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된다.

규칙 114

1. 경기일 연기

경기일자가 연기되는 경우 연기된 기간만큼 엔트리 마감일도 연장되어야 한다

2. 연기의 통지

가능한 한, 경기일자가 연기되는 경우 그 사실을 선수를 출전시키는 모든 회원국들(또는 제휴클럽들)에게 즉시 통지하여, 새 엔트리 마감일자 전에 엔트리 취소를 허용해야 한다.

3. 어나운스먼트의 취소

경기를 조직하는 회원국(또는 제휴클럽)이 기 공표한 자신의 어나운스먼트를 취소하는 경우, 8일 이내에 ISU 사무총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4. 연기 또는 취소 통지

취소 통지 는 경기를 조직하는 회원국의 책임 하에 즉각 ISU 웹사이트에 게재되어야 하며 동 회원국은 ISU 사무국에 가능한 한 조속히 알려야 한다.

규칙 115

엔트리

1. 일반적인 조건

엔트리는 해당 회원국(또는 제휴클럽)이 작성하여야 하며(예외가 있는 바, 규칙 109의 5항과 6항을 참고할 것), 해당 경기의 경기규정 및/또는 어나운스먼트에 명시된 조직(또는 개인) 앞으로 명시되어 있는 기한(마감기한)까지 서면이나 전자적인 수단으로 제출이 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경기주최측은 각 엔트리의 접수확인을 해당 회원국에게 즉시 서면으로 해 줘야 한다. 모든 ISU 이벤트에 대한 엔트리는 반드시 온라인 어크레디테이션 포털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a) 경기 명칭
b) 엔트리를 제출하는 회원국(또는 제휴클럽)의 명칭
c) 선수들의 명단으로서, 이름+성의 순서로 한다.
d) 선수들의 생년월일
e)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의 경우, 팀의 명칭과 스케이터들의 명단(후보선수들을 포함한다)(이름, 성, 시민권, 생년월일)으로서, 알파벳 순서로 나열하고, 팀의 주장은 대문자 "C"로 약칭하여 식별한다.
f) 엔트리를 제출하는 회원국(또는 제휴클럽)이 확인해 주는 것으로서, 선수들의 적격성 지위 증명
g) 이 규정에 사용된 싱글/페어 스케이팅/아이스댄스의 선수(들)에는 남자, 여자, 페어스케이팅 및 아이스댄스 커플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의 엔트리

인터내셔널 경기에 있어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의 팀 엔트리에 등재된 선수명단은 엔트리 마감 이후 변경이 가능하다. 후보선수를 포함하여 팀 구성선수의 명단 모두를 등록시점에 최종적으로 발표하여도 무방하다(규칙 868 참조).

3. 닉네임

"애칭"이나 "별칭"과 같은 닉네임의 사용도 가능하나, 상기의 1항 c)호에 명시된 정보들이 반드시 함께 명기되어야 한다. 닉네임은 여권상의 이름과 달라도 상관없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관련 규정들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4. 포스트 엔트리

a) 포스트 엔트리 (post entry) 란 엔트리 마감기한의 마지막 날 20:00(오후 8:00시)(경기개최지의 로컬타임 기준)를 넘겨 지연 도착한 엔트리를 말하며, 포스트 엔트리는 수리가 거절된다(규칙 115의 4항 b)호에 의거함).
b) 예외적인 경우로서, 인터내셔널 경기의 경우 경기주최측에 의해, ISU 선수권대회를 제외한 ISU 경기들의 경우 소관부문의 부회장에 의한 자율적 재량으로 포스트 엔트리를 수리할 수 있다.
ISU 선수권대회의 경우로서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포스트 엔트리는 회장의 재량으로 수리가 가능하다.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함을 전제로, 만일 그 어떤 이유로 회장과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소관부문의 부회장이 회장을 대신하여 포스트 엔트리를 수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회장과 소관부문의 부회장 모두 부재한 경우엔, 경기개최지에 파견된 ISU 대표자가 포스트 엔트리를 수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c) 어느 경우이든 포스트 엔트리는 출발순서가 확정되기 직전까지 제출이 되어야 수리가 가능하다.
d) 포스트 엔트리에 대한 본 조항은 져지의 지명에 대해서도 공히 적용된다.

5. 상세 정보

ISU 선수권대회의 엔트리와 관련한 좀 더 자세한 규정은, 스피드스케이팅의 경우 규칙 208을,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의 경우 규칙 281, 283, 285, 295를, 싱글/페어 스케이팅과 아이스댄스의 경우 규칙 378을,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의 경우 규칙 868을 참고하기 바란다.

규칙 116 보류

규칙 117

1. 참가비

a) ISU 선수권대회의 피겨스케이팅과 스피드스케이팅은 참가비가 없다.

b) ISU 선수권대회가 아닌 인터내셔널 경기의 경우 참가비가 책정될 수는 있다.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에서, 이러한 참가비는 팀 기준의 단일 참가비여야 한다. 스케이터당 참가비는 허용되지 않는다.

규칙 118

경기의 유효성

매 경기는 최소 3인 이상의 선수들(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의 경우 3개 팀들)이 출전하고 그 중 두 선수 또는 팀이 스타트 선에 나선 경우 유효하게 인정된다.

규칙 119

의료보험

1. 참가 ISU 회원국의 의무

ISU 경기, 동계올림픽대회, 동계유스올림픽대회 또는 규칙 107에 정의되어 있는 인터내셔널 경기에 참가하는 회원국은 자국의 선수들, 임원들 및 소속 팀의 기타 모든 관계자들에 대해 의료보험과 상해보험을 제공하여야 한다. 동 보험들은 피보험자가 경기개최국에서 입는 모든 유형의 병이나 사고를 전손보상 하는 보험으로서, 항공 또는 기타 수단으로 동 피보험자를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비용을 포함한다. 보험료를 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내용은 각 회원국이 내부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안이다.

2. ISU의 의무와 손해에 대한 무책임

상기 1항에 있어 ISU는 경기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그 어떤 신체 부상이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그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규칙 120

수상

1. ISU 비준 경기

ISU가 비준하는 모든 경기들(규칙 107 참조)에서는 메달, 트로피 및/또는 상금 수상이 이루어진다.

2 ISU 경기

ISU 선수권대회와 기타 다른 ISU 경기들의 경우, 상금 또는 상품의 최저 가치는 집행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규칙 121

오피셜

1. 오피셜 카테고리

a) 피겨스케이팅 부문

오피셜(Official)들은 다음과 같이 두 카테고리로 분류된다.

i) ISU 레프리, ISU 테크니컬 컨트롤러, ISU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ISU 저지, ISU 데이터/리플레이 오퍼레이터

ii) 인터내셔널 레프리, 인터내셔널 테크니컬 컨트롤러, 인터내셔널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인터내셔널 저지, 인터내셔널 데이터/리플레이 오퍼레이터

"ISU" 또는 "인터내셔널" 자격 여부에 따라 오피셜들은 아래의 표와 같은 경기와 각 기능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저지	레프리	테크니컬 컨트롤러,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데이터/리플레이 오퍼레이터
– 동계올림픽대회	ISU	ISU	ISU
– 동계올림픽대회의 예선경기	ISU	ISU	ISU
– 동계유스올림픽	ISU	ISU	ISU
– ISU 선수권대회	ISU	ISU	ISU
– ISU 피겨스케이팅 그랑프리 결승	ISU	ISU	ISU
– ISU 피겨스케이팅 주니어 그랑프리 결승	ISU	ISU	ISU
– ISU 피겨스케이팅 그랑프리 경기	인터내셔널.	ISU	ISU
– ISU 피겨스케이팅 주니어 그랑프리 경기	인터내셔널	인터내셔널	ISU
– 기타 인터내셔널 경기	인터내셔널	인터내셔널	인터내셔널

b) 스피드스케이팅 부문

오피셜(Official)들은 다음과 같이 두 카테고리로 분류된다.

i) ISU 레프리, ISU 스타터, ISU 선수 스튜어드(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에만 해당)

ii) 인터내셔널 레프리, 인터내셔널 스타터, 인터내셔널 선수 스튜어드(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에만 해당), <u>인터내셔널 스포츠 전문가(스피드스케이팅만 해당).</u>

"ISU" 또는 "인터내셔널" 자격 여부에 따라 오피셜들은 아래의 표와 같은 경기와 각 기능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레프리	스타터	선수 스튜어드	어시스턴트(보조) 레프리	스포츠 전문가
동계올림픽대회	ISU	ISU	ISU	ISU	인터내셔널
동계유스올림픽	ISU	ISU	ISU	ISU	인터내셔널
ISU 선수권대회	ISU	ISU	ISU	ISU	인터내셔널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ISU	ISU	해당 없음	ISU/ 인터내셔널	인터내셔널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ISU	ISU	ISU/인터내셔널.*	인터내셔널. *	인터내셔널
주니어 월드컵 스피드 스케이팅	ISU/ 인터내셔널	ISU/ 인터내셔널	해당 없음	ISU/ 인터내셔널	인터내셔널
기타 인터내셔널 경기	인터내셔널	인터내셔널	인터내셔널	인터내셔널	해당 없음

* 규칙 286 3, 289 5.c), 289조 7. a) 참조

2. 임명 권리

대회/경기를 주최하는 회원국(또는 제휴클럽)은 오피셜들을 임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ISU 선수권대회들 및 기타 ISU 경기들의 경우, 예외들이 존재하는 바, 이에 대한 내용은 규칙 214, 규칙 289 제 7항, 규칙 421, 규칙 521, 규칙 911, 규칙 971을 참고할 것).

3. 오피셜(임명직) 지원시의 제약

a)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와 데이터/리플레이 오퍼레이터들을 제외한 모든 오피셜 지원자들은 "적격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b) 집행위원회 의원들, 스포츠 기술이사들, 발전위원회 위원들 및 이벤트 관리자들, 그리고 가능한 경우 ISU 고문들은 규칙 107에 명시된 경기들에서 레프리, 져지,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테크니컬 컨트롤러, OAC 위원, 스타터, 그리고 선수 스튜어드 직을 수행할 수 없다.

c) 피겨스케이팅부문의 기술위원회 위원들은 ISU 선수권대회, ISU 피겨스케이팅 그랑프리 시리즈와 결승(시니어), ISU 월드 팀 트로피 피겨스케이팅 그리고 동계올림픽대회에서 져지, 레프리, 테크니컬 컨트롤러,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또는 OAC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단 기술위원회에서 자신이 속한 종목은 예외로 한다. 자신이 속한 이러한 종목에서 기술위원회 위원들은 레프리, 테크니컬 컨트롤러 그리고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져지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종목의 인터내셔널 경기와 주니어 그랑프리 시리즈(결승은 아님)에서는 져지, 레프리, 테크니컬 컨트롤러 그리고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활동을 할 수 있다.

d) 스피드스케이팅 부문의 기술위원회 위원들은 ISU 비준 대회나 동계올림픽에서 레프리로 활동하면 안 된다

e) 레프리, 테크니컬 컨트롤러,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져지, 스타터와 선수 스튜어드는 어덜트 그리고 마스터즈 대회를 제외한 각 종목의 ISU 대회와 국제대회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f) 집행위원회 의원, 기술위원회 위원, 이사, 이벤트 매니저 및 ISU 고문인 자가 선출 또는 임명이 된 시점에 레프리, 테크니컬 컨트롤러,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져지, 스타터 및 선수 스튜어드 자격자로서 자격명부에 등재되어 있었다면, 본 규칙 제3항에서의 참가금지 조항 때문에 특별규정에 포함된 개별규칙에 따른 ISU 경기 의무참가 요건을 결과적으로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를 불문하고, 자신의 전 임기 동안 유효하게 자격이 계속 인정된다. 단, 임기를 마친 이후에는 임기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동 의무참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g) 테크니컬 컨트롤러는,

i) 동일한 ISU 대회, 동계 올림픽 및 동계 유스 올림픽에서 다른 종목의 레프리 및/또는 져지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ii) 동일한 대회에서 다른 종목의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로 활동해서는 안 된다.

h)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는,

i) 같은 시즌의 ISU 대회, 동계 올림픽 및 동계 유스 올림픽에서 다른 종목의 레프리 및/또는 져지로 활동해서는 안 된다;

ii) 동일한 대회에서 다른 종목의 테크니컬 컨트롤러로 활동해서는 안 된다;

iii) ISU 회원국의 풀타임 직원이 될 수 없다.

i) 테크니컬 컨트롤러,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레프리, 져지, 데이터/리플레이 오퍼레이터들은 풀-타임 스포츠 저널리스트 또는 TV 해설가가 될 수 없다.

j) 레프리는

가능하다면, ISU 챔피언십의 레프리는 동일한 챔피언십 대회에서는 다른 종목의 져지로 활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k) 개인, 단체, 패밀리간의 관계

i) 반드시 다음으로만 한정하지는 않으나 소위 "이해의 충돌" 조항을 포함한 ISU 윤리규정의 모든 조항들은 ISU에 의해 임명된 모든 오피셜들과, 동 윤리규정에서 언급되는 기타 대회참가자들에게 공히 적용된다.

ii) ISU 윤리규정이 광의적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기본원칙을 손상함이 없이, 하나의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실례들을 들어본다면 다음과 같다.

1. ISU 경기, 동계올림픽대회 또는 동계유스올림픽대회에서 선출직 또는 임명직 "임원"들은 팀 리더, 어시스턴트 팀 리더, 샤프롱 (chaperon), 팀 닥터 또는 팀 코치로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없으며 또한 국가를 상징하는 팀 유니폼을 입을 수 없다(단, ISU 기술위원회에 소속된 코치("ISU 코치")가 사적으로 자신이 지도하는 선수로서 ISU 경기 또는

인터내셔널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에게 지도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2. 피겨스케이팅부문에만 해당하는 경우로서, ISU 경기, 동계올림픽대회 또는 동계유스올림픽대회에서 ISU 오피셜이지만 자신이 ISU 오피셜 직(가령, 레프리, 져지, 테크니컬 컨트롤러,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등)을 수행하지 않을 때에는, 자국 팀의 소속 멤버, 팀 리더, 어시스턴트 팀 리더, 샤프롱, 팀 닥터 또는 팀 코치로 활동할 수 없으며 또한 소속국가의 팀 유니폼을 입을 수 있다.
3. ISU 경기, 동계올림픽대회 또는 동계유스올림픽대회에서 출전선수(스케이터)와 이해관계가 있는 "패밀리"의 일원인 자는 동 선수가 출전하는 경기에서 오피셜 역할을 맡는 것이 금지된다. 단, 이해관계인 선수가 출전하지 않는 동 경기들(ISU 경기, 동계올림픽대회 또는 동계유스올림픽대회)의 타 종목경기의 경우, 직무수행이 소위 이해의 상충관계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한, 오피셜 직을 수행할 수 있다.
4. ISU 경기, 동계올림픽대회 또는 동계유스올림픽대회에 있어, 코치 또는 적격성이 없는(ISU의 오피셜 자격이 없는)자가 지도하는 선수가 경기에 출전하는 경우, 코치 또는 적격성이 없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패밀리"인 자는 해당 경기에서 오피셜 직을 수행하는 것이 불허된다. 단, 이해관계인 선수가 출전하지 않는 동 경기들(ISU 경기, 동계올림픽대회 또는 동계유스올림픽대회)의 타 종목경기의 경우, 직무수행이 소위 이해의 상충관계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한, 오피셜 직을 수행할 수 있다.
5. 본 규칙에서 "패밀리"라는 용어는 위에서 언급된 출전선수, 코치 또는 적격성이 없는 자와 관련하여, 이해의 상충관계에 있다고 합리적으로 보여지는 관계가 있는 모든 자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6. 본 조의 목적성에 비추어, 레프리(들)은 "ISU 오피셜들"을 대상으로 경기를 위한 오피셜들을 구성할 때 본 조에서 말하는 이해(및 상충)관계는 물론, ISU 윤리규정의 적용 측면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슈와 사안들을 결정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규칙 122

1. 오피셜들의 지명과 임명

레프리, 테크니컬 컨트롤러,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져지, 데이터/리플레이 오퍼레이터, 스타터 및 선수 스튜어드의 지명과 임명: 모든 회원국들은 하기 자들에 대해 각각의 성명과 적절한 연락처 정보를 매년 4월 15일 한 ISU 사무국에 어나운스를 하여야 한다. 여기서 하기 자들이란 다음과 같다.

a) ISU 통신문을 통해 발표된 직전연도의 명부에 포함이 되지 않은 자로서, 회원국이 추천하는 인터내셔널 레프리, 테크니컬 컨트롤러,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져지, 데이터/리플레이 오퍼레이터, 스타터 및 선수 스튜어드

b) 인터내셔널 레프리, 테크니컬 컨트롤러,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져지, 데이터/리플레이 오퍼레이터, 스타터 및 선수 스튜어드로서 최초로 추천을 하는 자들로서, 해당 종목별(싱글/페어 스케이팅, 아이스댄스 및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로 요구되는 자격심사를 받도록 추천을 하는 자

c) 직전연도의 ISU 명부에 포함되어 있는, 회원국이 추천하는 인터내셔널 레프리, 테크니컬 컨트롤러,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져지, 데이터/리플레이 오퍼레이터, 스타터 및 선수 스튜어드로서, 회원국이 인지한 새로운 사실로 인해(가령, 나이제한, 사임, 사망, 회원국 자체의 제재부과 등) ISU 명부에서 삭제를 해야 하는 자

d) 본 항에 따라 임명된 모든 자들은 각 종목별 특별규정에 명시된 해당 자격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2. 오피셜의 통신

싱글/페어 스케이팅, 아이스댄스 및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의 경우 레프리, 테크니컬 컨트롤러,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그리고 져지, 데이터/리플레이 오퍼레이터의 명단을, 스피드스케이팅과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의 경우 레프리, 스타터 및 선수 스튜어드의 명부를 알파벳 순서로 작성하여 각각 분리된 별도의 통신문 형태로 매년 8월 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규칙 123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및 직권 시정

1. 이의 제기 권리

규칙에 대한 위반 혐의에 근거한 이의는 해당하는 이의가 이 규칙 또는 다른 어떤 규칙에서보 배제된다는 전제 하에 제기할 수 있다. 레프리가 모든 이의에 대해 결정을 한다. 이의는 반드시 레프리가 서면으로 그리고 기술되어 있는 시한 내에 작성해야 한다. 이의서를 작성하는 동시에 100 스위스 프랑 또는 기타의 같은 가치로 환전 가능한 통화를 레프리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만일 이의 제기가 성공하는 경우, 이의 수수료는 환불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레프리가 해당 금액을 ISU에 송금한다.

2. 항의제기의 자격을 갖는 자들

항의를 할 수 있는 자들은 다음으로만 제한된다.

a) 선수,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일 경우 팀의 주장) 또는 관련 경기에 대해 자격 승인을 받은 팀 리더에 의해.

b) 그와 같은 선수, 또는 팀의 리더의 승인에 따라, 코치 (스피드스케이팅에만 해당), 경기를 조직하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선수를 출전시킨 ISU 회원국 또는 해당 회원국에 속하는 클럽의 모든 오피셜 또는 모든 공식 대표자들에 의해.

3. 항의제기를 위한 시간제한

a) 어떤 선수의 경기출전에 대한 항의는 해당 경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제기되어야 한다. 동 항의에 대한 즉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그 선수의 출전을 허용하되, 경기결과에 대한 어나운스먼트와 포상의 분배는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보류된다.

b) 오피셜들의 패널구성에 대한 항의는 패널에 대해 어나운스먼트를 한 후 30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c) 아래의 d)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 다른 모든 항의는 레프리에게 즉시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스피드스케이팅에서는 한 종목의 또는 예선 라운드 또는 파이널의 마지막 경기 후,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의 예선 라운드 또는 파이널의 마지막 경기 후, 그리고 피겨스케이팅 경기의 모든 세그먼트 (쇼트 프로그램 / 프리 스케이팅 / 패턴 댄스 / 리듬 댄스 / 프리 댄스)의 종료 후 각각 30분 이내이어야 한다.

d) 채점결과에 대한 "수학적 계산착오" 항의는 해당 경기가 종료된 후 24시간 이내에 제기가 가능하다(또한, 아래의 제 4항의 A. c) 호를 참조할 것). 관할 레프리를 경기장 또는 호텔에서 찾을 수 없는 경우, 항의서를 반드시 사무국에 팩스나 이메일로 전송해야 하며, 사무국은 그것을 해당 레프리에게 전달한다.

4. 항의의 제한

"경기장 결정(field of play decisions)"은 시정 그리고/또는 검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 스포츠 개념에 따라, 선수가 세그먼트, 경주 또는 경기의 예선 라운드 과정에서 획득한 점수 또는 시간은 일단 관할 오피셜의 결정이 오피셜 어나운서에 의해 어나운스 되고/또는 경기의 점수판 또는 비디오 화면에 표시되고 나면 원칙적으로 최종적인 것이다. 다만 아래 조항에 따라 성공적으로 항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예외이다. 따라서, 이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한이 적용된다.

A. 피겨스케이팅

a) 레프리, 저지 및 테크니컬 패널(테크니컬 컨트롤러,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및 데이터/리플레이 오퍼레이터들)이 선수(스케이터)의 연기에 대해 평가한 결과는 항의대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b) 결과에 대한 이의는 오로지 부정확한 수학적인 계산의 경우에 한해서 허용된다. 비록 그 결과가 상대적으로 낮거나 높은 점수로 귀결되더라도, 연기 요소 또는 난이도에 대한 잘못된 식별의 경우에는 부정확한 수학적 계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c) 오류의 시정을 위한 레프리의 권한

앞에 언급한 규칙에 대한 하나의 예외로서, 레프리는 비록 이의가 제기되지 않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인지했을 때는 오류를 시정해야 한다.

i) 시상식이 개시되기 전에 (시상식이 없을 경우에는 결과의 공식 어나운스먼트 전에) 데이터 오퍼레이터의 잘 못된 데이터 입력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단, 테크니컬 컨트롤러와 두 명의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가 모두 입력 오류가 있었다는 데 동의해야 한다. 이 규칙의 목적상, 쇼트 프로그램/쇼트 댄스에 대한 메달 수여는 시상식으로 간주한다.

ii) 시상식 후 24시간 이내에 부정확한 수학적 계산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인지하였을 경우. 단, 테크니컬 컨트롤러와 두 명의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가 모두 그와 같은 부정확한 계산이 발생하였다는 데 동의해야 한다. 만일 그와 같은 시정이 최종 순위의 변경으로 귀결되는 경우, 해당하는 메달 그리고/또는 상은 그에 따라 재배분해야 한다.

d) 만일 상기 a)-c)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레프리는 서면으로 짧은 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c) i) 및 ii)의 경우에는 기술 기술 패널에 속한 모든 위원들이 서명을 해야 한다.

B. 스피드스케이팅 및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해당 기술규칙에 명시된 레이싱 규칙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레프리 또는 스타터가 실격판정을 하거나 또는 실격이 아닌 것으로 판정한 것에 대한 항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결과에 대한 항의는 잘못된 수학적 계산을 포함하여 잘못된 데이터 처리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5. 레프리의 판정

a) 레프리는 서면으로 항의가 제기되는 경우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동 항의에 대한 판정을 내려야 한다. 또한 레프리는 동 판정의 결과를 항의를 제기한 당사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루트로 전달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항의와 그에 대한 레프리의 판정결과의 사본들은 사무국에 전송이 되어야 한다.

b) 만약 항의가,

i) 시간제한규정의 규정시간을 경과하여 제기가 된 경우, 또는

ii) 관련 규칙들에 의거하여 허용되지 않는 항의인 경우

레프리는 클레임 제기의 정당성을 고려함이 없이, 관련 규칙상의 근거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동 항의를 기각처리 하여야 한다.

c) 상기 b) 호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레프리는 자신의 판정 사유를 간략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d) 스피드스케이팅과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의 경우, 레프리는 관련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하는 경우, 항의에 대한 판정을 내리기 전에 자신의 재량으로 비디오 재생 시스템 또는 기타 쉽게 입수 가능한 TV 피드를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는 상기 4.B항에 의해 배제되는 이의 제기 시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 이의에 따르는 레프리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규칙 124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외에는 그와 같은 결정에 대한 어떠한 항소도 인정되지 않는다.

f) 레프리는 자신의 재량으로 제기된 항의의 내용 그리고 항의에 대한 자신의 결정을 대중에게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있다. 가능한 경우, 이러한 발표는 해당 경기(여기서 말하는 "경기"라는 용어의 정의는 제39조 8항을 따른다)가 종료된 이후 30분 전이나 이내까지 하여야 한다.

규칙 124

항소

1. 항소 권리

집행위원회에 제기되는 항소는, 선수의 적격성, 잘못된 수학적 계산 결과를 포함하여 잘못된 데이터 처리, 또는 오피셜들의 패널구성과 관련한 결정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전술한 문제와 관련한 ISU 법령이 위반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2. 기한

레프리의 판정에 불복하는 항소는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ISU 집행위원회에 제기되어야 한다.

3. 지연에 대한 무효과성

항소는 결정을 지연시키는 효과를 갖지 아니 한다.

4. 항소 자격자

항소는 "항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들(규칙 123의 2항을 참조할 것)에 의해서만 제기 가능하다.

규칙 125

1. 경기 오피셜들에 대한 선수와 팀 임원들의 행동규범

선수들과 팀 임원들은 경기를 관장하는 오피셜들의 지시에 복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부적절한 공개 언급

오피셜들이나 또는 그들의 결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즉 피겨스케이팅경기의 경우 반드시 다음으로만 한정하지는 않으나 특히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와 테크니컬 컨트롤러의 요소배치 및/또는 난이도 결정, 져지의 마킹 등, 또는 스피드스케이팅경기의 경우 반드시 다음으로만 한정하지는 않으나 특히 레이싱 규칙 위반으로 인한 선수의 실격 등에 대해, 선수 및 팀 임원들이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해 부적절한 방식으로 공공연하게 힐난하는 경우, 이는 정관 제 25조에 의거하여 ISU 징계위원회의 징계대상이 될 수 있다.

3. ISU의 오피셜, ISU 임원, 선수들, 코치들 및 기타 관계자들의 행동규범

ISU 통신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공표된 이른바 ISU 오피셜 리스트에 등재된 오피셜은 그 누구라도 타 오피셜들(즉, 레프리, 테크니컬 컨트롤러,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져지, 데이터/리플레이 오퍼레이터, 스타터, 선수 스튜어드)은 물론 기타 관계자들(결과 서비스 제공자(Result Service Provider), 계시원, 등) 또는 대회 현장에 있는 동안의 활동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처신, 비상식적인 행동 또는 용납되지 않는 제안 또는 등을 인지하게 된 경우, 이를 즉각 상부에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바, 여기서의 보고 라인은 다음과 같다: 레프리와 ISU 대표자가 경기장에 있는 경우, 이들에게 보고; ISU 대표자가 경기장에 없는 경우, 경기장에 있는 ISU 임원 중에서 직위가 가장 높은 자에게 보고를 하는데, 직위의 순서는, 회장, 부회장(들), ISU 집행위원회 의원들, 사무총장과 소관부문별 이사, 해당 종목의 TC 위원장, 해당 종목의 TC 위원들의 서열 순이다; 경기장에 아직 아무도 도착하지 않은 경우, ISU 회장에게 보고한다. 그러한 보고는 가능한 한 경기가 종료되기 전에 즉각적인 교정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간에 제출이 되어야 한다. 보고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다만, 시간 제약으로 인해 적시에 보고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 먼저 구두 보고를 한 다음, 가능한 한 빨리 아직 현장에 있을 때에 서면 보고를 해야 한다.

보고를 받은 레프리와 ISU 대표자(또는 현장에 있는 임원들 중 최고 직책의 자)는 아직 대회 현장에 있을 때 현장에 있거나 유선으로 연락할 수 있는 회장에게 동 보고내용을 즉각적으로 알려야 한다. 가능한 경우, 회장과의 협의를 마친 동 레프리와 ISU 대표자는 ISU의 경기진행에 있어서의 무결성을 방어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로 하는 모든 조치들을 즉각적으로 취해야 한다. 동 내용은 소관 기술위원회의 위원장에게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통지된다.

4. ISU 규칙 및 윤리규정의 준수

모든 임원, 오피셜, 회원국, ISU의 보수를 받는 자, 자원봉사자들은 물론, ISU의 경기 및 그 어떤 활동에 참여하는 기타 모든 적격성을 갖춘 선수 및 코치들은, 집행위원회가 기 수립한 각종 법령, 포지션 규정, 윤리강령, 행동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정관 제 25조에 의거하여 징계위원회의 징계대상이 될 수 있다.

5. 제재

스케이터, 오피셜, 임원 또는 ISU 활동에 참가하는 그 어떤 자가 ISU 법령의 정신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또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음이 증명될 수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는 정관 제 25조에 의거하여 이들에게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ISU와 해당 회원국간의 약정에 합치하는 ISU 경기에 메디컬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스케이터가 경기참가를 거절하는 것은 스케이터에 의한 부적절한 행동에 포함된다(부상 및 병의 "확인"을 위한 요건은 규칙 140의 5항을 따른다).

E. 동계올림픽대회 (OWG) 및 동계유스올림픽대회 (YOG)

규칙 126

1. 동계올림픽대회와 동계유스올림픽대회에서의 빙상경기

동계올림픽대회와 동계유스올림픽대회에서의 빙상경기들은 ISU 선수권대회가 아닌 인터내셔널 경기에 해당하며, 올림픽헌장과 그 조례, IOC 자격 시스템 원칙(IOC 규정) 그리고 동 빙상경기들을 지배하는 ISU 규정들의 적용을 받는다. 만약 IOC 규정과 ISU 규정이 서로 모순되는 경우에는 IOC 규정이 우선한다. 규칙 121에 의거하여, 동계올림픽대회에서 활동하는 레프리, 어시스턴트 레프리, 테크니컬 컨트롤러,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데이터/리플레이 오퍼레이터, 져지, 스타터 및 선수 스튜어드 및 스포츠 전문가는 모두 ISU 가 지명한 자들이어야 한다. 져지는 최대 두 종목까지 활동할 수 있다.

2. 엔트리

동계올림픽대회와 동계유스올림픽대회의 엔트리들은 올림픽 헌장, 그 조례 및 동계올림픽대회/동계유스올림픽대회를 위한 IOC 자격 시스템 원칙(IOC 규정)은 물론 관련 ISU 규정들의 제 요구조건들의 적용을 받는다. 만약 동계올림픽대회/동계유스올림픽대회를 위한 자격 시스템과 관련하여 IOC 규정과 ISU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IOC 규정이 우선한다.

3. 스피드스케이팅

동계올림픽대회에서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의 경우, 규칙 202, 206, 209, 215 및 241을 준수하여야 한다.

4. 피겨스케이팅

동계올림픽대회에서 피겨스케이팅 경기의 경우, 규칙 400부터 규칙 403까지를 준수하여야 한다.

5.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동계올림픽대회에서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의 경우, 규칙 280, 284 및 289의 7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6.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의 경우, 특별규정상의 관련 규칙 조항들과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 기술규칙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IOC의 승인을 전제로,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이 OWG 및 YOG 프로그램에 포함될 수 있다).

7. 출전

ISU 회원국들 소속의 선수들만이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유스올림픽대회의 빙상 경기들에 출전이 가능하다.

8. ISU 기술자문

a)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유스올림픽대회의 ISU 기술자문들은 ISU 집행위원회가 임명한다.

b) IOC 규칙에 따라 ISU 기술자문에게 출장비, 숙박비, 식대 등이 지급된다.

9. ISU 회장의 오피셜 임명

레프리, 어시스턴트 레프리, 테크니컬 컨트롤러,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데이터/리플레이 오퍼레이터, OAC 위원, 스케이터, 여자와 남자 각각 한 명의 선수 스튜어드 및 스피드스케이팅에 대한 한 명의 스포츠 전문가는 정관의 16조, 2항 f)에 따라 회장이 임명해야 한다.

10. 개최국 ISU 회원국이 임명하는 오피셜

필요한 기타 모든 오피셜(다음을 제외한다: 기술 자문, 레프리, 어시스턴트 레프리, 테크니컬 컨트롤러,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데이터/리플레이 오퍼레이터, OAC 위원, 스타터, 져지 및 여자와 남자의 각 선수 스튜어드, 한 명, 그리고 스피트스케이팅의 스포츠 전문가, 이들은 모두 인터네셔널 테크니컬 오피셜 – ITO(International Technical Officials)로 지명된다)들은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유스올림픽대회가 열리는 국가의 ISU 회원국이 임명한다. 이렇게 임명된 오피셜들은 NTO (National Technical Official)라고 부른다.

11. 국가 엠블럼 또는 유니폼 착용불가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유스올림픽대회를 위해 임명된 오피셜들은 경기 진행 중에 특정 국가를 상징하는 팀 엠블럼이나 유니폼을 착용할 수 없다.

F. ISU 선수권대회

규칙 127

1. 선수권대회의 배정

선수권대회 즉, 세계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 세계 주니어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 유럽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 4대륙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 세계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 세계 주니어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 유럽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 4대륙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 세계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 세계 주니어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 유럽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 4대륙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 세계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 선수권대회 및 세계 주니어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 선수권대회의 배정은 연차별로 ISU 집행위원회가 한다.

2. 신청

선수권대회의 개최 신청은 모든 관련 정보를 포함해서 ISU 사무국이 제공한 양식과 함께 4월 15일 이전 또는 ISU 통신문에 표시된 날짜까지 집행위원회에 매년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선택적 장소/경기장을 포함할 수 있지만, 선수권대회가 시작되기 2년 전에 결정하여야 한다.
신청서는 해당 ISU 회원국의 회장과 총무가 서명해야 한다.

3. 결정

집행위원회는 매년 7월 31일 이전까지 회의을 소집하여 다음 내용을 결정한다.

a) 각 선수권대회들을 이듬해의 언제, 어느 도시에서 개최할 것인지를 명확히 지정(배정)하여야 한다.

b) 이후의 4년 동안에 대해 선수권대회 별 개최시기와 개최국을 임시로 배정해야 한다. 만일 1년 동안 적절한 신청국이 없고/없거나 지난 몇 년 동안 선수권대회가 ISU 회원국들의 참여율을 보아 관심을 충분히 끌지 못하는 것으로 증명되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자신의 재량으로 다음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즉, (i) 이후의 연도(들)에 대해 그와 같은 선수권대회들의 임시배정을 일시적으로 연기하거나, 또는 (ii) 이후의 연도(들)에 대해 그와 같은 선수권대회들의 배정을 아예 하지 않는다.

c) 집행위원회는 선수권대회를 배정할 때 ISU 시리즈 (피겨스케이팅 월드컵, 그랑프리), ISU 피겨스케이팅 세계 팀 트로피와 같은 ISU 대회 및 ISU 대회 일정에 포함될 수 있는 다른 ISU 대회를 포함한 모든 ISU 대회 일정을 고려해야 한다.

4. 게시

회원국 신청 마감 후 7일 이내, ISU 사무국은 ISU 웹사이트에 모든 선수권 신청서(회원국과 개최 도시)를 등재하고 5월 31일까지 ISU 웹사이트에 해당 이벤트의 매니저와 ISU 사무국에 의한 기초평가를 포함한 모든 신청 요약본을 올려야 한다. 해당 결정 7일 이내 집행위원회는 반드시 신청 회원국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5. TV 중계권 및 확정 배정

집행위원회는 배정을 확인해 주거나 배정의 확정을 승인하기 이전에, ISU 와 관련 TV 매체들과의 계약체결을 통해 ISU 선수권대회의 TV 중계권과 관련한 모든 계약사항들을 종결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TV 중계권 사안들이 해결되고 또한 선수권대회들과 관련한 기타의 모든 요소들이 임시배정의 원안대로 대회개최에 문제가 없음이 확인이 되면, 집행위원회는 대회 개최연도의 직전 연도에 열리는 공식회의에서 이듬해에 대한 배정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해야 한다.

6. 불완전한 TV 중계권 또는 기타 불완전한 중대한 요소

만일 임시 배정하는 원안에 규정되어 있는 TV 중계권이나 중대한 요소가 제대로 종결이 되지 않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공식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다.

a) 합리적인 기한 내에, 그러한 미완결 된 중계권사안 또는 중대요소가 해결이 될 때까지 신청회원국에 대한 임시배정을 그대로 둔다; 또는

b) 임시배정이 되었던 해당 선수권대회를 다른 회원국이나 도시에서 개최할 것을 심의한 후, 그러하기로 결정한 경우 임시배정을 바꾼다. 그 후, 적절한 때에, 집행위원회는 동 바뀐 회원국에 대해 비로소 배정확정을 확인하여 준다.

7. 확정된 배정 또는 선수권대회의 취소

대회를 조직하는 회원국의 신청이 있을 때, 또는 집행위원회의 독자적 재량으로, 어떤 급박한 상황이나 안전상의 문제 또는 기타 다른 중대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기 확정된 배정을 취소하거나 선수권대회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

대회를 조직하는 회원국 측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상황에서, 해당 선수권대회가 취소되는 경우, ISU는 집행위원회가 결정한 적정한 수준의 재정 보조금 형태로 경기준비에 소요된 통상적 수준의 비용을 동 회원국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규칙 128

선수권대회 개최순서

1. 세계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

세계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의 일정을 짤 때 경기시작일을 기준으로 2월의 4번째 월요일보다 더 빠른 시일이어서는 아니 된다.

2. 세계 선수권대회

가능한 경우, 세계 선수권대회들은 유럽 선수권대회와 4대륙 선수권대회 다음으로 일정이 잡히도록 해야 한다.

3.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들 사이의 간격

유럽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4대륙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둘 중 이후에 치러지는 것을 기준으로)와 세계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 사이에는 최소 14일의 여유를 두어야 한다.

4. 세계 주니어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

세계 주니어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는 3월의 전반부에 개최되어야 한다.

5. 쇼트트랙스케이팅 선수권대회

유럽 쇼트트랙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는 세계쇼트트랙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 (세계 주니어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 제외) 전에 개최하여야 하며 4대륙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는 세계쇼트트랙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 전에 그리고 가능한 경우에는 유럽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의 거의 같은 시기에 개최하여야 한다.

6. 배타성

세계, 유럽 또는 4대륙 선수권대회 기간 중에는,

a) 같은 링크에서 다른 경기를 진행시킬 수 없다.

b) 부적격자가 참가하는 시범경기가 같은 링크에서 치러질 수 없다.

c) 어느 경기이든 선수들로 이루어진 시범경기는 해당 경기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에는 치러질 수 없다.

7. ISU 기의 게양

ISU 선수권대회들의 경우, 경기조직위원회는 개회식 행사를 진행할 때 ISU 기를 게양해야 한다.

8. 세계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 선수권대회

세계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 선수권대회는 3월의 마지막 주 이전으로 경기일정을 잡을 수 없으며, 반드시 4월 중으로 일정을 잡아야 한다.

9. 세계 주니어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 선수권대회

세계 주니어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 선수권대회는 3월 1번째 주보다 더 빠른 기일로 일정을 잡을 수 없다.

규칙 129

1. 세계 선수권대회 규정 준수

ISU 선수권대회의 진행은 대회를 조직하는 회원국에게 그 책임이 있다. 동 회원국은 어나운스먼트의 준비와 공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포함하는 ISU 선수권대회의 개최 지침에 대하여 ISU 법령들과 관련 메모랜덤상의 제 조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선수권대회 발표의 승인

발표는 공표 전에 먼저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선수권대회 발표의 게시

ISU 선수권대회 별로 발표가 ISU 웹사이트에 게시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단 11월 1일 이전까지 어나운스먼트가 이루어져야 한다.

4. 선수권대회 오피셜의 임명

매 ISU 선수권대회 별로 회장은 정관 제 16조의 2항 f)호에 의거하여 레프리, 어시스턴트 레프리, 테크니컬 컨트롤러,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데이터/리플레이 오퍼레이터, OAC(오피셜평가위원회) 위원 및 스타터들과 선수 스튜어드를 임명하여야 한다

규칙 130

선수권대회 참가

1. 세계 선수권대회

회원국에 소속된 선수(규칙 109의 5항과 6항에 따른 예외가 허용됨)로서, 해당 특별규정 및/또는 기술규칙들에 명시된 최소한의 기술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선수라면 누구든지 세계 선수권대회들에 참가할 수 있다.

2. 유럽 선수권대회

유럽 선수권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성 요건을 갖춘 스케이터는 규칙 109의 2항 규정에 따른 유럽의 ISU 회원국 소속의 개인뿐이다. (예외에 대하여는 규칙 109의 5항과 6항 참조)

3. 4대륙선수권대회

4대륙선수권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성 요건을 갖춘 스케이터는 비-유럽의 ISU 회원국 소속이면서 비-유럽 국가의 국적을 소지하였거나 또는 해당 선수권대회 개최 직전까지 적어도 1년 간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 통상적으로 거주한 개인뿐이다. (예외에 대하여는 규칙 109의 5항과 6항 참조)

4. ISU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의 엔트리

ISU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의 엔트리는 규칙 208에 규정된 제한이 적용된다.

5. ISU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의 엔트리

세계, 유럽 그리고 4대륙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의 엔트리는 규칙 281, 283 및 285에서 제시하는 제한을 받는다.

6. ISU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의 엔트리

ISU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의 엔트리는 규칙 378에 열거된 제한이 적용된다.

7. ISU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 선수권대회의 엔트리

ISU 싱크로나이즈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의 엔트리는 규칙 868에 규정된 제한이 적용된다.

규칙 131

엔트리에 관한 일반사항

"ISU 경기들"에 참가하기 위한 선수들(규칙 109의 5항과 6항에 따른 예외가 허용됨)의 엔트리는 각 회원국을 통해 전자적으로 온라인 엔트리와 공인 포탈을 이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선수와 오피셜 및 회원국 각각은 정해진 확약서 양식에 서명을 하여야 하는 바, 이 확약서는 ISU 경기/활동에의 참가에 관한 제 ISU 법령들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그 규정들을 준수하겠다는 의미의 확약서이다. 이렇게 확약서를 수취하는 이유는 ISU 경기/활동의 참가자들을 규약하는 ISU 법령들과 기타 기 수립된 관련규정들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다시 한 번 환기시키기 위함이다. 확약서의 서명자인 선수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 중 최소 한 명의 서명이나 또는 법적 보호자의 서명이 같이 들어가야 한다.

동 확약서는 매년 선수 또는 오피셜이 해당 시즌의 첫 경기에 참가하기 전의 최소 2주 전까지 ISU 사무국에 송부되어야 한다.

사무총장과 스포츠 기술이사들은 적정한 내용으로 확약서 양식을 기안하여 집행위원회의 검토와 승인을 득해야 한다. 각 부문별(피겨스케이팅 부문과 스피드스케이팅 부문) ISU 오피셜 용으로 별도의 양식으로 기안이 될 수도 있다. 승인이 된 확약서는 각 ISU 대회를 규율하는 ISU 메모랜덤 (발행이 된 경우)에 그 사본을 첨부하고 통신문 형식으로 ISU 웹사이트에 게시가 된다. 확약서 양식은 (반드시 다음으로만 한정하지는 않으나) 다음 주제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a) 모든 선수/오피셜/회원국들은 다음을 인식하고 승낙하여야 한다. 즉,

   i) ISU 정관이 적용된다는 것, ISU 징계위원회(정관 제25조)를 인정하며, 또한 스위스 로잔에 소재한 CAS(스포츠중재재판소)는 일반 법원에 대한 제소를 배제하고, 관련된 ISU, ISU 회원국 및 ISU 활동의 모든 참가자들에 대하여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판정을 할 권한이 있는 중재부라는 점(정관 제26조와 제27조)을 인정하는 것.

   ii) 규칙 105를 따라 ISU가 체결하는 TV 및 기타 매체 전시 협정에 ISU 경기를 포함하는 것, 그리고 피겨 및 스피드스케이팅 스포츠의 프로모션을 위해 현재 또는 미래의 ISU의 승인을 전제로, 선수들의 공연 및 ISU 경기와 관련한 모든 활동들이 전 세계적으로 영상을 타거나 TV 방송, 사진촬영, 초상의 식별, 그리고 그 밖에 묘사, 저장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전시 및 배포 될 수 있다는 점.

   iii)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다음을 선언하고 동의한다. 즉,

      – 경기의 조직 및/또는 참가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 한해,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ISU는 "개인정보"들을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는 ISU에 의하여, 필요 시, 제3자에 의하여 저장되고 사용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정보에는 반드시 다음으로만 한정하지는 않으나 국적증빙문서상의 법적 풀-네임, 주소, 생년월일, 국적, 성별 등을 포함한다.

- WADA 운영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ISU는 선수생체여권과 관련된 모든 개인정보들을 국가별 반-도핑 기구와 공유할 수 있다(단, 선수에게만 해당).
- 경기의 안전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ISU에 의해 보안과 기타 이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 개인정보와 상대적으로 민감한 개인정보(가령, 형사상 유죄 판결)를 그들로부터 ISU 측이나 기타 관계자 측으로 전송 받은 후 처리를 할 수 있다.
- ISU 법령체계 상의 어느 한 조항의 위반여부를 조사 및/또는 제소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ISU와 기타 관계자(국가별 반-도핑기구, 법률집행기관, 출입국관련기관 등을 포함함)들간에(요구될 경우, 또 다른 제 3자를 포함함)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정보에는 WADA 운영 가이드라인(선수들에게만 해당함) 및/또는 도박금지규칙에 의거하여, 특히 선수생체여권 상의 개인정보들을 포함한다.
- ISU가 승인한 것으로서 경기 중에 진행되는 연구 프로젝트를 위해 개인정보와 통계정보(가령, 선수경력 조사, 설문조사, 선수에 대한 스토리 영상, 각종 측정, 의학적 사고조사 등)를 수집 및 사용할 수 있다.
- 개인정보의 당사자가 ISU에게 명시적 동의를 표한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동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b) 모든 피겨스케이팅 선수들과 이들이 소속된 회원국들은,

i) 경기에서 사용하는 선수의 음악과 안무는 완전한 수준으로 공공저작물 사용이 허용된 것으로서, TV와 기타 매체들이 전 세계적으로 전시/송출/재송출을 하여도 전혀 문제가 없으며, 따라서 ISU, 대회개최 회원국, 조직위원회 및 기타 관련 TV 방송국들과 방송인들 측에 저작권 사용에 대한 그 어떤 추가적인 법적 절차나 형식을 불문한 그 어떤 비용도 발생하지 않음을 보증하고 이를 확약한다.

ii) 경기의 전 기간(수상식 기간을 포함함)에 걸쳐 적용되는 것으로서, ISU 일반규정들과, 복장에서 허용 및 허용되지 않는 상표들에 대한 규정인 규칙 102의 6항 a)의 내용을 잘 이해하였으며 이를 준수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 만일 이러한 요구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이는 "유니폼/레이싱 슈트/복장"이라는 제목의 ISU 통신문 제2055호(이후 업데이트된 통신문이 존재하는 경우, 이것을 적용함)에 명시된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c) 모든 스피드스케이팅 그리고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들과 이들이 소속된 회원국들은,

i) "유니폼/레이싱 슈트/복장"이라는 제목의 ISU 통신문 제2055호(이후 업데이트된 통신문이 존재하는 경우, 이것을 적용함)을 잘 이해하였고 이를 준수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 만일 복장에 대한 ISU의 요구조건들을 위반하는 경우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ii) 경기의 전 기간(수상식 기간을 포함함)에 걸쳐 적용되는 것으로서, ISU 일반규정들과, 복장에서 허용 및 허용되지 않는 상표들에 대한 규정인 규칙 102의 6항 b)의 내용을 잘 이해하였으며 이를 준수할 것임을 천명한다.

규칙 132

선수권대회 기간중의 통신

ISU 선수권대회 기간 중에 이루어지는 모든 공식적인 통신들은 영어로 이루어져야 한다.

규칙 133

타이틀

각 선수권대회의 1위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공식적인 타이틀 명칭은 아래와 같다.

a) ____ 년도 (경기의 개최연도) 년도의 세계 (또는 유럽 또는 4 대륙) _____ (경기의 명칭)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 우승자(들).

b) (경기의 개최연도) 세계 주니어 (경기의 명칭)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 우승자.

c) (경기의 개최연도) 세계 (또는 유럽 또는 4 대륙)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 500/1000/1500 미터 우승자.

d) ____ (경기의 개최연도) 세계 쇼트트랙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 계주 우승자.

e) ____ (경기의 개최연도) 세계 주니어 500/1000/1500미터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 계주 우승자

f) ____ 년도(경기의 개최연도) 세계(또는 유럽 또는 4대륙)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 혼성 팀 계주 우승자

g) ____ 년도(경기의 개최연도) 세계 주니어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계주 우승자

h) 2023/24년도 시즌 주니어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 혼성 팀 계주 우승자.

i) ____ 년도(경기의 개최연도) 세계(또는 유럽, 또는 4대륙) 피겨 싱글 스케이팅 우승자

j) ____ 년도(경기의 개최연도) 세계(또는 유럽, 또는 4대륙) 페어 스케이팅 우승자

k) ____ 년도(경기의 개최연도) 세계 아이스댄스 우승자.

l) ____ 년도(경기의 개최연도) 세계 주니어 피겨 싱글 스케이팅 우승자

m) ____ 년도(경기의 개최연도) 세계 주니어 페어 스케이팅 우승자

n) ____ 년도(경기의 개최연도) 세계 주니어 아이스댄스 우승자

o) ____ 년도(경기의 개최연도) 세계 싱크로나이즈 스케이팅 우승자

p) ____ 년도(경기의 개최연도) 세계 주니어 싱크로나이즈 스케이팅 우승자

규칙 134

1. 메달

경기를 조직하는 회원국(또는 제휴클럽)은 입상자들을 위한 메달 비용을 선납한 후 ISU로부터 미리 메달들을 수령해 두어야 한다

2. 배타성

ISU 회원국들은 ISU 메달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안으로 제조된 메달들을 다른 경기에서 사용하는 것이 불허된다.

3. 메달 수여

ISU 선수권대회들에서 메달수여식은 다음 절차로 진행되어야 한다.

a) 경기가 종료되고 결과가 계산되었을 때, 최종 순위가 발표되고 3위의 선수, 그 다음은 2위의 선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1위의 선수가 승자의 포디움으로 호명된다.

b) ISU 세계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 선수권대회 (시니어 및 주니어)에 대해서는, 경기가 종료되고 결과가 계산되었을 때, 가장 먼저 3위의 팀 주장과 팀, 그 다음은 2위, 그리고 마지막에는 1위의 팀의 주장과 팀이 얼음 위의 승자의 포디움으로 호명된다. 팀의 주장은 포디움 위에 서고 해당 팀은 얼음 위에서 해당 팀의 주장 뒤에 줄을 서야 한다.

c) ISU 대표자가 3위 및 2위 선수들에게 (팀의 주장) ISU 동 메달 및 은 메달 (ISU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 메달), 그리고 우승자 (챔피언) (팀 주장)에게 ISU 금 메달을 시상한다.

레프리, 어시스턴트 레프리나 테크니컬 컨트롤러 및 개최회원국의 대표자가 메달수상자들(또는 팀 주장들)에게 축하인사와 함께 꽃다발을 전달할 수 있다.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의 경우, 개최회원국의 대표자들이 입상을 한 팀의 팀원들과 등록된 후보선수들에게 ISU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 메달들을 수여한다.

d) 가능한 경우 반드시(정부 또는 법에 의해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곤) 1위 우승자가 소속된 국가의 국가가 연주되어야 하며 금/은/동 메달수여자들 각각의 국가가 함께 게양되어야 한다.

숏-버전의 국가가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숏-버전의 국가를 연주할 수도 있다. 시상식들에 사용할 국가와 국기들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는 경기를 조직하는 해당 회원국에게 있다. 스피드스케이팅의 경우 1위 우승자가 단독으로, 피겨스케이팅의 경우 메달수상자 모두가 수상에 대한 답례의 표시로 빙면을 한 바퀴 돌게 된다

e) 피겨스케이팅에 있어서, 레프리는 각 세그먼트 (여자, 남자, 페어 및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의 경우 쇼트 프로그램과 프리 스케이팅, 그리고 아이스 댄스의 경우 리듬 댄스와 프리 댄스)의 경기 후, 각각 각 종목의 3위, 2위 및 우승자들에게 ISU 동메달, 은메달 및 금메달을 수여하지만, 국가를 연주하거나 국기를 게양하지 않는다.

규칙 135

선수권대회 결과

ISU 선수권대회의 결과는 반드시 1, 2, 3위 입상자들의 고품질 사진 및 프로토콜 양식을 따라 작성된 각 프로필들과 함께 경기종료 후 늦어도 2주내에 ISU 웹사이트에 게시가 되어야 한다. 경기결과들은 영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주최 회원국은 대회종료 후 늦어도 일주일 이내에 경기결과들을 전자적인 방식으로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G. ISU 경기

규칙 136

1. 조직

ISU 선수권대회들 외에도, ISU는 규칙 100의 3항에 의거하여 기타 다른 "ISU 경기들"을 조직할 수 있다.

2. 배정

피겨스케이팅과 스피드스케이팅 종목들에 대한 ISU 경기들의 배정은 ISU 집행위원회가 결정한다.

3. 주최신청

피겨스케이팅과 스피드스케이팅의 ISU 경기를 개최하고자 희망하는 회원국은 ISU가 ISU 통신문 또는 회람문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세 정보들을 포함한 신청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IS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비용

비용분담에 관한 내용은 각 ISU 경기별로 가이드라인을 담은 ISU 메모랜덤의 규정을 따른다.

5. 재정적인 준비

모든 재정적인 준비는 당사자들끼리 협상을 통해 타결한다. 단, 규칙 105의 1항 a)호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모든 국제 TV 권리는 ISU에게 여전히 귀속된다.

6. 참가 우선권

어느 ISU 선수권대회에서 10위권 이내의 성적을 획득한 스케이터를 보유한 회원국은 그 스케이터가 바로 다음 시즌의 빙상경기 및/또는 시범경기에 적격 스케이터로서 이어서 참가하는 경우, 동 회원국이 그 스케이터의 빙상경기 및/또는 시범경기 참가를 승인할 때, 동 회원국은 동 스케이터들을 ISU의 TV 상업계약의 대상인 ISU 경기에 최우선적으로 출전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만일 회원국이 본 의무조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동 스케이터들이 아무런 "의학적 증명"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도 없이 동 ISU 경기에의 참가를 거부하는 경우, 이는 관련 규칙들에 의거하여 제재대상이 된다.

7. 포상금

ISU 경기를 주최하는 회원국/조직위원회는 입상자들에게 집행위원회가 정한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8. 오피셜의 임명

ISU 피겨스케이팅 그랑프리 경기와 파이널(주니어 및 시니어)와 피겨스케이팅 올림픽예선경기에서 활동하게 될 레프리, 테크니컬 컨트롤러,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데이터/리플레이 오퍼레이터 및 ISU 선수권대회 OAC 위원들은 물론, 스피드스케이팅과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경기들에서 활동하게 될 레프리, 어시스턴트 레프리, 스타터 및 1명의 선수 스튜어드, 또는 "ISU 경기"로 새로 추가되는 경기에서 활동하게 될 상기 오피셜들 모두는 정관 제 16조의 2항 f) 호에 의거하여 회장이 임명하여야 한다.

H. 비용

규칙 137

1. 인터내셔널 경기

"인터내셔널 경기"들의 경우, 필수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경기를 주최하는 회원국(또는 제휴클럽)이 모든 참가선수들과 참가초빙을 받은 회원국들의 임원들에게 여행경비와 숙박 및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피겨스케이팅 종목의 출전선수들 및 시범경기 선수들의 경우, 이들의 여행경비 및 숙박/식대 경비는 동 선수들이 소속된 회원국(또는 제휴클럽)이나 해당 경기를 조직하는 회원국(또는 제휴클럽)을 통해 보상이 이루어지며, 여하한 경우에도 출전선수들에게 직접 지급되지는 않는다.

3. 스피드스케이팅의 경우, 경기가 열리는 지역에서의 경기참가자들의 숙박비와 식비는 통상적으로 경기를 조직하는 회원국(또는 제휴클럽)이 [경기개최기간 플러스 1일]의 기준으로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지정호텔에 그 비용을 대납하게 된다.

4. 경기나 시범경기 또는 기타 활동에 참가하는 회원국(또는 제휴클럽)은 항공비(이코노미 석을 기준으로 함), 여행시의 필요 경비, 경기개최도시 내의 숙박비와 식대 등으로 지출한 실제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5. 경기를 주최하는 회원국(또는 제휴클럽)이 지정한 호텔이 아닌 다른 호텔에 묵고자 하는 참가자의 경우, 동 회원국(또는 제휴클럽)이 사전에 고시한 일일 표준숙박비용만을 보상받는다. 이 경우 타 호텔에 묵는 참가자는 해당 호텔의 주소를 경기를 주최하는 회원국(또는 제휴클럽)에게 통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6. a) 피겨스케이팅과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 경기의 경우:
경기를 조직하는 회원국(또는 제휴클럽)은 경기를 위한 오피셜로서 초빙을 받은 모든 레프리, 테크니컬 컨트롤러 및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들에게 여행경비, 숙박비 및 식대를 제공하거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b) 스피드스케이팅 및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의 경우:
ISU가 임명한 오피셜의 여행 경비는 ISU가 부담한다. 단, 경기를 주최하는 ISU 회원국 또는 제휴 조직위원회는 본 규칙 10항의 b)와 c) 호에 의거한 숙박비와 식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7. 피겨스케이팅 시범경기의 경우, 시범경기를 주최하는 회원국(또는 제휴클럽)은 시범경기참가자들과 이들의 동반자로서 초청이 된 자들의 여행경비/숙박비/식비를 제공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8. 피겨스케이팅에 있어서는, ISU 선수권대회와 ISU 피겨스케이팅 그랑프리 (주니어 및 시니어)에 대해서, 조직하는 ISU 회원국은 반드시 모든 선수, 레프리, 테크니컬 컨트롤러,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데이터 및 리플레이 오퍼레이터 그리고 져지들에 대한 늦어도 경기 개시 전날 점심부터 경기 종료 다음날 점심까지의 객실 및 식사 비용을 제공 또는 지불하여야 한다.

9. ISU 선수권대회

ISU 선수권대회들의 경우, ISU는 다음에 명시된 자들의 여행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a) 회장(단, 그가 ISU 대표자 역할을 하는 경우는 제외)

b) 부회장(피겨스케이팅부문 부회장 또는 스피드스케이팅부문 부회장) (단, 그가 ISU 대표자 역할을 하는 경우는 제외)

c) 사무총장과 ISU 의 소관부문/종목별 스포츠이사

d) 스피드스케이팅의 경우 소관 기술위원회의 위원 1인; 피겨스케이팅과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의 경우, 각 소관 기술위원회의 위원 1인씩으로서, 단 동 기술위원회들은 레프리, 어시스턴트 레프리, 테크니컬 컨트롤러 또는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자격으로 경기에 참가하는 위원이 없어야 한다.

e) 대회에 참가하도록 회장이 임명한 ISU 의료자문(Medical Advisor)

f) 피겨스케이팅부문의 경우, 회장이 임명한 모든(필요로 하는) 레프리, 테크니컬 컨트롤러,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및 데이터/리플레이 오퍼레이터; 그리고, 싱글/페어 스케이팅과 아이스댄스의 경우 규칙 521에 의거하여,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의 경우 규칙 971에 의거하여 져지패널의 구성을 위해 후보로 지명되어 참가를 하는 모든 져지들

g) 스피드스케이팅부문의 경우, 회장이 임명한 모든(필요로 하는) 레프리, 어시스턴트 레프리 및 스타터

h) ISU 선수권대회에서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의 경우, 회장이 임명한 추가적인 모든 선수 스튜어드

10. ISU 선수권대회들의 경우, 경기를 조직하는 회원국은, 아래의 비용들을 제공 또는 부담하여야 한다

a) ISU 회장, 부회장(피겨스케이팅부문 부회장 또는 스피드스케이팅부문 부회장), 사무총장, 소관부문/종목별 스포츠이사 및 의료고문의 숙박비와 식비

b) 경기에 참가하는 ISU 대표자 1인, RECA 2인 및 스피드스케이팅이나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의 해당 기술위원회 대표자 1인의 여행/숙박/식사 비용; 필요시 경기 컨설턴트 1인 및/또는 시설점검 1인이 방문해야 하는 경우, 이들을 포함한다

c) 필요로 하는 레프리, 어시스턴트 레프리, 테크니컬 컨트롤러,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데이터/리플레이 오퍼레이터, 스타터 및 선수 스튜어드들의 숙박과 식사 비용

d) ISU 대표자, RECA, 레프리, 어시스턴트 레프리, 테크니컬 컨트롤러 또는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로 활동을 하지 않는 자들로서, 해당 선수권대회에서 싱글/페어 스케이팅, 아이스댄스,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 스피드스케이팅 및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의 각 소관 기술위원회의 위원들과, 모든 집행위원회의원들의 숙박과 식사 비용

e) 싱글/페어 스케이팅, 아이스댄스 및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의 경우, 관련 규칙들과 통신문에 따라 회원국이 추첨하여 참석한 져지로서 각 경기당 1인의 져지에 대한 숙박과 식사 비용

f) 선수권대회에 참가한 모든 선수들의 숙박과 식사 비용.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의 경우 이는 대체 내용과 유보 내용으로도 적용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ISU 선수권대회 메모랜덤을 참조한다. 본 조항은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아래의 10항 h)호를 참조한다.

g) 선수권대회에 참가한 회원국 별 팀 리더 1인의 숙박과 식사 비용. 본 조항은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아래의 10항 h)호 참조할 것.

h) ISU 세계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 선수권대회들의 경우, 경기를 조직하는 회원국(또는 제휴클럽)이나 ISU는 참가 팀의 팀 리더, 팀 매니저 및 팀원들의 여행경기와 숙박 및 식사경기에 대해 그 어떤 비용부담의 책임이 없다. 이 대회들의 경우 참가 팀의 항공/숙박/식사 비용 모두는 대회에 참가하는 회원국이 부담하여야 한다.

11. ISU 선수권대회들의 경우, 가능한 한 객실 1개당 최대 2명의 선수들을 배정하도록 하고, 여하한 경우에도 3인을 초과하여 배정할 수 없다. 각 객실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표준형으로서, 경기일정에 따라 숙박자가 아무 때라도 식사를 할 수 있는 간단한 시설이 구비되어야 한다. 객실에 어떤 특별한 시설이나 조건을 요구하는 참가자의 경우, 필요로 하는 것들을 미리 시의 적절하게 개최 회원국(또는 제휴클럽)에 알려줘야 하며, 이 때 숙박비용이 초과되는 경우 그 차액을 미리 지불해야 한다.

12. ISU 선수권대회들의 경우, 레프리, 져지, 테크니컬 컨트롤러,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OAC 위원, 스타터 및 선수 스튜어드들에게는 가능한 한 1인용 객실을 제공하되, 여하한 경우에도 동 오피셜들이 스케이터들과 함께 방 배정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3. ISU 선수권대회를 개최/조직하는 회원국(또는 제휴클럽)이 타 회원국들의 임원들을 경기에 초청하기를 원하면 원하는 수만큼 이들의 여행경비, 숙박비, 식비 등을 제공하거나 지급 할 수 있다

14. 스피드스케이팅의 경우, 대회를 조직하는 회원국 또는 제휴 조직위원회가 해당 대회 동안 지정 호텔에서의 숙박과 식사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기간은, 선수가 참가하는 경기 전날 점심부터 경기 다음날 점심까지이다 (참가자가 오후에 떠나야 하는 경우). 자세한 내용은 ISU 선수권대회 메모랜덤을 참조한다.

15. ISU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싱글 및 페어 스케이팅, 아이스댄스 – 주니어 및 시니어)의 대회 개최 ISU 회원국에 의한 숙박 및 식사 비용 보장기간

a) 위의 10항 a) 및 d)에 언급된 임원: 선수권대회의 첫 번째 추첨일 점심 식사에서 시작하여 마지막 시상 또는 시상식 연회 또는 전시회 중 제일 나중 일정의 다음 날 점심 식사로 끝난다.

b) 레프리, 데이터 및 리플레이 오퍼레이터 및 져지: 관련되는 최초의 해당 오피셜 미팅(레프리 미팅/테크니컬 패널 미팅/져지 미팅) 전날 저녁 식사로 시작하여 마지막 시상 또는 시상식 연회 또는 전시회 중 제일 나중 일정의 다음 날 점심 식사로 끝난다.

c) 테크니컬 컨트롤러 및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선수권대회의 첫 번째 공식 연습 전날 저녁 식사로 시작하여 마지막 시상 또는 시상식 연회 또는 전시회 중 제일 나중 일정의 다음 날 점심 식사로 끝난다.

d) 선수:

선수권대회의 첫 번째 공식 연습(규칙 376, 1항 참조) 전날 저녁 식사와 함께 시작한다. 예선 라운드(2024/25 시즌 기준)에 참가하고 다음 세그먼트로 진출하지 못하는 선수의 경우 각 예선 라운드 다음 날 점심 식사로 끝난다. 선수권대회 라운드(쇼트 프로그램 – 리듬 댄스)에 참가하는 선수의 경우, 마지막 시상, 시상식 연회 또는 전시회 중 제일 나중 일정의 다음 날 점심 식사로 끝난다.

e) 팀 단장:

최소한 한 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선수권대회의 첫 번째 공식 연습(규칙 376, 1항 참조) 전날 저녁 식사로 시작한다.

선수권대회 라운드(쇼트 프로그램 - 리듬 댄스)에 진출하거나 참가하는 선수가 없는 예선 라운드(2024/25 시즌 기준) 참가하는 선수들의 팀 단장은 해당하는 마지막 예선의 다음 날 점심 식사로 끝난다.

선수권대회 라운드(쇼트 프로그램 - 리듬 댄스)에 참가하는 선수의 팀 단장은 마지막 시상, 시상식 연회 또는 전시회 중 제일 나중 일정의 다음 날 점심 식사로 끝난다.

16. ISU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 선수권대회(주니어 및 시니어) 대회 개최 ISU 회원국에 의한 숙박 및 식사 비용 보장 기간:

a) 위의 10항 a) 및 d)에 언급된 임원: 선수권대회의 첫 번째 추첨일 점심 식사에서 시작하여 마지막 시상 또는 시상식 연회 또는 전시회 중 제일 나중 일정의 다음 날 점심 식사로 끝난다.

b) 레프리 및 져지: 져지 미팅 전날 점심 식사로 시작하여, 라운드 테이블 협의 또는 폐막 연회/선수 파티 중 제일 나중 일정의 다음 날 아침 식사로 끝난다.

c) 테크니컬 컨트롤러,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데이터 및 리플레이 오퍼레이터: 첫 번째 공식 연습 전날 저녁 식사로 시작하여, 라운트 테이블 협의 또는 폐막 파티 중 제일 나중 일정의 다음 날 아침 식사에 끝난다.

d) 선수 및 팀 단장:

규칙 137조 10항 f) 및 h)에 따라 참가 ISU 회원국(주최 ISU 회원국이 아님)은 객실 및 식사 비용을 책임진다.

17. 특별전세비행기가 아닌 한, ISU 선수권대회를 조직/개최하는 회원국(또는 제휴클럽)은 자신이 항공료 대납의무를 갖는 자들에 대해 항공사와 편명을 특정하거나 비행 스케줄을 지정하여 이를 따를 것을 강제할 수 없다.

규칙 138

동계올림픽대회(OWG)

1. ISU가 부담 및 지불하는 비용

동계올림픽대회의 빙상경기들의 경우, ISU는 다음에 명시된 자들을 위한 여행경비와 숙박비 및 식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IOC 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

a) 회장, 부문별 부회장들, 집행위원회 위원, 동계 올림픽 프로그램의 종목의 기술위원회 위원, 사무총장 및 스포츠이사들.

b) 회장이 임명한 자들로서, 모든(필요로 하는) 레프리, 어시스턴트 레프리, 테크니컬 컨트롤러,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데이터/리플레이 오퍼레이터, OAC 위원, 스타터 및 선수 스튜어드들(정관 제 16조 2항의 f) 호와, 규칙 126의 8항 참조).

c) 다음에 해당하는 자들로서, 각 참가 회원국의 지명으로 참가한 피겨스케이팅 져지들

i) 추첨 종목(들)에서 한 회원국은 한 명의 져지와 한 명의 대체자를 지명할 수 있으나, 가용한 시설의 제약을 감안하여, 합계 져지 3인을 넘을 수 없다.

ii) 한 회원국이 4개 종목 모두에 추첨 되었을 때, 이 경우 배정된 져지들 중 한 명은 두(2) 경기들을 담당해야 한다. 또는

iii) 한 회원국이 4개 종목 모두에 대하여 추첨 되었을 때, 4번째 져지 지명 요청을 ISU에게 할 수 있다.

iv) 이 경우, 동 요청이 받아들여지고 또한 OWG 조직위원회가 동 4번째 져지에 대해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져지를 낸 회원국이 동 4번째 져지의 비용을 부담한다

v) 한 회원국이 아이스댄스 경기의 한 져지를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이렇게 지명된 져지의 비용

2. ISU가 보상하는 비용

피겨스케이팅 져지를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회원국이 동 소속 져지를 지명하여 대회에 파견코자 하는 경우, 동계올림픽 이전에 열리는 올림픽예선경기가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동 의사를 사무국에 밝혀야("확인") 한다. 이들이 경기참가를 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먼저 해당 회원국이 지출증빙을 취합하여 선지급 한 후 동 증빙을 사무국에 송부하면 사무국이 발생비용을 최종적으로 정산한다. 단, 항공료의 경우 ISU 는 이코노미 기준의 가장 싼 항공료를 기준으로 이 비용만을 보상한다.

3. 조직위원회가 보상 및 지불하는 비용

RECA 및 상기 1번 단락에 규정된 자들 이외에, 다른 모든 필요한 공식업무수행자들의 비용은, OWG 조직위원회가 동계올림픽 개최 회원국 연맹과의 합의를 통해 책임져야 한다.

I. 도핑

규칙 139

1. ISU 반-도핑 규칙과 ISU 반-도핑 절차

도핑검사를 포함한 모든 반-도핑 사안들은 집행위원회가 채택한 후 ISU 통신문의 형태로 발간되는 ISU 반-도핑 규칙들과 ISU 반-도핑 절차에 의해 규제된다. 동 ISU의 반-도핑규칙들과 절차는 현재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는 규약이자 국제올림픽위원회I(IOC)도 채택하고 있는, 세계반-도핑기구 (WADA)가 수립한 세계도핑방지규약의 제 원칙들을 따르고 있으며, 발간일로부터 구속력 있는 효력을 발휘한다.

2. 세계반도핑규칙 수정에 대한 반영

동 세계도핑방지규약이 개정되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ISU 반-도핑규칙들과 ISU 반-도핑 절차를 그에 맞춰 적절히 수정/개정/대체/삭제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이 경우 그 즉시 효력이 발휘된다

J. 의료

규칙 140

1. 경기장 내 의료서비스

a) 조직위원회는 대회 의료와 관련하여 ISU 에서 발행한 상세 가이드라인과 메모랜덤을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b) 피겨와 스피드스케이팅 경기들의 경우, 훈련된 응급의료팀이 모든 각 경기와 연습 기간 내내 각 경기장에 상주해야 하는 바, 동 응급의료팀은 적정한 전문성을 가진 의사와 적정한 수의 응급지원 스태프들로 구성되어야 된다.

또한, 병자나 부상을 입은 스케이터들의 처치를 위해 5분 이내로 구급차(앰뷸런스)가 도착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5분 내 도착이 어려운 경우엔, 현장에 앰뷸런스가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

c)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경기들의 경우, 응급의료인력과 적정한 전문성을 가진 의사가 링크 사이드에 대기하고 있어야 하며, 예정된 모든 경기들과 연습세션들 내내 앰뷸런스가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

d) 여러 호텔들에서 필요 시 의료서비스의 적시지원을 위해 아무 때라도 호출 시 10-15분 이내에 외과의사의 수배가 가능해야 한다.

2. 의료실

병 또는 부상 스케이터의 처치를 위해 진료소가 빙면 가까이에 설치되어야 하며 앰뷸런스 요원들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동 진료소 및/또는 앰뷸런스/요원들에는 심혈관계 허탈, 호흡부전, 열상(중증 및 경증), 사지통증, 척수와 두부외상 등을 처치 및 안정화할 수 있는 장비가 구비되어야 한다.

3. 의료책임오피셜

CMO (Chief Medical Officer; 의료책임관)은 경기 중에 선수를 돌보기 위해 병원, 클리닉 및 각 분야 전문의들과 사전에 연락망을 수립해 두어야 할 책임을 갖는다.

4. 응급의료서비스

경기 조직위는 경기와 연습세션의 모든 참가자들에게 무료로 응급의료지원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5. 의료증명서

a) 스케이터가 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출전을 포기하는 경우, ISU 규정, 통신문 또는 어나운스먼트에 명시된 요건을 갖춘 "의료증명서 (Medical Certificate)"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b) 경기 중 기권의 경우에는 메디컬 닥터(Medical Doctor)의 고정 양식 또는 ISU 기권 통지 양식으로 동 증명서가 발행되어야 하며 해당 스케이터와 메디컬 닥터가 서명하여야 한다. 동 의학적 증명서가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해당 스케이터가 소속된 회원국의 회장 또는 사무총장이 서명한 번역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규칙 141

안전

1. 선수들의 안전에 대한 ISU 회원국의 책임

각 회원국은 자신에게 소속된 선수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안전하게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책임을 갖는다. 만일 선수가 어떤 의학적 이유로 출전할 수 없는 경우, 팀 메디컬 닥터나 경기 상주의사가 작성한 서면통지서가 경기 시작 전에 레프리와 의료고문(Medical Advisor)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경기로의 재복귀는 팀 메디컬 닥터 또는 경기 상주의사의 확인서가 레프리에게 제출되지 않는 한 불허될 수 있다.

2. 의료용 장비의 승인

금속성이나 딱딱한 플라스틱 재질의 의료용 장비는 경기 전에 의료고문/경기상주의사 및 레프리로부터 미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안전의 확인

ISU 선수권대회나 인터내셔널 경기에 적격성을 갖춘 스케이터를 출전시키고자 하는 회원국은 엔트리를 작성할 때 해당 스케이터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안전하게 경기를 치를 수 있다는 확인을 하여야 한다.

규칙 142

보안

ISU 경기들을 조직하는 회원국들은 각 ISU 경기의 개최와 관련한 메모랜덤에 포함된 바에 따라 및/또는 관련 ISU 통신문에 명시된 바에 따라, 보안에 대한 ISU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규칙 143부터 규칙 199까지는 차후 "파트 II: 일반규정"에서 다룰 규정들과 연동시키기 위해 임시보류를 하는 바이다.

국제 빙상 연맹

설립: 1892년 7월 23일, 네덜란드 스헤베닝언

ISU 회원국

AND	**Andorra**	안도라 빙상 연맹 (피겨)
ARG	**Argentina**	아르헨티나 스피드 스케이트 연합 (UVEPA) (스피드)
		아르헨티나 빙상 연맹 (피겨)
ARM	**Armenia**	아르메니아 피겨 스케이트 연맹 (피겨)
AUS	**Australia**	호주 빙상 경기 Inc. (스피드)
		호주 빙상 Inc. (피겨)
AUT	**Austria**	오스트리아 스피드 스케이트 협회 (스피드)
		오스트리아 피겨 스케이트 연맹 (피겨)
AZE	**Azerbaijan**	아제르바이잔 빙상 연맹 (피겨)
BEL	**Belgium**	벨기에 스피드 스케이트 연맹 (스피드)
		벨기에 피겨 연맹 (피겨)
BIH	**Bosnia and Herzegovina**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 빙상 연맹
BLR	**Belarus**	벨로루시의 빙상 연맹
BRA	**Brazil**	브라질 빙상 연맹
BUL	**Bulgaria**	불가리아어 빙상 연맹
CAM	**Cambodia**	캄보디아 빙상연맹 (피겨 임시회원)
CAN	**Canada**	캐나나 스피드스케이팅 (스피드)
		스케이트 캐나다 (피겨)
CHI	**Chile**	칠레 피겨스케이팅 연맹 (피겨 임시회원)
CHN	**China**	중국 빙상 협회 (스피드)
		중국 피겨스케이팅 협회(피겨)
COL	**Colombia**	콜롬비아 빙상 연맹 (스피드 임시회원)
CRO	**Croatia**	크로아티아 빙상 연맹
CYP	**Cyprus**	키프로스 스케이트 연맹 (피겨)
CZE	**Czech Republic**	체코 스피드 스케이트 연맹 (스피드)
		체코 피겨 스케이트 협회 (피겨)
DEN	**Denmark**	덴마크 빙상 연합
ECU	**Ecuador**	에콰도르 빙상 연맹(피겨 임시회원)
EGY	**Egypt**	이집트 빙상 스케이트 (피겨 임시회원)
ESP	**Spain**	스페인 빙상 연맹
EST	**Estonia**	에스토니아 빙상 연합

FIN	**Finland**	핀란드 빙상 연맹 (스피드) 핀란드 피겨 스케이트 협회 (피겨)
FRA	**France**	프랑스 빙상 연맹
GBR	**Great Britain**	영국 아이스 스케이팅
GEO	**Georgia**	조지아 피겨 스케이트 연맹 (피겨)
GER	**Germany**	독일 스피드 스케이트 커뮤니티 (스피드) 독일 빙상 연합 e.V. (피겨)
GRE	**Greece**	헬레니즘 동계 스포츠 연맹 (피겨)
HKG	**Hong Kong/China**	홍콩 빙상 연맹
HUN	**Hungary**	헝가리 빙상 연맹
INA	**Indonesia**	인도네시아 스포츠 연합 (PORSEROSI)
IND	**India**	인도 빙상 협회
IRL	**Ireland**	아일랜드 빙상 협회
ISL	**Iceland**	아이슬란드 빙상 협회 (피겨)
ISR	**Israel**	이스라엘 빙상 연맹
ITA	**Italy**	이탈리아 빙상 연맹
JPN	**Japan**	일본 빙상 연맹
KAZ	**Kazakhstan**	카자흐스탄 빙상 연맹
KGZ	**Kyrgyz Republic**	키르기스 공화국 빙상 연맹 (피겨)
KOR	**Rep. of Korea**	대한 빙상 연맹
KUW	**Kuwait**	쿠웨이트 피겨 스케이트 연합 (피겨 임시 회원)
LAT	**Latvia**	라트비아어 빙상 협회 (피겨)
LIE	**Lichtenstein**	리히텐슈타인 빙상 협회
LTU	**Lithuania**	리투아니아 스피드 스케이트 협회 (스피드) 리투아니아 빙상 연맹 (피겨)
LUX	**Luxembourg**	룩셈부르크 스피드 스케이트 연합 (스피드) 룩셈부르크 피겨 연합 (피겨)
MAR	**Morocco**	모로코 빙상 협회 (피겨)
MAS	**Malaysia**	말레이시아 빙상 협회
MDA	**Moldova**	몰도바 공화국 피겨 스케이트 연맹 (피겨)
MEX	**Mexico**	멕시코 빙상 및 동계 스포츠 연맹, A.C. (피겨)
MGL	**Mongolia**	몽골 빙상 연합
MKD	**North Macedonia**	북마케도니아 빙상 연맹 (피겨)
MON	**Monaco**	모네가 빙상 연맹 (피겨)
NED	**Netherlands**	네덜란드 빙상 협회
NOR	**Norway**	노르웨이 빙상 연맹

NZL	**New Zealand**	뉴질랜드 스피드 스케이트 협회 (Inc.) (스피드)
		뉴질랜드 피겨 스케이트 협회 (Inc.) (피겨)
PER	**Peru**	페루 빙상 연맹
PHI	**Philippines**	필리핀 빙상 연합
POL	**Poland**	폴란드 스피드 스케이트 협회 (스피드)
		폴란드 피겨 스케이트 협회 (피겨)
POR	**Portugal**	포르투갈 동계 스포츠 연맹 (스피드 임시회원)
PRK	**D.P.R. Korea**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빙상 협회
QAT	**Qatar**	카타르 빙상 연맹 (스피드)
ROU	**Romania**	루마니아 빙상 연맹
RSA	**South Africa**	남아프리카 스피드 스케이트 협회 (스피드)
		남아프리카 피겨 스케이트 협회 (피겨)
RUS	**Russia**	러시아 빙상 연맹 (스피드)
		러시아 피겨 스케이트 연맹 (피겨)
SGP	**Singapore**	싱가폴 빙상 협회
SLO	**Slovenia**	슬로베니아 빙상 연맹
SRB	**Serbia**	세르비아 빙상 협회
SUI	**Switzerland**	스위스 빙상 연맹
		국제 스위스 빙상 클럽 다 보스 (클럽 회원)
SVK	**Slovak Republic**	슬로바키아 스피드 스케이트 협회 (스피드)
		슬로바키아 피겨 스케이트 협회 (피겨)
SWE	**Sweden**	스웨덴 스포츠- 스케이팅, 썰매 및 롤러 스포츠 협회 (스피드)
		스웨덴 피겨 스케이트 협회 (피겨)
		스톡홀름 일반 스케이트 클럽 (클럽 회원)
THA	**Thailand**	태국 피겨 및 스피드 스케이트 협회
TKM	**Turkmenistan**	투르크메니스탄 동계 스포츠 센터 (피겨 임시회원)
TPE	**Chinese Taipei**	대만 타이페이 빙상 연합
TUR	**Turkey**	터키 빙상 연맹
UAE	**United Arab Emirates**	UAE 빙상 연맹 (피겨)
UKR	**Ukraine**	우크라이나 스피드 스케이트 연맹 (스피드)
		우크라이나 피겨 스케이트 연맹 (피겨)
USA	**USA**	미국 스피드 스케이트 (스피드)
		미국 피겨 스케이트 협회 (피겨)
UZB	**Uzbekistan**	우즈베키스탄 동계 스포츠 협회
VIE	**Vietnam**	베트남 빙상 연맹 (스피드 및 피겨 임시회원)

국제 빙상 연맹

본부: 등기 우편 주소

주소: Avenue Juste-Olivier 17, 1006 로잔, 스위스 전화: (+41) 21 612 66 66,
팩스: (+41) 21 612 66 77, E-Mail: info@isu.ch

오피셜 2018-2022

집행위원회:

회장:		Jae Youl Kim	대한민국
제 1 부회장:	스피드 스케이트:	Tron Espeli	노르웨이
부회장:	피겨 스케이트:	Benoit Lavoie	캐나다
회원:	스피드 스케이트	Suwanna Silpa-Archa	태국
		Sergio Anesi	이탈리아
		Stoytcho G. Stoytchev	불가리아
		Alexander Kibalko	러시아
		Albert Hazelhoff	네덜란드
	피겨 스케이트:	Patricia St. Peter	미국
		Tatsuro Matsumura	일본
		Susanna Rahkamo	필란드
		György Elek	헝가리
		Maria Teresa Samaranch	스페인
	선수 대표	Eric Radford	캐나다
사무총장:		Fredi Schmid	스위스
회계:		Ulrich Linder	스위스
법률 고문:		Michael Geistlinger	오스트리아
피겨스케이팅 스포츠 기술 이사:		Charles Z. Cyr	미국
스피드스케이팅 스포츠 기술 이사:		Hugo Herrnhof	이탈리아

기술 위원회:

싱글 및 페어 스케이팅:	의장:	Fabio Bianchetti	이탈리아
		Leena Laaksonen	필란드
	회원:	Yukiko Okabe	일본
		Emilie Billow	스웨덴
		Susan Lynch	호주
	임명 선수:	Cong Han	중국
	임명 코치:	Patrick Meier	스위스
아이스 댄스:	의장:	Shawn Rettstatt	미국
	회원:	Hilary Selby	영국
		David Molina	프랑스
		Ingrid Charlotte Wolter	독일
	임명 선수:	Kaitlyn Weaver	캐나다
	임명 코치:	Alper Uçar	터키

국제 빙상 연맹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	의장:	Philippe Maitrot	프랑스
	회원:	Petra Tyrbo	스웨덴
		Lois Long	미국
		Nina Bischoff	스위스
	임명 선수:	Ida Hellström	필란드
	임명 코치:	Cathy Dalton	캐나다
스피드스케이팅:	의장:	Nick Thometz	미국
	회원:	Hanjo Heideman	네덜란드
		Øystein Haugen	노르웨이
		Alexei Khatylev	벨라루스
	임명 선수:	Pending	
	임명 코치:	Pending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의장:	Nathalie Lambert	캐나다
	회원:	Reinier Oostheim	네덜란드
		So Hee Kim	대한민국
		Christoph Milz	독일
	임명 선수:	Pending	
	임명 코치:	Wim de Deyne	벨기에

선수위원회
(2026년 3월까지 선출)

의장	Eric Radford	캐나다
부의장	Douwe de Vries	네덜란드
	Evan Bates	미국
	Nathalie Lindqvist	스웨덴
	Viktor Knoch	헝가리

징계 위원회:

의장:	Susan Petricevic	뉴질랜드
회원:	Allan Böhm	슬로바키아
	Jean-François Monette	캐나다
	Eugen Larasser	독일
	Keith King	미국

메디칼 위원회:

의장:	Jane M. Moran	캐나다
회원:	Joel C. Shobe	미국
	Hiroya Sakai	일본
	Ruben Ambartsumov	우크라이나
	Hannu Koivu	핀란드
	Eunkuk Kim	대한민국
	Marieke Becker	네덜란드

개발 위원회:

코디네이터:	Jildou Gemser	네덜란드
	Xu Xun	중국

명예 회장:		선출년도
Viktor Gustaf Balck †	스웨덴	1925
Emerich von Szent Györgyi †	헝가리	1933
Herbert J. Clarke †	영국	1955
James Koch †	스위스	1967
Jacques Favart †	프랑스	1982
Olaf Poulsen †	노르웨이	1994
Ottavio Cinquanta	이탈리아	2016
Jan Dijkema	네덜란드	2022

명예 부회장:		
Sven Låftman †	스웨덴	1971
Hendrik Roos †	네덜란드	1977
John R. Shoemaker †	미국	1980
Hermann Schiechtl †	독일 연방 공화국	1984
Georg Pettersson †	스웨덴	1986
Jean Heckly†	프랑스	1992
Josef Dedic †	체코 공화국	1994
Lawrence Demmy M.B.E. †	영국	1998
Gerhard Zimmerman	독일	2010
David Dore †	캐나다	2016
Alexander Lakernik	러시아	2022

명예 사무국장:		
Georg Häsler †	스위스	1975

명예 회원:		선거년도
Hans Pfeiffer †	오스트리아	1939
Gustavus F. C. Witt †	네덜란드	1953
Marcel Nicaise †	벨기에	1959
Friedrich Kachler †	오스트리아	1959
Walter S. Powell †	미국	1961
Reginald J. Wilkie †	영국	1963
Georg Krog †	노르웨이	1969
Ernest Labin †	오스트리아	1969
Harald Halvorsen †	노르웨이	1969
Ernest J. G. Matthews †	영국	1977
Heinz Dragunsky †	독일 민주 공화국	1980
Oskar Madl †	오스트리아	1980
George Blundun †	캐나다	1980
Emil Skàkala †	체코슬로바키아	1980
Viktor Kapitonov †	(구)소련	1984
Arne Kvaalen †	노르웨이	1984
Icilio Perucca †	이탈리아	1988
Elemér Tertak †	헝가리	1988
Donald H. Gilchrist	캐나다	1992
Herman J. van Laer †	네덜란드	1992
Benjamin T. Wright	미국	1992
John Hurdis †	캐나다	1992
Charles A. De More †	미국	1994
Hans Kutschera†	오스트리아	1996
Jean Grenier	캐나다	1996
Jürg Wilhelm †	스위스	1998
Lars-Olof Eklund †	스웨덴	1998
Jan W.P. Charisius †	네덜란드	1998

명예 회원: *(계속)*

Wolfgang Kunz †	독일	1998
Joyce Hisey†	캐나다	2002
Walburga Grimm ††	독일	2002
John Hall †	영국	2002
Maria Bialous-Zuchowicz †	폴란드	2006
Claire Ferguson	미국	2006
Monique Georgelin	프랑스	2006
Myong-Hi Chang	대한민국	2010
Courtney J.L. Jones O.B.E.	영국	2010
Ulf Lindén	스웨덴	2010
Gerhardt Bubník	체코	2010
James L. Hawkins	미국	2010
Phyllis Howard	미국	2016
Tjasa Andrée-Prosenc	슬로베니아	2016
German Panov	러시아	2016
Lan Li	중국	2016
György Martos	헝가리	2016
Peter Krick	독일	2016
Alexander Gorshkov	러시아	2016
Ann Shaw	캐나다	2016
Olga Gilardini	이탈리아	2016
Junko Hiramatsu	일본	2018
Marie Lundmark	필란드	2022
Roland Maillard	스위스	2022
Volker Waldeck	독일	2022
Béatrice Pfister	스위스	2022

전 회장		재직년도
Willem H.J. Mulier †	네덜란드	1892–1894
Viktor Gustav Balck †	스웨덴	1895–1924
Ulrich Salchow †	스웨덴	1925–1937
Gerrit W.A. van Laer †	네덜란드	1937–1945
Herbert J. Clarke †	영국	1945–1953
James Koch †	스위스	1953–1967
Ernest Labin †	오스트리아	1967
Jacques Favart †	프랑스	1967–1980
Olaf Poulsen †	노르웨이	1980–1994
Ottavio Cinquanta	이탈리아	1994–2016
Jan Dijkema	네달란드	2016-2022

국제 빙상 연맹

자크 파바트 트로피
1981년 제정

		수상연도
Irina Rodnina	(구)소련	1981
Eric Heiden	미국	1983
Jayne Torvill / Christopher Dean	영국	1986
Scott Hamilton	미국	1987
Katarina Witt	독일 민주 공화국	1988
Karin Kania	독일 민주 공화국	1990
Natalia Bestemianova / Andrei Bukin	러시아	1992
Tomas Gustafson	스웨덴	1993
Gaétan Boucher	캐나다	1994
Bonnie Blair	미국	1998
Kurt Browing	캐나다	1998
Johann Olav Koss	노르웨이	1998
Ludmila † & Oleg Protopopov	스위스	1998

조지 해슬러 메달
1985년 제정

Zoltán Balázs †	헝가리	1987
Willi Zipperlen †	스위스	1987
F. Ritter Shumway †	미국	1988
Herbert Kunze†	독일 연방 공화국	1989
Assen Pavlov	불가리아	1989
W. Thayer Tutt †	미국	1989
Victor Blinov †	(구)소련	1990
Andrea Ehrig	독일 민주 공화국	1990
Radovan Lipovscak†	유고 슬라비아	1990
Courtney J. L. Jones O.B.E.	영국	1991
Milan Duchon	체코슬로바키아	1992
Klaas Schipper	캐나다	1992
Lysiane Lauret	프랑스	1993
Anna Sinilkina †	러시아	1993
George Howie†	미국	1993
Pamela E.L. Davis, M.B.E. †	영국	1994
Jurjen Osinga	네덜란드	1994
Ivan Mauer †	슬로바키아 공화국	1995
Florea Gamulea	루마니아	1996
David E. Morgan †	호주	1996
Beat Häsler	스위스	1998
Mitsuo Matsumoto †	일본	2000
Robert Moir †	캐나다	2002
Valentin Piseev	러시아	2002

ISU 훈장
2004년 제정

Lysiane Lauret	프랑스	2006
Lucy Brennan	미국	2007
Susan Johnson	미국	2007
Joachim Franke	독일	2008
Ann Shaw	캐나다	2008
David Mitchell	영국	2016
Robert Horen	미국	2017
Joseph Inman	미국	2017
Christa Elisabeth Krick	독일	2017
Erik Øsmundset	노르웨이	2017
Kenneth Pendrey	영국	2017
Gale Tanger	미국	2017
Michel Verrault	캐나다	2017
Susan Heffernan	캐나다	2019
Joanne Shaw	캐나다	2019
Sally Rehorick	캐나다	2019
Knut Ludahl	노르웨이	2019
Jan Marmstål	스웨덴	2019